

연구보고 2012-19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이미화 여종일 엄지원

머 리 말

보육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적 보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 과정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확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므로, 기존 보육정책의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육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보육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차원의 중장기보육계획과 이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켜왔다. 이를 바탕으로 넓게는 현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에서 구체적으로는 보육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보육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보육 서비스의 질 유지 및 관리 항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제시한 중장기 발전방향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하며, 영유아나 보호자의 배경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보육이념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현장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현재까지 보육정책이 발전해 온 흐름에 맞추어 현 시점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보육현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신 보육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께 감사드리며 보육정책의 방향설정 및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을 모아 주신 전문가, 연구진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3
II. 보육정책 현황 및 발전과정	15
1. 보육현황 및 보육정책	15
2. 보육정책 발전과정 및 현황	32
III. 보육계획 및 보육정책 평가	37
1. 보육 발전계획 및 정책평가	37
2. 외국의 보육현황 및 정책방향	61
IV.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요구	85
1. 현 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대한 평가	85
2.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95
V. 보육 증장기 정책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154
1. 보육정책의 방향	155
2. 보육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159
참고문헌	178
Abstract	184
부록	185
부록 1. 전문가용 조사표	187
부록 2. 부모용 조사표	198

표 차례

〈표 I-3- 1〉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 조사 대상 수	13
〈표 I-3- 2〉 설문조사 문항 내용	14
〈표 II-1- 1〉 2011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일반 현황	15
〈표 II-1- 2〉 2011년 12월 기준 보육교직원 일반 현황	16
〈표 II-1- 3〉 2011년 12월 기준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16
〈표 II-1-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세 현황	17
〈표 II-1- 5〉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18
〈표 II-1- 6〉 전체 보육료(기본보육료 제외) 및 영유아법정보육료 지원현황 ..	19
〈표 II-1- 7〉 영유아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현황	19
〈표 II-1- 8〉 다문화보육료, 만5세 보육료 및 방과후보육료 지원현황	20
〈표 II-1- 9〉 0~2세 및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현황	20
〈표 II-1-10〉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22
〈표 II-1-11〉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23
〈표 II-1-12〉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관련 정책 변화	24
〈표 II-1-13〉 영유아 인구 추계	29
〈표 II-1-14〉 어린이집 시설수 추계	30
〈표 II-2- 1〉 2010, 201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35
〈표 III-1- 1〉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기본 방향	40
〈표 III-1- 2〉 참여정부 여성가족부의 보육지원사업 주요 내용	41
〈표 III-1- 3〉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성과 지표	42
〈표 III-1- 4〉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소요 예산	45
〈표 III-1- 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개편 관련 내용 ..	46
〈표 III-1- 6〉 200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48
〈표 III-1- 7〉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 비교	50
〈표 III-1- 8〉 인천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핵심과제 일람표	54
〈표 III-1- 9〉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영역별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55
〈표 III-1-10〉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정책영역 및 세부추진과제	56
〈표 III-1-11〉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의 정책과제와 세부추진사업 및 예산 ..	57

〈표 III-1-12〉 제주아이사랑플랜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58
〈표 III-1-13〉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안) 총괄	60
〈표 III-1-14〉 안산시 중장기 보육지표의 변화(2007-2011)	61
〈표 III-2- 1〉 스웨덴의 총인구 및 출산율 추계	62
〈표 III-2- 2〉 남녀취업률 및 가족여건	62
〈표 III-2- 3〉 연도별·연령별·기관별 아동의 수	64
〈표 III-2- 4〉 프랑스의 총인구 및 출산율 추계	65
〈표 III-2- 5〉 남녀취업률 및 가족여건	66
〈표 III-2- 6〉 연도별 집단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서비스 수	67
〈표 III-2- 7〉 연도별 집단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서비스 이용 유아수	68
〈표 III-2- 8〉 미국의 총인구 및 출산율 추계	71
〈표 III-2- 9〉 남녀취업률	71
〈표 III-2-10〉 3~5세아의 프로그램 유형별 등록인원	72
〈표 III-2-11〉 3~5세아의 시간유형별 등록	75
〈표 III-2-12〉 직업 별 시급과 이직률	77
〈표 III-2-13〉 헤드스타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요건	78
〈표 III-2-14〉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공적지출	80
〈표 III-2-15〉 향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83
〈표 III-2-16〉 UNICEF(2008)의 권고기준	84
〈표 IV-1- 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과제 평가	86
〈표 IV-1- 2〉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과제 평가	87
〈표 IV-1- 3〉 보육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균형배치 과제 평가	90
〈표 IV-1- 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 평가	91
〈표 IV-1- 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평가	92
〈표 IV-1-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 평가	94
〈표 IV-2- 1〉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동의정도	96
〈표 IV-2- 2〉 보육정책 수립 시 우선순위(1순위)	98
〈표 IV-2- 3〉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연령별 적합성	98
〈표 IV-2- 4〉 아동 연령별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99
〈표 IV-2- 5〉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무응답 포함)	102
〈표 IV-2- 6〉 보육료 지원의 금액범위 개선안 의견	102

〈표 IV-2- 7〉 보육료 지원 조건의 개선안 의견	103
〈표 IV-2- 8〉 영아와 유아를 구분한 보육료 지원 조건의 개선안 의견	103
〈표 IV-2- 9〉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성	104
〈표 IV-2-10〉 양육수당 지원대상 개선안 의견	104
〈표 IV-2-11〉 양육수당 영유아 연령별 지원 개선안 의견	105
〈표 IV-2-12〉 보육지원의 필요성 (무응답 포함)	105
〈표 IV-2-13〉 전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성 (무응답 포함) ..	106
〈표 IV-2-14〉 전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정책 지속이유 (무응답 포함)	107
〈표 IV-2-15〉 전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이유	107
〈표 IV-2-16〉 양육수당 확대방안에 대한 견해	108
〈표 IV-2-17〉 양육수당 지급의 전제조건(복수 응답)	108
〈표 IV-2-18〉 연령별 양육수당 예상 적정금액	109
〈표 IV-2-19〉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의 개선 필요성	110
〈표 IV-2-20〉 국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확충 필요도	110
〈표 IV-2-21〉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 비중에 대한 개선 필요성	111
〈표 IV-2-22〉 공공형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확충 필요도	111
〈표 IV-2-23〉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전체 비중 개선 필요성	112
〈표 IV-2-24〉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축소 필요도	112
〈표 IV-2-25〉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선 필요성 (무응답 있음)	112
〈표 IV-2-26〉 어린이집 운영시간 향후 5년간 필요도	113
〈표 IV-2-27〉 시간제 일시보육 개선 필요성	113
〈표 IV-2-28〉 시간제 일시보육 향후 5년간 필요도	114
〈표 IV-2-29〉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	114
〈표 IV-2-30〉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1순위)	116
〈표 IV-2-31〉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필요성	118
〈표 IV-2-32〉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요구	119
〈표 IV-2-33〉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인가제한권 개선 필요성	120
〈표 IV-2-34〉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인가제한권 개선안 의견	120
〈표 IV-2-35〉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필요성	122
〈표 IV-2-36〉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우선순위(1순위)	124
〈표 IV-2-37〉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개선 필요성	126

〈표 IV-2-38〉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개선안 의견	126
〈표 IV-2-39〉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 필요성	127
〈표 IV-2-40〉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안 의견	127
〈표 IV-2-41〉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 필요성	127
〈표 IV-2-42〉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안 의견	128
〈표 IV-2-43〉 보육교사 양성과목 교과목 개선 필요성	128
〈표 IV-2-44〉 보육교사 양성과목 교과목 개선안 의견	129
〈표 IV-2-45〉 보육교사 자격요건 개선 필요성	129
〈표 IV-2-46〉 보육교사 자격요건 개선안 의견	130
〈표 IV-2-47〉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	131
〈표 IV-2-48〉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 정책 우선순위(1순위) ..	133
〈표 IV-2-49〉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관련 개선 필요성	135
〈표 IV-2-50〉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개선안 의견	135
〈표 IV-2-51〉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관련 향후 지원 필요성	137
〈표 IV-2-52〉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순위(1순위) ..	139
〈표 IV-2-53〉 평가인증 통과점수 개선 필요성	141
〈표 IV-2-54〉 평가인증 통과점수 개선안 의견	142
〈표 IV-2-55〉 평가인증지표 개선 필요성	142
〈표 IV-2-56〉 평가인증 통과점수 개선안 의견	143
〈표 IV-2-57〉 평가인증제 개선 필요성	143
〈표 IV-2-58〉 평가인증제 개선안 의견	144
〈표 IV-2-59〉 확인점검제 개선 필요성	144
〈표 IV-2-60〉 확인점검 개선안 의견	145
〈표 IV-2-61〉 평가체계 관련 향후 정책 필요성	145
〈표 IV-2-62〉 평가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1순위)	146
〈표 V-2- 1〉 보육 중장기 정책목표 및 과제와 세부추진사업	174

그림 차례

[그림 II-1- 1] 보육·교육서비스 전달체계	27
[그림 III-1- 1] 새싹플랜의 정책분야와 정책 과제	38
[그림 III-1- 2] 새싹플랜의 주요성과 지표	39
[그림 III-1- 3] 아이사랑플랜 추진 방향	44
[그림 IV-2- 1]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순위	100
[그림 IV-2- 2] 집단별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 1순위	100
[그림 IV-2- 3]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순위	101
[그림 IV-2- 4] 집단별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 1순위	101
[그림 IV-2- 5]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 정책 우선순위	117
[그림 IV-2- 6] 집단별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 정책 우선 1순위	117
[그림 IV-2- 7]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우선순위	124
[그림 IV-2- 8]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우선 1순위	125
[그림 IV-2- 9]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정책 우선순위	133
[그림 IV-2-10]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정책 우선 1순위	134
[그림 IV-2-11]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순위	140
[그림 IV-2-12]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 1순위	141
[그림 IV-2-13] 평가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147
[그림 IV-2-14] 평가체계 관련 정책 우선 1순위	147
[그림 V-1- 1]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과 과제 도출 절차	154
[그림 V-2- 1]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164

요 약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보육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2017년 5년간 추진하여야 할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향후 보육 정책의 추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영역별 정책과제, 추진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보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자료를 검토함.
- 저출산, 가족지원 등 국내외 보육정책 관련 사회적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전망함.
- 보육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차기 정부 보육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보육 정책 목표를 설정함.
- 주요 보육 정책 영역 및 영역별 세부과제를 도출함.
- 과제별 추진 목표 및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보육 정책 세부과제별 연차별 추진 목표를 설정함.

다.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설문조사, 자문회의를 실시함.
 - 보육현황, 보육정책 및 보육계획에 관련된 국내 문헌과 국가발간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외국의 보육정책과 정책방향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학계 교수,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 보육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 방향 및 보육정책 방향 설정, 중장기 보육정책 과제 선정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및 발전과정

가. 보육 현황 및 보육정책

-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39,84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621,948명이며 그 중 현원은 1,348,729명으로 이용율은 전체의 83.2%를 차지함.
 - 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수는 평균 33.9명이고,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수는 총 248,635명이며,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는 5.4명임.
- 정부는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5세 유아를 위한 공통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됨.
 -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나. 보육정책 발전과정 및 현황

- 1920년대의 구빈적성격의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이래로 현재까지의 보육정책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였고 1989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함.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됨.

- 200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보육사무가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 1. 30)에 따라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2006년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중장기 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을 발표함하고, 2009년에 이르러 이를 보완·수정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이 수립되고 시행됨.

3. 보육계획 및 보육정책 평가

가. 보육 발전 계획 및 정책 평가

-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두 가지 중장기 보육계획(정책)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보육현장과 보육의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아이사랑플랜은 참여정부의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으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됨.
- 지방정부의 보육계획
 -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차원의 첫 번째 중장기계획인 새싹플랜보다 3년 먼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재까지 제1~3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이 수립되었음.
 -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과 제주아이사랑플랜(2011~2012)는 중앙정부의 아이사랑플랜에 따른 지방정부의 보육계획으로 아이사랑플랜과 동일한 정책방향을 지향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음.
 - 경기도 안산시의 중장기 보육계획(2007)은 안산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육수급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보육계획(안)을 수립함.

나. 외국의 보육 현황 및 정책 방향

- 외국의 보육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보육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 부모의 보육비용, 서비스 유형, 질적 수준, 인력, 지원 및 행정체계의 여섯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함.
 - 스웨덴은 출산이나 보육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보육정책 유형은 공공서비스제공 접근방식으로 분류되거나, 프랑스와 동일하게 임의적 가족주의로 분류될 수 있음.
 - 보육업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점차 감소하여 교육과정, 공교육 체계를 위한 국가적 목표 및 안내지침을 담당하는 한편, 지자체가 실무를 추진하는 추세를 나타냄.
 - 프랑스는 보육에 대하여 보편성과 공보육체제를 지향하며,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 기준으로 유럽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근래에는 중앙체계적인 공교육 체계가 지방분권적 형태를 나타내는 추세이고, 양질의 보편적 보육체계를 제공하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가구 특성에 따른 개별화 방향을 추구하고, 보육비용분담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보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며, 보육서비스의 지원방향이 계층, 소득, 자녀수와 연령, 취업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미국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반 위에서 제한적 수준의 공보육 지원을 하며 시장화 된 보육서비스를 강조하는 국가임.
 - 높은 여성 취업률을 나타내나 포괄적 보육정책이 결여되어있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한된 형태의 공교육체계를 실시함.
- 보육정책의 평가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표는 OECD(2006)가 제안한 10가지 정책, John Bennett이 2008년에 발표한 '15개 벤치마크', UNICEF(2008)의 10개 지표 등이 있음.
 - OECD(2006)는 'Starting Strong II'에서 향후 영유아교육·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10가지 정책을 제안함.

- UNICEF(2008)의 '영유아교육보육 벤치마크 10개 지표'에서 정책구조, 기회, 질 지원의 4개 범주로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신뢰할만한 지표로 평가된 바 있음.

4. 보육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가. 현 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대한 평가

-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함.
 -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적절하게 향상된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형평성은 별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부모는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향상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세분화된 서비스별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1/3에서 1/2정도로 나타남.
 - 맞벌이 부모에 적절한 양육지원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43.4%이었으나,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8.0%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 집단에서 두드러졌음.
-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리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담보와 같은 세부사업은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게 나타남.
 - 취약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와 같은 어린이집의 균형배치 세부사업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음.
 -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의 평균점수는 가장 낮았으며, 현장전문가는 63.2%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12.2%만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가 현저했음.
- 보육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남.
 - 세부사업별로 집단간 차이가 있어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의 경우 공무원은 학계전문가나 학부모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임.

-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와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과 같은 세부사업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음.
 -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에 대하여 학계나 현장전문가는 과반수가 향상되었다고 보았으나, 공무원과 학부모는 각각 23.7%와 18.8%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집단 별 차이를 나타냄.
-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추진,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6.4%에서 38.7%에 걸쳐 나타남.
 -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추진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으나,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비교적 높음.

나.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 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공공성에 대한 견해는 내용별로 다르게 나타남.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순위 우선권, 영아(0-2세)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 취업만큼 중요한 가정양육, 보육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내용에는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우선권에 대하여 전체의 90.1%가 동의하였고, 특히 학계전문가는 98.5%가 동의함.
 - 전체의 41.1%에서 45.9%의 응답자는 무상보육정책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에 차등 없이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
 -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만 1세 영아는 어린이집 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적합하며, 만 2세 유아에게는 1/3정도가 가정양육이 적합한 반면,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게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어린이집 보육이 가정양육보다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음.
 - 각 연령대에서 적절한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만 0~5세 모두 8시간 미만이었고,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남.

- 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소득계층에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맞벌이 부모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와 구분 없이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양육수당은 소득수준 및 영유아의 연령별 차등 고려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적정 지원금액으로 만 0~2세 20만원, 3~5세 0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 보임.
 - 무상보육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서비스의 다양성 및 공공성에 대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대비 비중을 확충시키고 민간 및 어린이집의 전체대비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음.
-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시간제 일시보육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협동보육을 활성화 하고 영유아가 아플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음. 특히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인식함.
- 운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위한 개선 요구
-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2세의 경우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만 3~5세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
 - '보육교직원의 인성강화'와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의 질적관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응답되고,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 '민간 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가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인식됨.
-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를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
- 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자체별 차등 없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교사의 보수는 호봉체계를 개편하거나 학력에 따른 차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한편 시설유형에 따른 차등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학과제로 자격부여방식을 전환하거나 보육실습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보육교사 자격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3급 보육교사 자격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음.

- 향후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의 상향조절'과 '이동학대, 보조금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 제재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사업지원체계 및 부모참여에 관한 개선 요구
 -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마더탐사단이나 부모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있는 현 체계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향후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을 강화하거나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됨.
 - 특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으로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음.
-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
 - 평가인증지표는 보육과정 중심 개편과 지도점검 내용과 일관된 안전, 건강, 위생이 강조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이 연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제는 불시점검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았음.
 - 평가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일원화 관리는 평가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특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으로 인식됨.

5. 보육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보육정책의 방향

- 보육의 정체성 확립과 보육이념 정립
 - 영유아 최우선의 보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영유아나 보호자의 배경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음을 보육이념으로 함.
 - 영유아에게 최상의 출발과 공평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가정양육지원도 기존의 시설지원과 동등한 비중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고려, 보육의 공공성 확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 부모의 다양한 요구 반영, 부모의 취업지원, 취업모를 위한 차별적 정책을 통한 맞벌이 가족 지원, 어린이집과 가정연계, 장애특수아동 지원, 부모교육 활성화
- 보육의 질 관리체계 마련
 - 어린이집 재정운영 투명성 개선 및 정보공개, 정기평가-모니터링단 운영-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관리체계 강화
- 적정 보육시간 및 보육방법
 - 연령 별 아동의 적합한 양육형태(가정양육 혹은 보육)를 고려한 보육방법 및 시간이 달라져야 함.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서로 다른 양육욕구에 맞춘 차별화 필요함.
 - 영아와 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함.
- 보육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 보육교사 양성교육 내실화,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필요함.
 -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 공공인프라 마련 및 민관학의 연계망 활성화
 -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및 부모참여 활성화

나. 보육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 6가지 정책목표(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육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에 따른 22가지 정책 과제와 96가지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함.

- 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
 - 보육료 지원정책 합리화, 양육수당 지원정책 적절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급 조절
-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
 -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시간제 일시보육 확대,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절,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실화, 운영 및 환경 관련 정책 과제
-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보수교육 및 보육교사 관리 강화, 보육 인력 보수 개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기능 다양화, 부모참여 확대 및 정보제공,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합 질 유지, 평가인증 사후관리 방안 정교화,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1989)에서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8조에서는 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 국가가 아동양육을 위해 양육자를 지원하고 아동에게 보호시설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취업부모의 아동이 양육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만 5세까지 영유아는 약 277만 명으로 이 중 68.3%에 해당하는 189만 명이 어린이집(133만 명)과 유치원(56만 명)을 이용하고 있으며, 약 88만 명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영아는 54%에 해당하는 74만 명이, 유아는 82%에 해당하는 116만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시설이용 비율은 OECD 평균(2008) 영아 30%, 유아 77%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관계부처협동, 2012).

최근 정부의 영유아보육정책은 정책 대상의 특성이나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보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설보육 외에 영유아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확대나 보완 없이 시설에 다니는 만 0~2세 보육료 전면 지원에 따라 영아들의 장시간 시설 보육 의존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보육 지원 보다는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육 예산의 규모가 급증하고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이 놀라운 반면 질적인 발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한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 11조, ‘보육계획이 수립 및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보육계획이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제1차 새로마지 플랜(2006~2010)」과 「제2차 새로마지 플랜(2011~2015)」, 그리고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2012. 3)」 등이 기획되어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차기정부 역시 영유아 보육 정책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보다 진전되고 효율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향후,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격려하는 시급한 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중장기적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하여야 할 보육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2017년 향후 5년간 추진하여야 할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부모 재정 부담 완화, 인프라 확립 및 다양성 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원 및 행정체계 효율화 등 과제별 추진 목표 및 보육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자료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새싹 플랜, 아이사랑 플랜 등 근래에 실시된 중앙정부의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방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 실적, 평가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저출산 등 국내외 보육정책 관련 사회적 환경변화를 파악한다.

셋째,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 국외의 보육현황 및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넷째, 보육의 정체성과 이념을 정립하여 보육 중장기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한다.

다섯째, 보육정책 영역 및 영역별 세부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파악된 현황 및 문제점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수집·분석

보육정책 및 보육계획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보육정책 및 보육계획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의 보육정책과 중장기 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 조사

보육 분야 전문가와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 성과 평가, 보육의 목표 및 보육정책의 방향 설정, 보육정책 영역별 우선순위 평가 및 개선방향 등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

본 조사는 보육 분야 전문가 202명(학계 67명, 공무원 97명, 현장 38명)과 학부모 90명, 총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 학부모의 명단을 확보한 후, 보육 관련학과 교수 100명,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현장 전문가 60명, 보육 담당 공무원(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00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영유아 학부모 100명을 선정하였다. 전체 360명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는 총 292명이다.

〈표 1-3-1〉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 조사 대상 수

구분	전문가			학부모	계
	학계	공무원	현장		
수	67	97	38	90	292
비율(%)	22.9	33.2	13.1	30.8	100.0

단위: 명, %

2) 조사 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 내용은 관련 연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구진이 1차 개발한 뒤, 학계 및 현장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쳤다. 주요 내용

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성과 평가, 보육의 목표 및 보육정책의 방향 설정, 보육정책 영역별 우선순위 평가 및 개선방향 등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1-3-2> 와 같다.

<표 1-3-2> 설문조사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조사대상의 특성	전문가용
	학부모용	성별, 자녀연령 및 성별, 거주 지역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형 및 평가인증 여부,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
현 보육정책 (아이사랑플랜) 성과 평가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보육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보육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보육정책의 방향 설정	방향 설정에 대한 견해 및 우선 순위 연령별, 부모 취업 유무별 적정 보육이용 시간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고	보육료 지원정책의 개선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개선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개선 및 향후 지속 필요성 및 우선 순위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개선 및 향후 지속 필요성 및 우선 순위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	개선 및 향후 지속 필요성 및 우선 순위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개선 및 향후 지속 필요성 및 우선 순위	
평가체계	개선 및 향후 지속 필요성 및 우선 순위	
향후 중장기 보육정책	중기 추진과제 내용 제안 장기 추진과제 내용 제안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연구 방향 및 보육정책 방향 설정, 중장기 보육정책 과제 선정, 설문지 검토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정책 주제별로 외부 보육 분야 전문가가 발제하고 참석하는 소규모 워크숍 개최로 의견을 수렴하며,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되는 중장기 보육 계획안에 대한 자문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II. 보육정책 현황 및 발전과정

1. 보육현황 및 보육정책

가. 보육 현황

1) 어린이집 현황

2012 보육통계(2011. 12 기준)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39,8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가정어린이집(52.0%), 민간어린이집(37.7%), 국공립어린이집(5.3%), 법인어린이집(3.7%), 직장어린이집(1.1%), 부모협동어린이집(0.2%)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621,948명이며 그 중 현원은 1,348,729명으로 이용율은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수는 평균 33.9명이다(표 II-1-1 참조).

〈표 II-1-1〉 2011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일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의	민간 개인					
어린이집수	개소	39,842	2,116	1,462	15,004	870	14,134	20,722	89	449	
	(비중)	100.0%	5.3%	3.7%	37.7%	2.2%	35.5%	52.0%	0.2%	1.1%	
	정원	1,621,948	157,478	141,966	923,812	61,708	862,104	363,430	2,726	32,536	
	(비중)	100.0%	9.7%	8.8%	57.0%	3.8%	53.2%	22.4%	0.2%	2.0%	
아동수	현원	계	1,348,729	143,035	112,688	757,323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남	699,806	73,850	59,408	392,505	26,341	366,164	159,878	1,248	12,917
		녀	648,923	69,185	53,280	364,818	24,335	340,483	148,532	1,038	12,070
	(비중)	100.0%	10.6%	8.4%	56.2%	3.8%	52.4%	22.9%	0.2%	1.9%	
	이용률	83.2%	90.8%	79.4%	82.0%	82.1%	82.0%	84.9%	83.9%	76.8%	
1개소당 아동수		33.9	67.6	77.1	50.5	58.2	50.0	14.9	25.7	55.7	

주: 아동수는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기준

이용률은 현원/정원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수는 총 248,635명이며,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5.4명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II-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2> 2011년 12월 기준 보육교직원 일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민간 법인의	민간 개인				
보육교직원	계	248,635	22,229	17,491	120,503	7,724	112,779	82,911	485	5,016
	남	8,663	501	1,364	5,572	496	5,076	1,161	14	51
	녀	239,972	21,728	16,127	114,931	7,228	107,703	81,750	471	4,965
	(비중)	100.0%	8.9%	7.0%	48.5%	3.1%	45.4%	33.3%	0.2%	2.0%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5.4	6.4	6.4	6.3	6.6	6.3	3.7	4.7	5.0	

주: 아동수는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기준
이용률은 현원/정원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2)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은 <표 II-1-3>과 같다.

<표 II-1-3> 2011년 12월 기준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1,348,729	143,035	112,688	757,323	308,410	2,286	24,987
만0세	146,666	3,147	3,200	38,085	101,229	107	898
만1세	249,787	16,512	13,157	104,744	111,249	223	3,902
만2세	342,879	30,233	25,328	194,744	85,992	487	6,095
만3세	272,034	33,662	27,890	196,007	7,612	537	6,326
만4세	182,999	31,034	21,637	123,896	1,257	509	4,666
만5세	137,349	25,700	18,134	89,399	756	403	2,957
만6세 이상	17,015	2,747	3,342	10,448	315	20	143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만 6세 이상을 제외한 취학전 0~5세 영유아는 총 1,331,714명이다. 약 133만 명의 보육아동 중 0~2세 영아는 739,332명(55.5%)이며, 3~5세 유아는 592,382(45.5%)명으로 영아가 유아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는 영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아동수가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의 순서로 많으며, 유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아동수가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순서로 많다.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보육교직원의 수는 약 248,635명이다. 그 중 어린이집원장은 39,546명이며, 보육교사는 180,247명이고, 특수교사 1,341명, 치료사 550명, 영양사 706명, 간호사 891명, 사무원 934명, 취사부 17,457명, 기타교직원이 6,963명이다(표 II-1-4 참조).

〈표 II-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세 현황

단위: 명

원장				보육교사							
소계	20인이하 어린이집	40인미만 어린이집	40인이상 어린이집	소계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39,546	20,765	6,893	11,888	180,247	172,378	1,295	604	5,620	301	49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계		
			소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1,341	550	706	891	598	293	934	17,457	6,963	248,635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총 인원은 22,229명이며, 법인어린이집은 17,491명, 민간(법인외)어린이집은 7,724명, 민간(개인)어린이집은 112,779명, 가정어린이집 82,911명, 부모협동어린이집은 485명, 직장어린이집 5,016명으로 집계되었다. 보육교직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과 같이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개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법인외)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원장과는 달리 민간(개인)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이 많았다. 특수교사의 경우, 법인어린이집에 가장 많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순이다. 치료사도 특수교사와 같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특수보육의 일환으로 장애통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의 기타 보육교직원은 민간개인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표 II-1-5〉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총계	248,635	39,546	180,247	1,341	550	706	891	934	17,457	6,963
국·공립	22,229	2,099	15,376	502	132	85	147	132	2,669	1,087
법인	17,491	1,459	12,037	577	336	91	117	162	1,871	841
민간	법인외	7,724	867	5,102	54	20	35	50	101	899
	민간개인	112,779	14,030	85,079	198	62	415	508	408	8,379
	가정	82,911	20,557	58,674	5	-	1	8	53	2,997
부모협동	485	88	328	1	-	3	-	3	51	11
직장	5,016	446	3,651	4	-	76	61	75	591	112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4) 보육료 지원 현황

연령별 보육료 지원 현황을 영유아법정보육료(①), 영유아보육료(②), 장애아보육료(③), 다문화보육료(④), 만5세 보육료(⑤), 방과후 보육료(⑥), 기본보육료(⑦, 0~2세 및 장애아) 이상 7가지 부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II-1-5>과 같다. 먼저, 기본보육료 부분을 제외하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전체아동은 약 99만 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가 약24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만3세, 만1세, 만4세, 만5세이상, 만0세의 순이다. 영유아법정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7,955명이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가 7,521명으로 가장 많고, 만4세, 만2세, 만1세, 만0세의 순이며, 만5세 이상에서는 1명의 아동만 지원받고 있다.

〈표 II-1-6〉 전체 보육료(기본보육료 제외) 및 영유아법정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보육료 지원 현황(①~⑥)							영유아법정(①)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991,310	112,933	188,198	244,469	196,531	133,908	115,271	27,955	2,182	4,301	6,749	7,521	7,201	1

주: 보육료 지급 총계: 각 자격별 아동 총 수 (기본보육료 부분 제외)
 연령: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연령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815,230명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가 약 23만명으로 가장 많고, 만3세, 만1세, 만4세, 만0세의 순이고 만5세이상에서는 9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14,405명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5세 이상이 6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대체로 연령이 적어질수록 적은수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연령에는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진단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I-1-7〉 영유아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영유아(②)							장애아보육료(③)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815,230	104,765	175,156	230,061	182,762	122,477	9	14,405	548	699	1,681	2,501	2,294	6,682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6,209명이며, 만1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2세, 만0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의 순이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받는 아동수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만5세 보육료는 법정지원이 7,335명, 일반지원이 91,999명으로 총 99,334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5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료지원이 해당된다. 또한 방과후보육료는 법정지원이 3,219명, 일반지원 4,958명으로 총 8,177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표 II-1-8〉 다문화보육료, 만5세 보육료 및 방과후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다문화보육료(④)							만5세(⑤)			방과후(⑥)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계	법정	일반	계	법정	일반
26,209	5,438	8,042	5,978	3,747	1,933	1,071	99,334	7,335	91,999	8,177	3,219	4,958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기본보육료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이에 포함되며, 장애아 통합 지정 어린이집의 장애아 중일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보육연령 0, 1, 2세인 장애아의 경우 연령을 우선 적용하여 각 연령별에 포함하여 지원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1-9>와 같다.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전체 아동 수는 약 57만명이다. 그 중 만 0세아는 약 13만명, 만 1세 약19만명, 만 2세 약24만명, 장애아 681명이다.

〈표 II-1-9〉 0~2세 및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기본보육료(⑦)										
계	0세			1세			2세			장애아
	소계	보육료 지원	미지원	소계	보육료 지원	미지원	소계	보육료 지원	미지원	
576,361	133,889	102,416	31,473	193,625	146,969	46,656	248,166	177,965	70,201	681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

나. 보육정책 현황

1) 보육정책의 전반적 현황

정부는 그동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방법의 측면에서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

되고 있다. 서비스 내용에서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일시보육 등과 같이,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육비용 지원 이외로 병행되는 정책은 기관 미이용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가정 내 과건보육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부모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며,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5세 유아를 위한 공통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2013년에는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이미화, 2012).

이러한 정책 확대를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예산은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지원 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총 예산은 7조 7,502억원 규모로 GDP 대비 0.69%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약 1조 1억원 이상 확대되어 8조 9,340억원 규모로 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약 1조 1억원 이상 확대되어 8조 9,34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조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1%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장명림 외, 2012).

2) 현행 주요보육정책

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은 2012년 현재, 지원 대상에 따라 만0~2세 보육료, 만3~4세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구분되며 지원수준이 각기 다르다. 만5세아의 경우,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다. 만 0~2세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해당연령 영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만 3~4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해당연령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¹⁾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²⁾인 경우 보육료지원이 되고 있다. 만 3~4세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

1)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가장 낮은 계층을 소득하위 0으로 보고

락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4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이 지원 대상³⁾이다. 보육료지원대상에 따른 지원수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0〉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 금액
만0~2세 보육료	전계층(소득·재산수준과 무관)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4세 보육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3세 197천원 만4세 17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394천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구(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세 197천원 만4세 177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b). 보육정책. (2012. 6. 22 인출)

나)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차상위⁴⁾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계층을 소득하위 100으로 규정하여 하위로부터 70%를 의미한다.

- 3) 장애인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만3세~만8세이하의 아동도 지원 가능
- 4)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

〈표 II-1-11〉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주: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차상위가구 이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b). 보육정책. (2012. 6. 22 인출)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신설되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농어촌 거주 아동은 농지규모와 농어업 외 소득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며, 지원금액은 월 10~20만원이다.

다)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중심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정책 외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을 지정하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균형있는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어린이집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 시행예정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재정비되어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장애영유아의 기관배치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연장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및 지정 취소기준이 완화되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1년 537억원 규모에서 2012년 644억 규모로 약 110억원 가량이 증액되었다. 대상자도 2011년 1만명에서 2012년 1만 3천명으로 늘었다. 인건비 지원 기준도 2011년 30시간 기준에서 2012년 20시간 기준으로 완화되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2〉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관련 정책 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인건비 예산	537억원, 1만명	644억, 1만3천명
인건비 지원 기준	30시간	20시간
지정취소기준 완화	지정취소기준 중 2항 당연취소	임의조항

주: 시간연장반별 아동이용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b). 보육정책. (2012. 6. 22 인출)

라)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개발,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2009년까지 제1차 시행이 완료되어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이 시작되었다. 1차 시행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인증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평가인증 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참여과정 중 교사나 부모의 협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도 인증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인증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역에서 서비스 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2).

평가인증시설의 현황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어린이집 38,021개소 중 29,882개소가 평가인증에 통과하여 통과율 78.6%(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2차 평가인증의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지표 고도화 및 73.33점에서 75점으로의 통과점수의 상향조정, 둘째, 어린이집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구비 및 준수여부, 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 법적 준수사항을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등이 있다. 2012년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는 참

여신청(1개월), 자체점검(3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의 총 4단계(6개월 소요)로 이루어져 있다.

마)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2009년 설립하였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영양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시설 운영 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을 강화하였다.

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20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함으로써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사) 보육관련 포털시스템 구축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종사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관련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 검색,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및 상담 등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아) 공공형어린이집 도입

정부와 지역사회, 시설,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육시설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도입되었다. 평가인증결과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놀이터, 비상
 재해대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1급 보육교사가 많은 보육시설을 위주로
 선정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
 사의 인건비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정부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정부는 2012년 3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서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0~5세 전 계
 층에게 지원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서비스 지원은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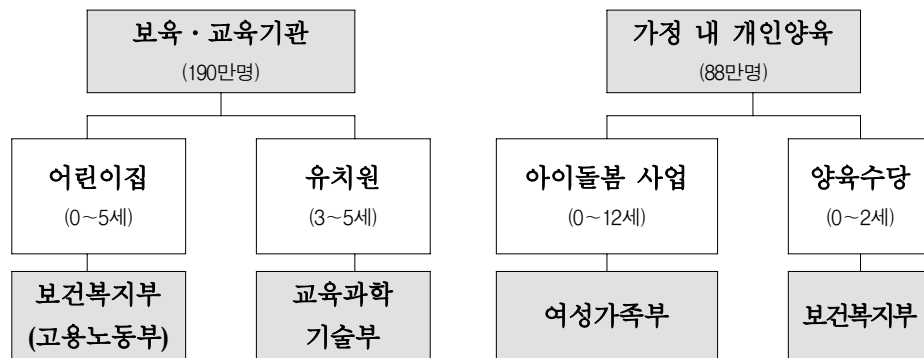
2012년 3월부터 0~2세 보육료가 전계층으로 확대·지원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영아 보육수요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출산 직후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확대 취지는 살리면서 불요불
 급한 가(假)수요 발생 및 맞벌이 부모 역할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양육과 시설보육간의 인센티브 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단기간의 양적 확충 이후 아동학대, 안전·급식사고, 보조금 횡령, 권리
 금 거래 등 부적절한 보육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
 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아동학대·안전사고 근절 및 보육교사 처우·자질향상
 등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비용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자와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진의 배경이다.

4) 보육정책 추진의 장애요소(문제점)

정부는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의 일곱가
 지 영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체
 계의 문제이다.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0~5세를, 유치원에
 서 3~5세를 맡아 각각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교과부,
 여성부, 고용부 등 이상의 4개 부처가 보육·교육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정책을 수

행하고 있다(그림 II-1-1 참조). 더불어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가 정착되고 어린이집 시설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민간 위주의 시설 공급체계를 국공립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예산·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곤란하다. 또한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시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육서비스 공급 과잉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이 낮아 공급 과잉과 품질 저하가 초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보육·교육서비스의 공급체계와 전달체계 및 시설공급의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1] 보육·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둘째, 보육·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점이다. 유아기부터 바른 생활습관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시설환경, 이용시간, 교사 자질 및 처우 등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한편,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도약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육 시간에 관한 문제점이다. 부모의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종일제 보육시간 제공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자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

고,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및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넷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선택권 지원의 불균형 문제이다.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함에도 보육료 지원만 확대됨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필요한 영아의 시설보육 의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불요불급한 시설 가(假)수요 발생으로 맞벌이 부모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다섯째, 건강·급식·위생·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다.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장치가 미흡하거나 통학차량 이동의 안전성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모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위생 관리 부실 및 도덕적 해이와 함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부모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여섯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부모·지역사회의 참여 및 시설 정보 공개 부족 등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08~'10) 부정수급 어린이집으로 2,918개소가 적발되었고, 그로 인한 환수결정액이 166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절차의 엄격성 및 사후관리 소홀, 재정지원과의 연계 미약 등으로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본래의 취지의 달성이 미흡한 것에 우려가 있다. 어린이집 권리금 거래·아동 허위 등록 등 부정·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하고, 제재가 미흡하여 국가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곱째, 보육교사의 자질과 처우에 관한 문제이다. 보육교사 중 인터넷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교사양성과정으로 인해 보육교사 공급 과잉 및 자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67만 6천명이 배출되었고, 현직 종사자는 18만명(26.5%)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 등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력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러한 현상은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보육교사의 월 평균 임금은 114만원(2009년)이고, 사립 유치원교사는 166만원(2010년)으로 나타난 바 있다.

5) 2012년 보육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

2012년 현재, 정부는 보육정책의 현안으로 0~2세 영아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

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 2011년 연말 '1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주도로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0~2세 보육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0~2세의 경우 가정양육보다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이 커서 부모의 선택권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영아의 발달에 있어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0~2세 보육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장에서는 영아 보육의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과 교사가 부족해지고, 거짓 수요 발생에 따른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이후 보육료 신청 상황, 현장의견을 토대로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시행(2012. 2. 22)하였다. 보육서비스 품질 및 중장기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정원의 여유분 활용 및 우수 어린이집의 정원 확충(10~15만명)을 하고, 신규 보육교사 약 4만명을 중심으로 그 중 약 1만명을 어린이집 취업과 연계하고, 민간어린이집에도 맞벌이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영아 보육서비스 시행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층 지원을 위하여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보완하고 강력하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로 민간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행정지침상의 우선순위 기준과 재정지원과의 연계 및 2012년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II-1-13〉 영유아 인구 추계

년도	1990년	2000년	2010년	2030년
영유아 인원	387	397	273	256

단위: 만명
 자료: 관계부처합동(2012).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2012년 3월 22일 보도자료)

한편, 정부는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①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②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③ 부모의 수요와 책임성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 ④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⑤ 아동이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등 이상의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2. 3. 22). 먼저, 어린이집 수급에 관해 정부는 최근의 0~2세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양육수당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

로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 인구 추계와 달리, 어린이집의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보육 수요 대비 어린이집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간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이 낮아 열악한 시설의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품질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표 II-1-14〉 어린이집 시설수 추계

년도	단위: 개소		
	2000년	2005년	2011년
시설 수	19,276	28,367	39,842

자료: 관계부처합동(2012).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2012년 3월 22일 보도자료)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선대책으로 첫째, 신규로 확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 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 자녀와 맞벌이부모의 영유아를 중점 보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민간 어린이집 품질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정원 확대 및 운영기간 보장, 기업의 직장 보육서비스 의무 조기이행 유도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셋째,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강화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서비스 공급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2).

두 번째, 누리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프로그램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도에 시행되는 3·4세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유아가 배려, 협력, 존중, 갈등해결 등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생활 속 습관으로 익힐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세 번째, 부모의 수요와 책임성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을 위한 대책이다. 현행의 일률적인 보육시간 제공은 부모의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저하,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및 교사의 근로

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일 보육시간은 현재와 같이 12시간을 유지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는 확실하게 담보하되, 야간 보육시간을 조정하고, 주 5일제 원칙을 어린이집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주말 보육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을 위한 대책이다.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나, 맞벌이 부모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해 시설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시설보육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의 격차(금액)로 인해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향후 0~2세는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3~5세는 교육투자차원에서 시설보육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아(0~2세)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 양육서비스인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 및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아동이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설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민간·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시설 설비 보강목적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안을 밝혔다. 어린이집 등·하원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심 하차 정류장'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급식·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얼니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어린이 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여섯 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먼저, 부모와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참여 지원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모가 보육프로그램·예·결산 등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5세 누리과정 부모 체험단을 구성하여 생활권 단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부모참여활동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예: 평가인증시 가점부여, 유효기간 연장 등)를 부여하여 열린 운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정보(예: 비용, 교육내용, 종사자 현황 등)를 보육포털·어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

보하는 안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인증 내실화 및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부적절 어린이집의 도퇴를 유도하고, 부모·지역사회 중심 평가제로의 전환 및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하는 안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역사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위반 사례 신고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한도 상향 또는 정률제로 전환하며, 권리금 거래 등 부적절 운영 행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급 제,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를 위해 상시 연수 체계 마련 및 현장 실습 체계화를 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중장기 개편방안이 검토되어 인터넷을 통한 자격취득 경로를 재검토하며, 보육교사 임금수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의 경우, 향후 5년간 민간보육교사 평균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하여 유치원교사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 보육정책 발전과정 및 현황

본 절에서는 1920년대의 구빈적성격의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이래로 현재까지의 보육정책의 발전과정을 영유아보육법령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탁아사업('21~'91)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되었으며,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를 맡고 있었다.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되었고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였다. 직장탁아의 경우

19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가 도입되었고, 1989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04)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되었는데,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되게 된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목적은 보육시설의 조석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다.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04.6~'08.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 1. 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4년 6월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제1차 육아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 1년 간 육아휴직을 포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등이 포함되었다. 2005년 5월에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담은 제2차 육아지원정책이 발표되었는데,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이 그 내용이었다. 2005년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가 실시되었다. 2006년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중장기 계획으로써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수준까지 확충,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지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09)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이 마련되었다.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규정,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조치 처분이 규정되었다.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육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규제 조항이 구체화되었다.

라. 아이사랑플랜 수립·시행('09~'12)

2008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정책방향은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화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육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시설 안전공제사협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육지원정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2009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이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10)을 보완·수정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이 수립·시행된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시설 미 이용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 5세 누리과정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책변화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4월, 6월, 7월, 12월에 걸쳐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정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절차, 양육수당 대상자 등을 구체화하였고,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을 합리화하였으며,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항목을 표준화하고 국공립보육

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3자녀 이상 가구 및 다문화가족의 영유아가 추가 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 및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2010년과 2011년에 이루어진 영유아보육법 개정내용은 <표 II-2-1>과 같다.

<표 II-2-1> 2010, 201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법 개정 시기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2010.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011.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만2세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변경
2011. 6.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등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등으로 변경하고 보육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놀이터 설치 관련 2005. 1. 29 이전 인가어린이집 기준 적용 완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등 규정마련
2011. 8. 영유아보육법 개정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유형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위탁시 공개경쟁방식 도입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및 인증 취소 사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재산피해보상까지 확대 - 보육정보센터·보수교육·이용권관련 업무 위탁규정 통합 정비
2011. 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무상보육대상자를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로 하고 이중 만5세아 무상보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변경
2011.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정비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하는 규정 등 마련
2011. 1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요청 -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표 II-2-1 계속)

법 개정 시기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2011.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절차 강화 -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 -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우선제공 -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우선제공 -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층수 기준 완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2012c). 2012 보육사업안내.

Ⅲ. 보육계획 및 보육정책 평가

1. 보육 발전계획 및 정책평가

우리나라의 보육 발전 계획은 크게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한 보육 발전 계획과 지방정부차원에서 수립한 보육 발전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과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을 살펴보고,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보육 발전 계획으로 인천광역시의 1~3차 중장기 보육계획, 경기도의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 제주아이사랑플랜(2011~2012),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2007~2011)을 살펴보고,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 중앙정부의 보육 발전 계획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보육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구빈적 성격을 띤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이었다. 1962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과 1982년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어린이집의 관리가 이루어졌고, 1987년에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12d). 그러나 그마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여성경제활동 제고, 또는 아동발달 지원 대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현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옥, 2010).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OECD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유도한 보육정책이 있었다(보건복지부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2001). 이 정책의 결과로 과도한 민간보육시설 점유율, 민간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이 비형평성,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문제 등이 나타났다. 1997~2002년의 국민의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인가규정을 보고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영세하고 부실한 민간시설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보육시설의 불균형, 이용비용 부담, 미흡한 수준의 서비스 질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차기정부인 참여정부는 2006

년 ‘공보육’을 기조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10)을 마련하는 등 보육정책의 활성화에 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 정부에 이르러 ‘국가책임 보육’을 기조로 새싹플랜을 수정·보완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09~’12)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두 가지 중장기 보육계획(정책)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보육현장과 보육의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10)

가) 새싹플랜의 추진방향

참여정부 보육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이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새싹플랜’이라고 불리는 참여정부의 중장기 플랜은 2005년 5월 중장기 보육계획 시안 마련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보육현장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정책분야	정책 과제
공보육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부모 육아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 활성화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 보육사업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자료: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그림 III-1-1] 새싹플랜의 정책분야와 정책 과제

참여정부 들어 보육업무가 2004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매년 2천억 원씩 보육예산이 증액되고, 보육료 지원 아동수도 13만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던 것에 그 배경이 있다. 이에 따라 새싹플랜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새싹플랜의 정책목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정책분야, 20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5개 정책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 공보육 기반 조성, 2)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3)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4)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이다. 새싹플랜의 정책 분야와 정책 과제는 [그림 III-1-1]과 같다.

주요지표	2005년	2010년								
보육비용 정부 재정분담률	35.8%	60.0%								
국공립 보육시설 수	1,352개소	2,700개소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99만명	125만명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41.1%	80.8%								
보육시설 종사자 수	137천명	180천명								
민간보육시설 보육비용/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80%수준('06년)	100%수준								
평가인증 대상 시설	1,000개소 (시범 운영)	전면 실시 (매년 1만 개소)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table border="1"> <tr> <td>유아</td> <td>68.6%</td> </tr> <tr> <td>영아</td> <td>21.1%</td> </tr> </table>	유아	68.6%	영아	21.1%	<table border="1"> <tr> <td>유아</td> <td>87.8%</td> </tr> <tr> <td>영아</td> <td>33.4%</td> </tr> </table>	유아	87.8%	영아	33.4%
유아	68.6%									
영아	21.1%									
유아	87.8%									
영아	33.4%									

[그림 III-1-2] 새싹플랜의 주요성과 지표

이 가운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핵심 과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기준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것이며, 보육료 지원 확대,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시스템 확대, 보육행정전산망 전국 확대 시행,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새싹플랜의 총 예산 규모는 5년간('06~'10년) 국비만 총 6조 7천억원 수준이며 지방비 포함시 14조 9천억원이었다.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5년 뒤에 달성하게 될 주요성과 지표는 [그림 III-1-2]과 같다.

나) 새싹플랜에 대한 평가

새싹플랜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던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은 아래 <표 III-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을 상정하여 1-2차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회의와 영유아보육법 개정 작업을 필두로 추진되었다.

<표 III-1-1>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기본 방향

구 분	주요 내용
2004년 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제고 필요성 강조 - 육아정책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전국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조사 제안 - 육아정책 연구기관 설치 제안
2004년 영유아보육 법령 전면 개정	- 보육대상을 '영유아'로 개정, 보육서비스의 보편주의 개념 규정 - 보육시설 설치를 인가제로 수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부모 참여 확대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정: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지표 개선 - 국가 수준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보급, 보편적 보육 활동 준거 제시 - 보육시설 종사자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종사자 자격 공적관리제도 수립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육시설 서비스 관리감독 공적기제 확립
2005년 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 보육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대책 수립: 보육재정 확대 - 종사자 교육 강화, 평가인증제 도입 등 행정력 강화방안 제시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자료: 이옥(2010). 한국 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p. 203.

2004년, 차등보육료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소외 영유아 보육권 확대 정책 추

진, 2005년, 영아보육에 대한 보편적 기본보조금 제원제도 추진, 5년 간 연평균 35%의 보육예산 증액 확충, 평가인증시스템 도입과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행정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기제 확충사업,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과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정책 등(여성가족부, 2006; 유희정, 2007;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a; 2007b; 2008c)이 보육의 질적 수준관리와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제고시킨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보육정책은 여성가족부의 관장하에 이루어졌는데, 보육중장기 정책플랜으로 '새싹플랜'이 추진되었고,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자격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보육행정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다음 <표 III-1-2>과 같다.

<표 III-1-2> 참여정부 여성가족부의 보육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새싹플랜 5대 정책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도입·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영아보육 기본 보조금제도 도입 - 특수보육 등의 활성화·확대 - 보육시설 환경개선, 건강·영양·안전 관리 강화 -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및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보육정책사업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기능 활성화: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 등 30개 설치 - 보육자격사무국 설치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설치 - 육아정책개발센터(육아정책 관련 국책연구소, 현 육아정책연구소) 설치
보육 행정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보육정책국과 재정·지원·정책 등 3개과 신설로 보육 행정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확대, 보육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행정 전산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도입, 아동 무차별의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념이 명시되고 정부의 보육비 지원 근거, 보육행정력 강화(각급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부모 참여, 평가인증 도입, 서비스 규제 강화 등)와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국가자격화, 표준보육과정 개발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OECD가 제안한

공공성과 보편성 제고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을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보육비용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3〉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성과 지표

정책목표	정책 지표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공급: 5년간 8700개소 증가 -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과 점유율: 5년간 418개 국공립시설 설치 2002년 국공립보육시설 점유율 6.0%에서 2006년에는 5.6%로 감소,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수는 5년간 14,00명 증가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5년간 29만명 증가
보육비용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예산: 국비와 지방비 포함, 2003년 약 4,790억에서 2008년 2조 9623억으로 연평균 35% 증가, 5년간 5배 증액 - GDP 대비 육아지원예산 비율: 2002년대비 2006년 4배 증가 - 소득별 차등보육료지원: 2002년 저소득층 106,000명에서 2007년, 563,000명으로 5배 증가 - 영아보육기초보조금지원: 2005년부터 추진 민간보육 이용 영아 전체 대상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평가인증: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07년 12월 50% 이상 보육시설 참여 - 시설 안전 강화: 육아시설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지원 예산 2002년 이후 20배 증액, 관계법령 강화로 물리적 환경 조건 개선 유도 -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료: 이옥(2010). 한국 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p. 204

참여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새 싹플랜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과, 중장기 정부예산에 상응하는 지방비에 대한 확보방안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였다(성효용, 2006). 기본보조금 지원 또한 아동수당, 차등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책확충방안과 보육재정배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립비용을 감안할 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갖는 비현실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차선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표갑수, 2006). 이러한 지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와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접근이 보육현장의 실정상 현실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기본보조금제도가 부모

바우처형태로 지급했을 때 다른 비용지원정책과의 중복문제로 인한 분명한 용도규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참여정부의 정책가운데 성과가 있었던 구체적인 정책사업 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한 정책 데이터의 수집 작업과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정책전문 연구기관의 설치를 들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5). OECD검토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의 수집(영유아보육법상 정례화)정책과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2004년부터 시행된 전국규모의 기초조사(여성부, 2005)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설립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참여정부 중반 이후 정책 결정 및 시행 관련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육정책 추진 목표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로서 설정,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정책의 과학화와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설정이 가시화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이해집단간의 입장에 따라 엇갈린 평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1) 국공립시설 확대 대 민간시설(사립) 활동, 2)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대 보편적 지원, 3) 육아서비스 이용가격 규제 대 자율화, 4) 시설(인건비) 지원 대 아동별 지원, 5) 자율성의 극대화와 정부개입 강화 등의 쟁점별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과 같은 주요 지표들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후기에 들어서 보육 예산지원의 형평성, 투명성 등을 거론하며, '보육시장'의 활성화, 보육시설 경쟁력 강화 등, 보육산업의 시장화가 유일한 정책 대안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제부처와 일부 경제학자의 논리가 힘을 발휘하였다. 민간보육의 책임론과 보육예산 지원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등이 보육정책 대안으로 강력하게 제안되기도 하였다(성효용, 2006; 김현숙, 2006). 이러한 주장들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입장(이욱, 2010)도 존재한다.

참여정부 5년간 추진되었던 보육정책 가운데, 특히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가와 보육아동 수의 증가, 보육시설 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과 표준보육과정의 보급, 보육종사자자격과 보육행정력 강화 정책, 부모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 확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데이터와 전문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OECD 20개국에 대한 1차와 2차의 영유아보육·교육 검토사

업단이 실증적 자료(OECD, 2006)를 근거로 일관되게 권고한 보육정책들과 부합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 '09~'12)

가) 아이사랑플랜 수립배경 및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첫 번째 중장기 보육계획이었던 「새싹플랜('06~'10)」이 2006년 수립되었으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보육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09~'12)」이 마련되었다. 아이사랑플랜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 2009년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하였다.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 5년마다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2010년도에 아이사랑플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행(2010. 3. 4)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2010).

아이사랑플랜은 참여정부의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으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되었다.



[그림 III-1-3] 아이사랑플랜 추진 방향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구축’이라는 3대 추진방향 및 부모의 비용부담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지원체계 구축 등 6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아이사랑플랜의 추진방향과 6가지 추진내용 및 소요예산은 다음 [그림 II-2-3]와 <표 III-1-4>과 같다(보건복지부, 2009; 2010).

<표 III-1-4>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09	'10	'11	'12
합 계	11,868,407	1,706,659	2,730,661	3,402,772	4,028,315
(1) 양육비용 부담경감	9,390,635	1,304,558	2,124,995	2,696,589	3,254,493
- 보육료 지원 확대	7,636,107	1,282,168	1,759,353	2,124,058	2,470,528
- 양육수당 지원	1,754,528	32,390	356,642	572,531	783,965
(2)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148,438	16,267	39,952	43,374	48,845
- 다문화가정 보육서비스 강화	34,990	473	10,796	11,466	12,255
- 장애보육시설 지원강화	5,860	292	1,856	1,856	1,856
- 맞벌이부모 지원	97,866	15,502	24,384	26,649	31,331
-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9,772	-	2,916	3,403	3,403
(3) 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251,572	25,416	74,438	75,175	76,543
- 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115,447	7,657	35,930	35,930	35,930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1,046	250	258	265	273
- 평가인증 활성화	16,001	3,401	4,100	4,200	4,300
- 보육시설 균형배치	119,078	14,108	34,150	34,780	36,040
(4) 보육교사 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2,042,412	341,862	480,820	578,738	640,992
-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8,196	1,979	2,025	2,072	2,120
- 보육교사 처우개선	2,034,216	339,883	478,795	576,666	638,872
(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38,810	7,556	8,506	7,306	7,442
(6)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4,540	1,000	1,950	1,590	-

자료: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나) 아이사랑플랜에 대한 평가

아이사랑플랜을 마련하고 시행한 현 정부가 출범하기 한 해 전인 2007년 수행된 연구(이옥 외, 2007)에서는 차기정부의 육아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부모, 전문가, 공무원, 교직원 의견조사 결과, 부모들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가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며, 향후 강화될 정책으로 기관이용비용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기관환경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을 들었다. 전문가와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 의견조사 결과는 유아교육분야와 보육분야 관련자의 응답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비 지원' 정책이었으나, 보육분야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었다. 어린이집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정책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이 가장 큰 요구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로 제안된 것은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시설 확충, 공공성 강화한 사립·민간시설 지원, 가격규제 예외시설의 도입,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등의 제안을 하였다. 즉, 차기정부를 위한 육아정책 과제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지원정책과 육아시설확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개편 관련 내용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문제: 정부지원예산증가불구 부모체감도 낮음 • 정책패러다임전환: 시설중심지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저소득층 무상보육, 포괄적서비스/중산층이상 부모선택권 존중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통합 일원화지원체계 구축 • 보육시설 이용시간 이원화: 기본형과 연장형 구분 지원단가 산정 • 모취업여부 등에 따라 이용단가 차별화 • 부모직접지원 전자바우처 도입 • 서비스 질적수준 유지: 평가인증제도 수정보완 • 보육료자율화: 보육시설 자율 결정후 신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 • 서비스 다양화: 국공립보육시설 중심 시간제 보육기회 확대, 가정내 파견사업 확대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부담경감으로 출산율제고, 취업부모 지원확대로 여성경제활동 증가 • 바우처 형식의 부모직접지원으로 부모 체감도, 소비자 선택권 증가 • 시장 기능 활성화로 민간시설 서비스 질 향상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은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의 보육정책 개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예산의 증액, 보육비지원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부모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정책문제로 삼고, 기존의 시설중심지원에서 수요자중심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무상보육과 포괄적서비스를 중산층이상의 부모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육료지원체계가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등이 중복되었던 것을 보완하여 통합 일원화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지원이 시설직접지원에서 부모직접지원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내 파견사업 확대 등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참여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효과로 설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인수위의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1-5> 과 같다.

또한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존의 보육시설 중심에서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하는 범주로 보육의 정의를 확대하였고, 보육정책대상을 전체 영유아임을 명확히 하였다. 2009년 초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연구가 이러한 법개정의 배경을 뒷받침한다. 영유아보육법을 수요자 욕구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수행에 적합한 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8년에 수행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연구(서문희·안재진·유희정 외, 2009)에서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이 정책대상인 아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하고 운영규제조항 또한 유명무실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을 대상으로한 보육에 대한 내용이 포괄되어야 하는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중심의 법에 머무르면서 정책대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과, 시설에 대한 운영·규제 조항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점은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서문희 외(2009)는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범주, 보육의 이념, 보육의 책임을 보완한 영유아보육법의 전문 개정이 필요하며, 법의 범주가 시설 중심에서 일반적 양육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담긴 보육의 범주,

이념, 보육의 책임이행자에 대한 명시는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써 필수적인 검토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8년 12월의 법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과 일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08년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200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내용	개정 이유 및 기대효과
보육의 정의 (2조)	-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됨을 명시, 보육정책대상을 전체영유아임을 명확히 함
취약보육대상에 다문화아동포함 (26조1항)	- 아동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실시, 취약보육 대상에 포함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31조2항 신설)	-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과 부모간의 분쟁을 막고,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육시설 협동조직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자녀가구 보육료지원 (34조3항 신설)	- 다자녀 가구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양육수당 (34조2항 신설)	-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왔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 미이용아동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 이용권 (34조3항 신설)	- 시설지원은 부모의 보육료 수혜체감도가 낮고, 보육료신청, 지급, 정산업무 복잡하여 개선 필요 - 보육시설 행정처리 부담 경감, 지자체의 행정 및 민원부담 감소로 업무 집중 기대

한편, 이명박 정부의 공약 및 국정철학인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보육 중장기플랜인 '아이사랑플랜 2009~2012'가 2009년 4월에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아이사랑플랜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 2006~2010'을 보완·수정하고, 영유아보육법상 명시된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2009년 시행계획과 함께 공표되었다.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영유아 중심', '국가

책임제 보육', '신뢰회복'의 3대 전략을 가지고, 6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정부의 공보육을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킨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이 국가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보는 것으로의 전환이며,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수요자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는 점, 재정지원 방식이 시설 지원에서 부모직접 지원으로 변경은 민간보육시장 활성화를 낳으며, 보육의 질적 수준요소인 교사 수준향상과 관리 감독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이옥, 2010)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비용지원정책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연계된 운영비 지원 및 보육료지원이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들(서문희·최혜선, 2010; 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이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공급과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부터 논의되어 201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양육수당 확대 등이 있으며 저출산 극복과 당면한 보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차기 정부의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의 비교

아이사랑플랜은 보육료 지원방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과 차별화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새싹플랜에서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에 한정하고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0%로 확대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수당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시설별 지원(기본보조금)과 아동별 지원(차등보육료)으로 이원화된 보육료 지원을 보육료로 통합하여 I-사랑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방식이 변경되었다. 또한 새싹플랜은 이용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 확충을 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수준의 질 향상을 목표로하고 국공립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표 III-1-7〉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 비교

구분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기간	2006~2010	2009~2012
소요 예산	6조 4580억 원	11조 7111억 원
주요 정책 변경 사항		
강화	<보육료 지원>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2009년 도시근로자 130%까지 보육료 30% 지원 ○ 기본보조금 도입 - 2010년까지 만 5세까지 도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 양육수당 도입 - 2012년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80%까지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변경	<보육료 지원방식> ○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	○ 기존보조금과 자등보육료 통합 ○ i-사랑카드 도입
	<국공립시설 확충> ○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 2배로 확충 - 1,352개소('05) → 2,700개소('10)	○ 취약시설에 국공립시설 확충 - 국공립시설 대기자 수 감소: 12만 명 → 16만 명 - 2012년 2,119개소 확충
추가		○ 다문화아동 지원 강화 ○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 ○ 보육비용지원 선정기준 개편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농어촌 담임수당: 2만 1000명('09) → 8만 5000명('12) - 보육교사 대체지원: 450명('09) → 1,500명('12)
지속 유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강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 취약보육 강화: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자료: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기존의 새싹플랜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다문화아동 지원, 안전공제회 설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시설 서비스 계약제, 보육비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개편, 보육시설 지도감독 개선 등 6가지 항목이다. 취약계층으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후관리 제도화를 통해 보육시설을 지원한다. 보육대체교사 및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도모하며,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인건비 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계약제 도입을 검토한다. 보육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및 기준의 합리화 등 보육비용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불법행위 적발이 아닌 소통강화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지도감독의 방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내용으로는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보육프로그램 강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항이다(보건복지부, 2009).

우리나라의 중장기 보육플랜인 새싹플랜(2006~2010)과 아이사랑플랜(2009~2012)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살펴볼 때,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고, 비용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및 시설이용부담을 경감시키고, 평가인증제도의 시행과 설립·운영·관리·감독체계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제1차 중장기보육정책(새싹플랜)의 추진되고 난 이후인 2010년 이후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한 백혜리(2007)의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에서 기본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추가 보육비용 발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부모는 경감된 보육비용을 또 다른 교육요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이러한 수요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시 부모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 수준의 서비스 접근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재정확대의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되어야 할 것임을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 추진계획대로 보육서비스가 표준화되는 2010년 이후에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모색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망하였다. 즉, 표준보육과정의 제공, 누리과정의 확대, 재정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중국에는 어

린이집은 부모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보육서비스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특성화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보육내용을 개발하느냐 하는 점이 관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의 정책추진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달성되고 난 후에는 표준화, 균등화 등의 정책목표보다는 특성화, 교육내용의 개발과 같은 개별적 보육시설의 노력과 경쟁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보고에 의하면 공공 보육서비스(daycare) 지원이 2배 상승 시(GDP의 0.37%에서 0.74%로의 상승) 합계출산율이 0.13 상승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는 서민·중산층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으로써 그간의 보육투자 확대 기조를 강화하여 저출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보건복지부, 2012e). 또한 비용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로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시점이며, 늘어난 보육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정책대상인 영유아 인구 감소 및 어린이집 시설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시설공급 및 보육교사 자질 강화를 통한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

나. 지방정부의 보육 발전 계획 및 정책 평가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면, 그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중장기 보육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에 따른 지자체의 보육계획

은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2007~2011): 새봄플랜’,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2007~2011)’이 있다. 정부차원의 두 번째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에 따른 지방정부의 보육계획은 ‘인천광역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2012~2016)’,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지자체의 보육계획을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제1차 및 제3차),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 제주아이사랑플랜(2011~2012),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2007~2011)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3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

인천광역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봄플랜(2006~2011)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어, 인천시는 2011년에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2012~2016)을 수립한 바 있다(인천광역시, 2011). 이에 앞서 인천시는 보육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이라는 인천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2003년에 수립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첫 번째 중장기계획인 새싹플랜보다 3년 먼저 수립된 것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천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핵심과제 일람표는 다음의 <표 III-1-8>과 같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발표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반영한 지자체의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새봄플랜’으로 명명하고, ‘건강한 아동,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인천시’라는 보육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우수한 양육문화의 조성, 일가정양립 지원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다. 추진 전략으로는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인천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영역별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는 다음 <표 III-1-9>와 같다.

〈표 III-1-8〉 인천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핵심과제 일람표

단위: 백만원

과제명	단위사업명	신규 사업	사업비	비고
			101,141	
어린이집 확충	영아어린이집 확충	□	12,776	13개소
	장애아어린이집 확충	□	2,000	2개소
	민간장애아보육 시설 개보수	●	400	20개소
	직장어린이집 확충	□	250	5개소
	방과후 교실 설치 운영	●	11,370	100개소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포럼	●	10	1식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	24,804	18,250명 ⁵⁾
	저소득아동 민간시설 이용 차액보조	□	2,480	1,200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	2,596	780
	장애아·만5세아 보육료지원	□	24,173	2,985
보육 종사자 자질향상 및 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	●	7,522	3,041
	어린이집 체육대회 지원	□	215	4,383
	보육교직원한마당대회 지원	□	210	4,383
	보육교사 특수보육특성화교육 사업	●	552	1,000
	보육교사 보수교육 내실화 사업	□	502	3,000
보육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장학인증 사업	●	34	2주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3,136	978명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	2,787	40,000
	노후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	432	100개소
전달체계 보강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	4,526	6,469명
	보육정보센터 이전	●	25	1식
	보육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20	1식
	보육인력 POOL 운영	●	321	130명

자료: 인천시(2003).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인천광역시, 2011에서 재인용)

주: 1) □ 계속사업(추가)

2) ● 자체신규사업

전반적으로 보육과 관련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에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에서 두드러진 예산 증가 및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보육기반 확충의 일환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접근성 등에서 보육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보육정보센터 신축 및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사업이 계획만큼 시행되지 않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인천광역시, 2011).

5) 2007년 기준치

〈표 III-1-9〉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영역별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영역별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과제 1. 공보육기반 확충	1-1. 지역별 어린이집 수급조정 체계 구축 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3. 기본보조금 지원
과제 2. 아동별 보육료 지원 확대	2-1. 저소득층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2-2.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2-3. 장애아 보육지원료 확대 2-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2-5. 셋째아 보육료 지원 2-6.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실시
과제 3.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3-1. 영아보육서비스 확충 3-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3-3. 장애아 보육활성화 3-4. 위기가정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과제 4.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4-1. 어린이집 인증참여 지원 4-2.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4-3.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지원 4-4. 소규모어린이집 지원체계 구축
과제 5. 보육행정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5-1. 표준보육행정망지원사업 시행 5-2. 보육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5-3. 인천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기능 활성화
과제 6.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홍보 강화	6-1.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6-2.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보급 6-3. 보육 및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홍보 활성화

자료: 인천시(2006). 인천시 중장기 보육계획(2007-2011)수립 연구 (인천광역시, 2011에서 재인용)

2006년 새봄플랜이 수립된 이후, 국내 보육정책의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어린이집 이용률과 어린이집의 수의 증가,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도입 등 보육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환경을 분석하고 인천 시민의 보육실태와 보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인천시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인천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주요내용은 크게 여섯가지로 첫째, 인천시 인구·사회경제적 보육환경, 둘째, 인천시 보육현황과 보육정책현황, 셋째, 국내외 보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넷째, 인천시 영유아 가구 보육실태 분석, 다섯째, 인천시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교직원현황 분석, 여섯째, 인천시 보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핵심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이다.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정책영역 및 세부추진과제는 <표 III-1-10>과 같다.

<표 III-1-10>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정책영역 및 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영역(목표)	세부추진과제
영역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1-2.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1-3.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 및 '인천형'관리
영역 2.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	2-1. 평가인증 및 재인증을 제고 2-2. 표준보육과정 적용을 위한 지원 2-3. 안심 보육환경 조성 2-4. 어린이집 환경개선
영역 3.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3-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3-2. 대체교사 지원 확대 3-3. 보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3-4. 보육교사 양성 및 교육기관 확충 : (가칭)인천시 시립 보육교육원 건립
영역 4.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및 접근성 확보	4-1.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4-2. 시간제 보육 활성화 모델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 4-3. 소규모 영아보육 모델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
영역 5. 참여하고 소통하는 보육환경 조성	5-1. 보육도시 랜드마크 건립 : (가칭)인천시 영유아플라자 5-2. 보육정보 스마트앱 제작 및 배포 5-3. 부모참여 활성화 5-4. 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영역 6. 보육정책 추진역량 강화	6-1. 보육담당 부서 역량 강화 6-2. 보육정보센터 역량 강화

자료: 인천광역시(2011). 인천광역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2012~2016).

2)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는 중앙정부의 아이사랑플랜(2009~2012)와 동일한 정책방향을 지향하며, 2011년 중앙의 보육사업과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의 비전은 '아이키우기 좋은 경기도'이다. 본 비전은 양질의 보육환경과 아동·부모의 특성에 따른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III-1-11〉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의 정책과제와 세부추진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정책목표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2011	2012	
정책목표 1. 수요자 맞춤보육 강화	1.1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지원 강화	38,249	45,792	
	1.1.1 24시간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예산	27,758	34,589
		사업량	2,100개소	2,400개소
	1.1.2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예산	2,290	2,620
		사업량	100개소	115개소
	1.1.3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0세아 전용 보육시설확대	예산	8,201	8,583
		사업량	1,400명/ 139개소	1,760명/ 143개소
	1.2 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	1,490	1,937	
	1.2.1 재가 아동을 위한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예산	1,490	1,937
		사업량	10개소	13개소
	1.3 취약계층 보육지원 강화	188	204	
1.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예산	188	204	
	사업량	16명	17명	
정책목표 2.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2.1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1,017,350	1,106,750	
	2.1.1 보육료 지원 확대	예산	985,091	1,704,491
		사업량	250,123명	264,392명
	2.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예산	32,259	32,259
사업량		18,028명	18,028명	
정책목표 3. 민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	3.1 보육의 공공성 강화	4,976	1,700	
	3.1.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예산	1,700	1,700
		사업량	485개소	510개소
	3.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예산	3,276	-
		사업량	200개소	-
	3.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18,678	21,258	
	3.2.1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예산	9,495	11,002
		사업량	1,900개소	1,900개소
	3.2.2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교체, 보급 지원	예산	1,197	2,270
		사업량	731개소	2,739개소
	3.2.3 평가인증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	6,201	6,201
사업량		6,177개소	6,177개소	
3.2.4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강화	예산	698	698	
	사업량	15,000명	15,000명	
3.2.5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예산	1,087	1,087	
	사업량	2개소	2개소	
연도별 총 소요예산		1,080,931	1,177,641	

자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 수립(안).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수요자 맞춤형보육 강화,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를 도출하였으며, 6개의 정책과제와 14개의 세부추진사업 및 예산은 <표 III-1-11>와 같다.

3) 제주아이사랑플랜(2011~201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와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2006~2010)(이하 제주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이 새싹플랜에서 아이사랑플랜으로 변화되는 등 보육 관련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주아이사랑플랜(2011~2012)(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를 수립하였다. 향후 제3차 제주 중장기보육발전계획(2013~2017)을 수립할 예정이다.

<표 III-1-12> 제주아이사랑플랜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정책목표 1 보육환경 질적 수준 제고	1.1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	1.1.1 어린이집 급, 간식 환경 개선
	1.2 보육환경 지원 강화	1.2.1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 도입 1.2.2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지원 1.2.3 안전교육 지원 강화 1.2.4 평가인증 지원 강화
정책목표 2 수요자 육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	2.1 부모대상 육아지원 강화	2.1.1 부모를 위한 종합 양육지원 사업 확대 2.1.2 보육정책 홍보 강화
	2.2 지역특성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2.2.1 제주특화 보육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2.3 다자녀 가구의 양육지원 확대	2.3.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정책목표 3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3.1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3.1.1 보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 기능 강화 3.1.2 '보육연구회'를 통한 자율장학 운영
	3.2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3.2.1 최저임금 준수 지도 3.2.2 교사 처우 개선 점진적 확대 3.2.3 어린이집교사의 탄력근무 확대

자료: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사랑플랜 2011~2012: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제주아이사랑플랜의 비전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토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이며, 정책목표는 보육환경의 질적수준 제고,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7개 정책과제,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표 III-1-12 참조).

2011년 기준 제주도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0~14세의 유년인구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0년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어린이집 525개소의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84.9%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다수의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11). 이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동인구 추계 예측을 통해 어린이집의 한시적인 인가제한, 정원제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어린이집 추계 결과 제주시 428개소, 서귀포시 129개소가 추계됨에 따라 향후 정원제한, 인가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제주도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4)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2007~2011)

경기도 안산시의 중장기 보육계획은 중앙정부의 새싹플랜과 경기도의 보육계획을 근간으로하여 안산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인구 및 보육현황, 국내외 보육정책 분석, 안산시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육과정, 재정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육에 대한 시민 욕구·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수급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보육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안산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이에따른 경제 활동 특성과 기혼여성의 취업 형태, 영아보육에 대한 요구,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안산시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안산시의 비전은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로 제시되었고, 안산시의 보육정책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건강한 가족, 함께하는 안산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동과 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 등을 설정하였다. 안산시 분야별 보육정책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및 중장기 보육계획(안) 총괄은 <표 III-1-13>과 같고, 중장기 보육지표의 변화는 <표 III-1-14>과 같다.

〈표 III-1-13〉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안) 총괄

과제	주요 세부과제
보육시설의 질 향상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에 근거한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시설 개선* 시립보육시설 위탁제도 개선 평가인증 참여 지원(사후관리 및 지원 포함)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장애통합시설 확대 양육지원센터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및 복지 개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 지원*
공보육 기반확립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교사 수급 확충 대체교사의 체계적 공급 관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기본보조금 지급 0~4세아 차등보육료 확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반 제공 양육지원센터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체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상담 전문 인력 지정 지원*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 언어, 문화, 자녀양육법 등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	보육행정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와 독립공간 확보

자료: 이미화·권용은·김은설·신나리·유은영·정미영(2007).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2007~2011).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추진과제 중 실제적인 지원은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에 포함되어 추진함.

안산시 중장기 보육발전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서는 보육시설의 질 향상,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체계, 보육서비스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공보육 강화 부분에서는 공보육 기반 확립,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I-1-14〉 안산시 중장기 보육지표의 변화(2007-2011)

주요지표		2007		2011	
보육비용 정부 재정 부담률		35.8%		60.0%	
국공립 보육시설 수		15개소		23개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19,984명		25,903명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98%		100%	
민간보육시설 보육비용/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80% 수준		100% 수준	
평가인증 대상 시설		29개소		전면실시 (매년 약 200개소)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유아	48.0%	39.9%	50.9%	51.2%
	영아	30.3%		52.2%	

자료: 안산시 중기보육수요(2012년 기준), 이미화 외(2007),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에서 재인용

2. 외국의 보육현황 및 정책방향

외국의 보육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보육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 부모의 보육비용, 서비스 유형, 질적 수준, 인력, 지원 및 행정체계의 여섯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스웨덴은 출산이나 보육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부모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주요 목적이 있다(신윤정, 2012). 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보육정책의 유형을 다르게 구분하고 동일한 유형에서도 국가 별로 차이가 있으나, 스웨덴의 보육정책 유형은 공공서비스제공 접근방식으로 분류되거나, 임의적 가족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Optional familialism; Lokteff & Piercy; 2012). 프랑스는 보육에 대하여 보편성과 공보육체제를 지향하며, 2010년 기준으로 유럽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Eurostat, 2011). 프랑스의 보육정책 유형은 책임공유 접근방식으로 분류되거나, 임의적 가족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미국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반 위에서 제한적 수준의 공보육 지원을 하며 시장화된 보육서비스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보육정책 유형은 자유방임적 접근방식으로 분류되거나, 암묵적 가족주의(Implicit familialism; Lokteff & Piercy; 2012)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보육정책 평가에 통용되고 있는 정책지표를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이 중장기 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가. 스웨덴

1) 사회적 특성

스웨덴의 인구학적 경향을 인구와 출산율로 살펴보면 <표 III-2-1>과 같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2009년 기준으로 유럽 27개국의 평균출산율인 1.60보다 높으며, 이민자의 유입을 고려하면 2050년에 약 8%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Eurostat, 2011).

<표 III-2-1> 스웨덴의 총인구 및 출산율 추계

단위: 천명

인구학적 경향	년도			
	2000년	2009년	2030년 예상	2050년 예상
인구추계 (1월 기준)	8,861	9,341	10,270	10,672
출산율(%), 여성 대비 아동)	1.54	1.94	1.85	1.85

자료: Eurostat(2011)을 발췌·정리함.

스웨덴의 남녀취업률 및 가족여건은 <표 III-2-2>와 같다. 스웨덴은 2009년 자료 기준으로 유럽 27개국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나, 최근에는 여성들의 파트타임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20세에서 64세의 여성 취업률은 75.7%, 20세에서 64세의 남성취업률은 80.9%이다.

<표 III-2-2> 남녀취업률 및 가족여건

단위: %, 천명, 시간

특성	2000년		2009년	
	남	여	남	여
20-64세 취업률(%)	78.2	74.4	80.9	75.7
파트타임 취업	8.2	32.3	14.2	41.2
주중 평균근무시간	39.1	33.9	37.4	32.2
0~2세 아동의 보육제공률(%)			49.0	
3세~의부교육연령 아동의 보육제공률(%)			95.0	

자료: Eurostat(2011)을 발췌·정리함.

2) 부모의 보육비용

스웨덴에서는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보다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가족지원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담당한다. 출산 후 1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13개월은 봉급의 80%, 14개월에서 16개월은 하루 180크로네를 지급받는다(신윤정, 2012).

만 1세부터 탁아소에 보낼 수 있으며, 봉급의 3% 또는 최대 1,260크로네 중 적은 액수를 비용으로 지불하나 부모의 수입이 월 4,000크로네 이하일 경우 비용을 면제받는다(신윤정, 2012) 만 4세부터는 피르스콜라(Förskola)에서 오전 3시간의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스웨덴에 거주하며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1인당 1,050크로네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여 자녀 수가 4명인 경우 5,814크로네를 지급받을 수 있다(신윤정, 2012). 이혼 또는 별거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부양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매달 1,273크로네를 지급받을 수 있다(신윤정, 2012).

3) 서비스 유형

스웨덴의 보육의 유형은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로 운영되는 피르스콜라 프리스쿨(Förskola preschool), 시간제로 운영되는 개방형 피르스콜라(Oppen förskola), 공립 또는 사립 가정보육시설(Familjedaghem),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센터(Fritidshem)로 분류할 수 있다(권정윤·한유미, 2005). 피르스콜라는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개방형 피르스콜라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나 가정보육사들이 이용하며, 가정보육시설은 소집단아동이나 유아학교가 멀리 떨어져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가활동센터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문무경 편역, 2006).

다양한 보육서비스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아동에게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주며, 장애아동의 부모는 장애정도에 따라 간호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이민자 자녀를 위한 시설에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무료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문무경 편역, 2006).

다음 <표 III-2-3>은 연도별, 연령별, 기관별 아동의 수를 나타낸다.

〈표 III-2-3〉 연도별·연령별·기관별 아동의 수

단위: 명

기관에 따른 연령구분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피르스콜라					
0세	10	11	6	7	15
1세	44,538	49,326	50,270	52,068	53,171
2세	85,618	88,217	93,470	95,138	97,436
3세	88,373	92,057	94,065	99,063	101,846
4세	89,518	93,954	97,045	98,886	103,451
5세	86,436	91,441	95,820	98,916	100,243
가정보육시설(2006~2008) 및 교육적 보육(2009~2010)					
0세	2	--	2	--	3
1세	3,622	3,590	3,047	2,793	2,610
2세	6,728	5,869	5,469	4,848	4,488
3세	6,584	5,932	5,098	4,774	4,391
4세	5,970	5,469	4,844	4,175	4,031
5세	4,955	4,728	4,302	3,800	3,298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을 축소·편집함.

4) 질적 수준

2003년부터 국립학교진흥원은 영유아 기관평가, 보육서비스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법은 보육시설의 운영과 규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나, 지자체가 보육에 대한 실제적 업무를 결정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과 학급 크기에 대한 국가적 지침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피르스콜라의 최대학급정원은 17명이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5.4이며, 여가활동센터는 최대정원이 30명이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8.4이다(문무경 편역, 2006).

5) 인력

스웨덴에서 보육인력은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모, 레크리에이션 교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아교사는 대학을 졸업한 후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병설 유아교실을 담당하며, 보조교사는 고교에서 아동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전공하거나 1년 과정의 보조교사과정을 이수한다(권정윤·한유미, 2005). 가정보육모는 일정기간의 훈련을 받은 후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며, 레크리에이션 교

시는 대학졸업 후 학령기 아동을 주로 담당하나 취학전 보육시설에서 유아교사와 일하기도 한다(권정윤·한유미, 2005).

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의 법정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연수수준이나 연수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문무경 편역, 2006). 스웨덴 교사교육은 이론과 실체를 통합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6) 지원 및 행정체계

스웨덴에서는 국가가 기본적 보육정책을 수립하지만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회와 정부는 교육과정, 공교육체계를 위한 적 목표 및 안내지침을 담당하며, 정부와 교육 및 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교육체계의 목적 및 구조를 설정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자신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직하고 배정하는데 책임을 담당한다(OECD, 2010).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지방정부와 학교들이 질과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289개의 지지체는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관여하거나, 국립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원장에 대한 임명과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 및 교육에 관여하거나, 재정지원 및 보육료를 결정하거나,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권정윤·한유미, 2005).

나. 프랑스

1) 사회적 특성

프랑스 총인구 추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교적 안정된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출산율은 2000년의 1.89에서 2009년 2.00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9년의 유럽 27개국의 평균 출산율인 1.60보다 높다 (Eurostat, 2011). 인구학적 경향을 인구와 출산율로 살펴보면 <표 III-2-4>과 같다.

<표 III-2-4> 프랑스의 총인구 및 출산율 추계

단위: 천명

인구학적 경향	년도			
	2000년	2009년	2030년 예상	2050년 예상
인구추계 (1월 기준)	60,538	64,714	67,982	71,044
출산율(% , 여성 대비 아동)	1.89	2.00	1.96	1.94

자료: Eurostat (2011)을 발췌·정리함.

프랑스 여성의 취업기회는 EU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편인데, 프랑스의 남녀취업률 및 가족여건은 <표 III-2-5>과 같다. 2009년 기준으로 20세에서 64세의 여성 취업률은 65%, 20세에서 64세의 남성취업률은 74.2%이며, 최소한 1명의 자녀를 둔 25세에서 54세 여성의 취업률은 74.6%, 동일한 조건의 남성의 취업률은 91.2%이다(Eurostat, 2011).

〈표 III-2-5〉 남녀취업을 및 가족여건

단위: %, 천명, 시간

특성	2000년		2009년	
	남	여	남	여
20-64세 취업률(%)	75.2	60.0	74.2	65.0
파트타임 취업	5.3	30.8	6.0	29.8
주중 평균근무시간	40.1	33.9	39.5	33.0
0~2세 아동의 보육제공률(%)			41.0	
3세~의부교육연령 아동의 보육제공률(%)			95.0	

자료: Eurostat (2011)을 발췌·정리함.

2) 부모의 보육비용

2010년 발간된 OECD자료에 기초하면, 프랑스가 보육교육 서비스에 사용하는 공적비용은 GDP대비 1%이다(Fagnani, 2012). 아동 1명 당 사용하는 공적보육지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2858달러이며, 취학전 교육 아동 1명 당 공적비용을 달러로 환산하면 4679달러이다(Fagnani, 2012). 취학전 교육의 재정은 GDP의 0.7%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교육재정의 11.7%이며, 교육대상자의 17.3%에 해당하며, 보육서비스 및 방과 후 서비스를 포함하면 이들 부분의 전체 재정은 최소한 GDP의 1%이다(OECD, 2006). 2004년 이전에는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게만 양육혜택이 있었으나 2004년에 “일하거나 일하지 않는 선택의 자유를 위한 부칙”에서 모성 또는 부성휴가 후 6개월까지 양육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일 경우는 3년까지 연장되었다(Fagnani, 2012). 2006년 OECD자료에 의하면, 3~6세아는 무상으로 부모부담이 없으나, 0세에서 3세아의 경우 부모는 27%를 부담한다.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보육유형에 따라 시설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육(Accueil familial)로 구분된다. 시설보육으로 집단보육시설(Creches collectives), 유치원(Jardins d'enfants), 시간제 보육

(Haltes-garderies)이 있으며, 가정보육기관으로는 가정보육(Creches familiales)이 있다. 기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겸하거나 정규보육과 시간제 보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보육시설(Etablissements multi-accueil)도 있고, 개인보육유형으로 인 증된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eee), 가정모(Nounou a domicile) 등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정미라 외, 2009). 2012년 발간된 3세미만 유아의 보육규모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표 III-2-6>는 연도별 집단보육기관 및 가정보육 서비스 수를 제시하며, <표 III-2-7>은 연도별 집단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서비스 이용 유아수를 제시한다.

<표 III-2-6> 연도별 집단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서비스 수

단위: 개

기관형태	기관 수					비율 2010	대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09/ 2010	'06/ 2010
<단순형보육시설>	4,595	4,334	4,160	4,107	4,183	37.5	1.9	-2.3
<u>민간보육시설</u>	2,105	2,072	1,960	1,947	2,134	19.1	9.6	0.3
지역전통	1,719	1,724	1,650	1,639	1,610	14.4	-1.8	-1.6
직원	204	165	150	151	152	1.4	0.7	-7.1
부모협동	182	183	160	157	145	1.3	-7.6	-5.5
마이크로(micro)	--	--	--	--	227	2.0	--	--
<u>시간제보육</u>	2,303	2,072	2,006	1,933	1,816	16.3	-6.1	-5.8
전통	2,190	1,973	1,921	1,854	1,752	15.7	-5.5	-5.4
부모협동	113	99	85	79	64	0.6	-19.0	-13.2
유치원	187	190	194	227	233	2.1	2.6	5.7
<혼합형보육시설>	4,360	4,799	5,284	5,702	6,223	55.8	9.1	9.3
전통	3,811	4,158	4,513	4,856	5,180	46.4	6.7	8.0
직원	--	60	115	149	179	1.6	20.1	--
부모운영	311	302	314	296	268	2.4	-9.5	-3.7
마이크로	--	--	--	--	215	1.9	--	--
시설/가족	238	279	342	401	381	3.4	-5.0	12.5
집단보육 합계	8,955	9,133	9,444	9,809	10,406	93.3	6.1	3.8
가정보육서비스	842	800	772	756	750	6.7	-0.8	-2.9
합계	9,797	9,933	10,216	10,565	11,156	100	5.6	3.3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ES) (2012). Etudes et resultats.을 번역·정리함.

〈표 III-2-7〉 연도별 집단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서비스 이용 유아수

단위: 명

기관형태	기관 수					비율 2010	대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09/ 2010	'06/ 2010
<단순형보육시설>	139,345	133,381	128,205	125,997	125,281	34.6	-0.6	-2.6
민간보육시설	92,950	90,782	87,143	85,871	86,767	23.9	1.0	-1.7
지역전통	79,041	79,018	76,375	75,178	74,083	20.4	-1.5	-1.6
직원	11,189	8,997	8,249	8,282	8,315	2.3	0.4	-7.2
부모협동	2,720	2,767	2,519	2,411	2,238	0.6	-7.2	-4.8
마이크로(micro)	--	--	--	--	2,131	0.6	--	--
시간제보육	38,794	35,176	33,323	32,062	30,484	8.4	-4.9	-5.8
전통	37,104	33,665	31,991	30,853	29,493	8.1	-4.4	-5.5
부모협동	1,690	1,511	1,332	1,209	991	0.3	-18.0	-12.5
유치원	7,601	7,423	7,739	8,064	8,030	2.2	-0.4	1.4
<혼합형보육시설>	121,776	136,643	153,603	166,364	177,984	49.1	7.0	10.0
전통	108,452	120,257	132,335	142,301	151,780	41.9	6.7	8.8
직원	--	2,310	4,499	5,941	6,907	1.9	16.3	--
부모운영	5,503	5,440	5,916	5,432	4,612	1.3	-15.1	-4.3
마이크로	--	--	--	--	2,015	0.6	--	--
시설/가족	7,821	8,636	10,853	12,690	12,670	3.5	-0.2	12.8
집단보육합계	261,121	270,024	281,808	292,361	303,265	83.7	3.7	3.8
가정보육서비스	61,346	60,509	60,895	60,377	59,060	16.3	-2.2	-0.9
합계 유아수	322,467	330,533	342,703	352,738	362,325	100	2.7	3.0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ES) (2012). Etudes et resultats을 번역·정리함.

2006년 OECD자료를 기준으로,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64%가 부모에 의해 양육된다. 3세 미만 아동의 다른 보육실태로 인증된 보육모가 18%, 유아원이 8%, 조부모가 4%, 기타가 6% 포함되는데, 인증된 보육모의 경우 최소한 월 222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가족수당제도를 살펴보면, 가족수당지급처(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CAF)는 1946년에 시작되었으며 사회보장 행정기관에 소속된다. 가족수당지급처와 국립가족수당기금 관리처(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는 국가기관이 감독하고 고용주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정미라 외, 2009). 수당은 크게 가족수당, 주거비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최저임금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비는 25%의 세금감면을 받는다.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s)은 보편적인 수당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가족 보조금(Complement familial)은 막내연령이 3세 이상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신윤정, 2012).

3) 서비스 유형

프랑스의 유아학교(Ecole maternelles)와 학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운영된다(OECD, 2006). 비영리 연합회나 공동체가 운영하는 여가센터(Centres de loisirs)는 수요일, 방과 후, 단기방학동안 운영되며, 방과 후 보육은 가정보육모의 집에서도 행해진다(OECD, 2006).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으로, 프랑스는 유아학교 3년과 초등학교 5년 과정을 통합하여 초보학습 주기, 기초학습주기, 심화학습 주기로 구분되는 3개의 주기별 편성체제를 갖추었다. 한 주기는 보통 3년 단위로 구성되며, 가장 초보단계인 유아학교의 3~4세 과정은 초보학습주기로 명명하고, 유아학교의 5세과정과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은 기초학습주기로 명명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과정은 심화학습주기로 설정하였다(정미라 외, 2009).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장애아동, 저소득층 아동, 소수민족과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합은 교육목표로 명시되었으나 실제로 장애아의 통합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약 7,000명의 학교보조원들이 11,000명의 특수교육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OECD, 2006). 2006년 OECD보고서 기준으로 프랑스의 아동 빈곤율은 8%이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육시설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편,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아원과 초등학생의 약 6%는 프랑스 국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며, 열악한 구역은 우선순위를 두는 교육지역으로 설정되어, 이곳의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추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4) 질적 수준

프랑스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자보건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은 1945년에 산모와 영아사망율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모자보건국의 주요 업무로는 미래의 부모를 위한 예방조치와 0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예방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정미라 외, 2009). 모자보건국은 보육시설의 의료지

원, 기술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보육모의 자격인증 업무나 가정보육모의 관리감독이나 보수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정미라 외, 2009).

프랑스에서는 지역센터나 전문기관에서 가정보육모들의 집단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원을 하여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서비스의 연계는 직업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대체인력의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OECD, 2006). 한편, 직원과 학생의 비율은 0세에서 2세의 경우 1:5이며, 2세에서 3세의 경우 1:8이며, 3세에서 6세의 경우 25.5:1이다(OECD, 2006).

5) 인력

프랑스의 대규모 영아보육시설에서는 대학졸업 후 27개월 이상의 훈련을 받은 영유아 교육자(Educateurs de jeunes enfants)만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며, 근래에는 자격증이나 3년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OECD, 2006). 프랑스에서 2.5세에서 6세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모두 고등교육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OECD, 2006). 프랑스의 보육교사는 여러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성학교 교사는 3년 대학학위를 가진 지원자가 18개월 훈련을 받아야 한다(OECD, 2006). 보육전문가(Puericultrices)는 간호사나 조산원이 1년 6개월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아교사(Educateurs de jeunes enfants)는 자격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을 27개월 동안 받아야 된다(OECD, 2006).

6) 지원 및 행정체계

프랑스에서는 6세 이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연령별로 이원화되어있다. 3세 미만의 경우, 사회문제, 노동연대부(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e)와 건강, 가족, 장애인부(Ministere de la Sante,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ees)가 여러 형태의 보육규정을 개발하고 지역 가족수당의 자원과 목표를 설정한다. 시설의 설립 및 운영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반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지역의 사회보건국에서 관장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나 운영전반 사안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서문희, 2012; OECD, 2006). 보육정책은 매우 중앙체계적이며, 보육시설, 공적자금 수준, 소득에 따른 부모부담 등은 정부와 국립가족수당기금 관리처가 4년마다 서명한 안내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지방

담당제도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Fagnani, 2012).

3세에서 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는 교육부(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에서 재정지원과 관리를 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를 100% 지원하며, 교육부 내의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과 교원관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한다. 1982년 지방분권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던 보육 및 교육행정체제는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정미라 외, 2009).

다. 미국

1) 사회적 특성

미국 총인구 추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안정된 출산율과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이민자의 높은 유입률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인구학적 경향을 인구나 출산율로 살펴보면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미국의 총인구 및 출산율 추계

단위: 천명

인구학적 경향	년도			
	2001년	2010년	2025년 예상	2050년 예상
인구추계 (각년 7월 기준)	284, 796	309,330	349,439	363,584
출산율(%)	2.02	2.06	2.06	2.03

자료: U.S. Census Bureau: Resident population estimates of the United States by age and sex(2001& 2011), U.S. Census Bureau: Interim projections of the total popul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States(2004), U.S. Census Bureau: U.S. population projections (2008)을 발췌·정리함.

<표 III-2-9> 남녀취업률

단위: 천명

특성	2010년		2011년	
	남	여	남	여
6세 미만의 자녀들의 취업부모전체	11,171	9,271	11,197	9,203
전업취업부모	10,451	6,592	10,510	6,579
파트타임 취업부모	720	2,679	687	2,624
인구대비 취업률(%)	87.1	57.0	88.1	57.0
6세-17세 자녀들의 취업부모전체	13,482	13,939	13,422	13,756
전업취업	12,725	10,514	12,735	10,450
파트타임	757	3,425	686	3,306
인구대비 취업률(%)	86.2	70.5	87.0	70.2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Economic news release Table 5(2012)을 축소·정리함.

2) 부모의 보육비용

먼저 3세에서 5세아의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 현황을 공사립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2-10>과 같다.

<표 III-2-10> 3~5세아의 프로그램 유형별 등록인원

단위: 천명

연령 연도	총아동	공사립 기관유형			
		유아원		유치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3세아					
2005	4,151	777	869	54	151
2010	4,492	824	818	54	22
4세아					
2005	4,028	1,295	1,083	215	75
2010	4,358	1,587	1,016	331	55
5세아					
2005	3,955	337	168	2,535	378
2010	4,099	338	214	2,695	292
전체					
2005	12,134	2,409	2,120	2,804	468
2010	12,949	2,749	2,048	3,080	369

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1).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에서 Table A-2-1을 축소·정리함.

미국의 공보육 및 교육은 보상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아동 위주의 서비스 성격을 지닌다. 보상프로그램의 예로서 헤드스타트와 영아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program), 주에서 실시하는 예비유치원 또는 공립유아학교(Prekindergarten: pre-K)가 포함되며, 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예로서 아동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s: CCDBG), 아동보육발달기금(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 세금 및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가) 보상프로그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또는 주차원에서 제공되는 보상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학교에서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조기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총 904,153명 중에서, 3세아와 4세아의 비율은 약 87%를 차지한다(ECLKC, 2010). 2011년 보

고서 기준으로 특수교육아들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세아와 4세아는 755,465명이었으며, 주정부에서 지원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세아와 4세아는 16,182명이었다(NIEER, 2011).

영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9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는데, 영아와 3세 미만의 유아를 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는 2011년 보고서 기준으로 953,31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NIEER, 2011).

주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립유아학교(pre-K) 프로그램은 빈민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형식적 교육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90년대 초기에 시작되어 2011년 보고서 기준으로 현재 39개주에서 51개 프로그램과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NIEER, 2011). 대부분의 주에서는 낮은 학업성취의 위험군 아동으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일부 주에서는 모든 4세아를 포함하는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0-2011년 회계년도에 39개주에서 3세아와 4세아 1,314,598명이 공립유아학교에 다녔는데 4세아가 주축을 이루어, 미 전국의 4세아 중 특수교육아를 제외하고 28%가 공립유아학교에 다닌 반면, 3세의 경우 특수교육아를 제외하고 약 4%에 해당하는 아동이 공립유아학교에 다녔다(NIEER, 2011). 프로그램의 확산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2011년 보고서에 기준하면, 2010-2011년 회계년도에 특수교육기금을 제외하고 39개주에서 약 55억 달러가 공립유아학교에 지원되었다. 공립유아학교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시간제 또는 반일제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취업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립유아학교와 보육보조 프로그램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OECD, 2006).

나) 공적 지원

미국에서 대부분의 연방보육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보육 및 발달일괄보조금은 저소득층 부모에게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태로 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정은 아동보육 및 발달일괄보조금을 받는 가족소득이 주 중간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들은 보육제 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자격요건, 자격기간, 부모부담금(co-pays), 보육제공자에게 주는 상환금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에 재량권이 있다(Rhodes & Huston, 2012).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보장제도 개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 PRWORA)은 3개의 연방보육기금을 통합하여

아동보육발달기금(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을 조성하였다. 이 규정으로 각 주는 사회보장제도개정법 기금의 30%까지 아동보육발달기금으로 배정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주마다 아동보육발달기금을 분배하는 방법은 다르나, 대부분의 자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수혜자나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이 취업 또는 구직 기간에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Lokteff & Piercy, 2012). 2008년에 21억 달러가 아동보육 및 발달일괄보조금에 배정되었으며, 12억 달러는 아동보육발달기금에, 16억 8천만 달러는 주에 매칭펀드로 배정되었다(Palley, 2010).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동보육발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1/3미만이 실제로 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Palley & Shdaimah, 2011).

세금공제(Tax deduction)를 살펴보면, 과세발생지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아동 가정은 아동 1명 당 3,000달러, 아동 2명당 6,000달러 또는 지불한 교육비나 보육비의 35%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Palley & Shdaimah, 2011). 소득세액공제(Tax credit)를 통하여, 정부는 납세자에게 18세 미만의 1자녀에 1,050달러, 2자녀 이상일 때 2,1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Rhodes & Huston, 2012). 주 수준에서의 지원을 살펴보면,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24개 주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해주며, 이 중 13개 주에서는 소득세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Palley & Shdaimah, 2011).

다) 부모부담

학교서비스 및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외에 보육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육비용부담율은 연방정부 25%, 주정부 및 지방정부 15%, 부모 60%이다(OECD, 2006). 2011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 연간 보육비는 보육센터를 전일제로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 미시시피주의 4,650달러에서 켈럼비아 자치구의 18,200달러까지 각 주별로 차이를 보이며,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4세아의 경우 주에 따라 평균 3,900달러에서 12,050달러의 범위를 갖는다. 가정보육을 전일제로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 주에 따라 3,850달러에서 12,100달러의 범위를 보이며, 4세아의 경우 3,600달러에서 11,300달러의 범위로 나타난다(NACCRRA, 2011b). 36개 주의 경우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영아의 평균 보육비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중위소득의 10%를 초과하며, 미국 전역에 걸쳐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영아의 평균 보육비는 가정이 식품에 소비하는 연간

평균 식품비보다 많다(NACCRRRA, 2011a).

3) 서비스 유형

특수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뚜렷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 생물학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 환경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조은경·김은영, 2008). 그 예로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소수 민족 및 이중언어 배경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의 2011년 보고서 기준으로 특수교육에 등록된 3세아와 4세아는 총 432,930명에 이른다(NIEER, 2011).

아동이 보육 및 교육을 이용하는 시간은 다양해서, <표 III-2-11>에 제시된 바 같이, 2010년 기준으로 전일제 프로그램에 다니는 3, 4, 5세아의 비율은 각각 50.1%, 47%, 72%이다.

<표 III-2-11> 3~5세아의 시간유형별 등록

단위: 천명

연령 연도	총아동	등록률		시간유형		
		총 등록	등록률	전일	시간	전일제율
3세아						
2005	4,151	1,715	41.3	901	814	52.5
2010	4,492	1,718	38.2	861	857	50.1
4세아						
2005	4,028	2,668	66.2	1,332	1,336	49.9
2010	4,358	2,989	68.6	1,405	1,584	47.0
5세아						
2005	3,955	3,418	86.4	2,316	1,102	67.7
2010	4,099	3,540	86.3	2,548	992	72.0
전체						
2005	12,134	7,801	64.3	4,548	3,253	58.3
2010	12,949	8,246	63.7	4,813	3,432	58.4

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1).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에서 Table A-2-1을 축소·정리함.

4) 질적 수준

미국 내 보육직 종사자들의 단체(Center for the Child Care Workforce: CCCW)는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으로 자격있는 관련인력, 낮은 이직률, 낮은 교사-아동 비율과 작은 학급크기, 인지, 사회정서, 신체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언어, 초기 문해력 및 수리력을 강조하는 기준과 과정,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및 양육

적 환경, 센터에 대한 주기적 허가 및/또는 인증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내 보육센터의 수는 119,550개로, 이 중 인증받은 보육센터의 비율은 10.4%로 추정되며, 가정보육을 하는 집의 수는 231,705개로, 이 중 인증받은 집은 0.88%로 추정된다(NACCRRA, 2011b). 현재 관련법은 아동보육 및 발달일괄보조금의 최소한 4%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27개 주에서는 자격증 없이도 4명 이상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으며, 아동보육 및 발달일괄보조금을 받는 160만 아동의 5분의 1이상은 인가받지 않는 보육을 받고 있다(NACCRRA, 2011a). 구체적으로, 아동보육 및 발달일괄보조금을 받는 322,000명의 아동들은 인가가 안 된 보육을 받고 있다(NACCRRA, 2012b).

공립유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유아교육연구소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주 별로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항목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의 운영여부, 학사학위를 가진 교사자격 여부, 교사훈련 혹은 교육실습 실시여부, 보조교사의 Child Development Associate(CDA) 여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1년에 최소 15시간 정도의 현직교육 여부, 최대 교실크기의 20명 정원 초과 여부, 성인과 유아 비율의 1:10 유지 여부, 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력, 청력, 치아검진 등의 실시여부, 가족지원 서비스의 실시여부, 최소한 1일 1회 급식지원 여부 등의 10개 항목을 포함하여 각 주 별로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있다(신은수·유영의, 2006).

미국에서는 약 6개의 주에서만 영유아 보육을 위한 질적 기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외부평가자가 질을 측정하여 1에서 5까지의 별표를 주는 별등급제가 있는데, 현재 18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8개 주 이상에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평가준거로는 가족참여, 직원훈련 및 적격성, 학습환경, 보육제공자나 기관의 리더십이나 관리기술 등이 포함된다(Palley, 2010).

학급정원은 전국적으로 다양한데, 시설보육환경에서 0세에서 3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8명에서 24명, 3세에서 5세의 경우는 14명에서 40명이다(OECD, 2006). 공립유아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규정은 만 3, 4세의 경우 학급 내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NIEER, 2011).

5) 인력

2009년 실시한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결과에 근거한 미국 회계 감사원 보고서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종사자는 총 1백 80만명으로 이 중 시설보육종사자는 32%, 시설보육서비스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거나 시설장은 5%, 보조교사는 6%, 사립 가정보육종사자는 11%, 자영업으로 가족중심보육종사자는 23%, 특수교육교사를 포함한 프리스쿨 교사는 24%이라고 밝혔다(GAO, 2012). 한편, 종사자의 분포와 보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2005년 국립가구교육조사(National Households Education Survey: NHES)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교육 종사자는 2백 2십만으로 모든 교육환경에서 종사하는 직업종사자의 31%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 51%는 보육센터, 27%는 친척이 유료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12%는 친척이 아닌 사람이 가정보육자, 11%는 가정 내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연봉은 유아원 및 유치원 교사는 31,000달러, 보조교사는 21,000달러, 기타 보육종사자는 18,000달러, 가정보육제공자는 14,000달러로 제시되고 있다(Rhodes & Huston, 2012). <표 III-2-12>는 직업에 따른 시급과 이직률을 제시하고 있다(Rhodes & Huston, 2012).

<표 III-2-12> 직업 별 시급과 이직률

직업	시급 평균	이직률
공인간호사	\$ 31.99	5%
유치원 - 중학교 교사	\$ 30.60	10%
사회사업사	\$ 24.26	10%
프리스쿨 교사	\$ 13.20	15%
가정건강보조원, 간호보조사	\$ 10.39	18%
보육종사자	\$ 10.07	29%
식품계산대 직원	\$ 9.13	42%

자료: Rhodes & Huston(2012)의 Table 1을 번역함.

공립의 경우, 헤드스타트 법에 의하면 2013년까지 헤드스타트 주교사의 절반은 학사학위를 갖도록 요구하고, 2011년에 오바마 정부는 헤드스타트의 새로운 계약은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관찰하는 것에 일부 근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립유아학교의 경우, 주교사가 학사학위를 소지하도록 하는 경우는 지난 10년간 48%에서 57%로 증가하였다(NIEER, 2011). <표 III-2-13>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헤드스타트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요건이다(GAO, 2012).

〈표 III-2-13〉 헤드스타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요건

지위	자격 기술	지속훈련에 대한 요건
헤드스타트 교사	50%는 유아교육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관련된 분야의 전공에 준하는 수업을 듣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고 프리스쿨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함	매년 15시간
영아 헤드스타트	CDA자격이 있고 유아발달에 대하여 훈련받아야 함(또는 이에 준하는 수업을 수료함)	해당내용 없음
헤드스타트 보조교사	CDA자격이 있거나, 학사학위나 준회원과정에 등록하거나, 2년 이내에 완료될 CDA 프로그램에 등록함	해당내용 없음

자료: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HHS and education are taking steps to improve workforce data and enhance worker quality of Table 2를 축소·정리함.

일반적으로 사립 보육종사자들에게 전국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각 주는 교사와 보육제공자의 자격, 훈련, 집단크기, 아동과 성인의 비율에 다양한 기준과 수준이 있으며, 어느 주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정규대학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성인 한 명당 요구되는 유아의 수는 3명에서 12명으로 주마다 다르며, 모든 주는 일련의 학습기준이 있으나, 절반 정도의 주에서만 보육환경에서 실행되었는지 감독을 하고 있다(Rhodes & Huston, 2012). 대부분의 주에서 보육종사자들이 매년 받는 훈련시간은 매우 적은 편으로 23개 주에서는 15시간 미만의 훈련시간을 요구하고 있다(NACCRRA, 2011a). 가정보육의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정보육 종사자의 비율은 44%로 보고되며, 14개 주의 경우 소규모 가정보육제공자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별다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NACCRRA, 2011b). 주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에 대해 지문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2012년 보육책무성 및 의무에 관한 법률 (The Child Car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Act of 2012: Care for Kids Act)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인적사항의 조회를 의무화하려는 추세를 보인다.

6) 지원 및 행정체계

보육관련 정책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나

연방정부는 1994년 아동 및 가족정책에 관련된 통계자료수집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6개의 연방기관으로 시작된 아동가족통계에 관한 연방정부기관 연합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을 설립하여 관계 부처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아동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 and Families: ACF)에서 관리하는데, 2009년 기준으로 7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었고, 2009년 기준으로 650개 이상의 영아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는 7억 9백만 달러가 사용되었다(ECLKC, 2010). 아동 1명당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평균 7,600달러이며(ECLKC, 2010), 아동 1명당 주정부 평균 지원액은 4,151달러인데,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오리건주에서는 아동 1명당 8,000달러를 초과하는 반면, 메인주, 네브라스카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아동 1명당 2,000달러 미만이 다(NIEER, 2011).

인가규정이 없는 아이다호를 주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각기 보육시설 인가규정을 설정하고 감독하고 있다, 미국 각 주에 적용되는 보육프로그램 인허가 규정은 각각 다르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육센터, 가정보육, 소규모 가정보호시설 등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라. 정책적 시사점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출비용이 크며 높은 여성취업률을 나타내는 스웨덴, 저출산에 대한 방안으로 육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왔던 프랑스, 높은 여성 취업률을 나타내나 포괄적 보육정책이 결여되어있는 다민족사회인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균형적 분배, 복지를 동시에 구현해 왔는데, 보육서비스의 공적지출비용이 크며 보편적인 보육을 발달시켜왔다. 공보육 이념에 기초하여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기초한다. 스웨덴은 부모 모두를 위한 양육지원을 포함하는 보육정책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육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부모가 분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보육업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점차 감소하여 교육과정, 공교육체계를 위한 국가적 목표 및 안내지침을 담당하는 한편, 지자체가 실무를 추진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 자율권의 강화와 함께,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2009년 7월부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모의 선택권이 강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공교육체계가 발달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유럽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프랑스 보육정책의 이념의 기초는 19세기 말 제 3공화국의 인구학적 원칙, 동등한 기회의 원칙, 건강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간주된다(신윤정, 2012). 근래에는 중앙체제적인 공교육 체계가 지방분권적 형태를 나타내는 추세를 나타내며, 양질의 보편적 보육체계를 제공하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가구특성에 따른 개별화 방향을 추구하며, 보육의 비용분담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경향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며, 보육서비스의 지원방향이 계층, 소득, 자녀수와 연령, 취업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프랑스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한다는 정책적 합의 하에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면서도 가정내 양육을 약화시키지 않은 반면, 미국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견해에서 보육을 지지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참여를 지원하였다.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로 구성된 미국은 지방분권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육관련 정책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보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한된 형태의 공교육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보육정책은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다른 경제대국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이다(Palley & Shdaimah, 2011). 미국은 스웨덴이나 프랑스만큼 보육을 시민의 권리라고 보지 않으며, 2007년 기준으로 <표 III-2-1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지원도 낮다.

<표 III-2-14>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공적지출

국가	보육 및 취학전 교육에 소요되는 공적비용의 GDP대비 비율	취학전교육에 소요되는 아동당 비용 (달러환산)	보육지원에 소요되는 아동당 비용 (달러환산)
미국	0.4%	4,660	794
프랑스	1.0%	4,679	2,858
스웨덴	1.1%	3,627	5,928
OECD평균	0.6%(33개국 평균)	3,591(24개국 평균)	2,549(24개국 평균)

자료: OECD (2010).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에서 Data for chart PF3.1.A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 2007 & PF3.1.B. Public expenditure on pre-school per child, 2007을 발췌·정리함.

미국에서 보육비는 주별로 다르며, 근래에는 중산층 가정에도 타격이 되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비싼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민영화, 시장화 되어 있고, 보육의 질 또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에 연방정부가 헤드스타트 종사자들에게 2013년 9월 30일까지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요건을 제시하였듯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계획들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부처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서비스에서 공립유아학교와 같이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주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 보육정책 평가에 통용되는 국제적 지표

OECD를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이 보육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보육의 정책적 기대효과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생 초기 양질의 보편적 발달경험을 통한 미래인적 자산의 양성,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권리와 일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여 출산율이 제고되는 정책효과 때문에 보육은 선진국들의 중요 정책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OECD, 2006).

보육정책의 궁극적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는 출산율 제고와 미래 인력 양성, 자녀양육시기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나타내는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긴 하나, 분명히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보육정책의 방향과 사업들을 제시하는 국외 연구들(Cancian, Kurz, London, Reviere, & Tuominen, 2002; Esping-Andersen, et al., 2002; OECD, 2006, 이옥, 2010 재인용)이 최근 들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몇몇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공공재로서의 보육서비스 개념을 기저로 하여 추진된 보육정책의 성과가 2-30년이 지난 후 긍정적인 정책지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책성과의 도출에 장기간을 요하는 정책지표, 즉 출산률 증가, 아동발달과 인적자본의 축적, 여성경제활동 제고와 같은 정책지표와는 별도로, 보육정책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게 하며, 적정 수준의 가계 부담으로 보육 서비스를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이옥, 2007). 이러한 정책지표들은 보다 단기적으로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유니세프는 각국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한 국제적 벤치마크임을 강조하면서 2008년,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

준으로 10개의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 지표는 25개 OECD 국가들의 영유아교육 보육을 비교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개 지표 중 4개를 충족하고 있는데 10개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고, 프랑스는 8개, 미국은 3개, 캐나다는 1개를 충족시키고 있다(UNICEF, 2008). 유니세프의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10개 지표'는 세 단계를 거쳐서 개발된 것이다. OECD(2006)가 제안한 10가지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John Bennett이 2008년에 발표한 '15개 벤치마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니세프의 10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먼저, OECD(2006)가 제안한 10가지 정책은 향후 영유아교육·보육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으로 '유아교육보육정책 주제검토(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사업의 결과로 제안한 것이다.

OECD는 가입 국가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수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주제검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Starting Strong'이라는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각국의 영유아교육·보육정책 동향과 성공요인 8가지를 제안하고(OECD, 2001), 두번째 보고서에는 향후 영유아교육·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10가지 정책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OECD, 2006). 10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표 III-2-15>과 같다.

이 10가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제검토에 참여한 20개 국가의 국가조정관과 연구진, 현장평가에 참여한 국제적 전문가 및 OECD 담당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합의를 통해 추출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Peter Moss(2007)는 이 10가지 정책은 각국의 영유아교육·보육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실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비판적 반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나정, 2010 재인용). 특히 이 10가지 정책은 '수립', '개발', '증가', '제공'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영유아교육·보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육·보육과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고 발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세 번째 보고서(OECD, 2012)에서 OECD국가들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에 대한 목표와 규정 설정, 둘째, 교육과정과 학습 기준 개

발 및 실행, 셋째,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넷째,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5) 자료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등이다.

<표 III-2-15> 향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10가지 정책 내용	
1)	영유아발달의 사회적 맥락(아동 및 가정의 빈곤감소, 인생에서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적 평등, 영유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여성이 직장과 육아의 책임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할 것
2)	아동의 복리, 생애초기의 발달과 학습(발달과정 고려한 학습전략,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풍부한 학습 환경, 훈련된 교육자 등)을 ECEC의 중심에 둘 것
3)	보육의 책무성과 질적 수준 보장 관련 관리 감독 체계(중앙정부 차원의 ECEC 전문 정책부서, 적극적 교사훈련, 교육과정,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관, 자문단, 통계부서 설립, 운영)를 수립, 강화할 것
4)	관계자 협력에 기반 한 보육지침서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5)	질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 합리적 재정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 서비스시설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부모직접 지원 방식은, 우수교원 채용, 기반시설 확충재원, 정부 관리감독의 수준 전하를 가져옴.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는 경우, 전문서비스의 감소와 저소득층의 서비스접근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6)	보호와 양육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육 개념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 소외 아동 등, 서비스 대상을 구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
7)	영유아보육서비스에도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할 것
8)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과 전문 교육정책 수립할 것: 무자격 인력 해소 필요함
9)	개별적 아동발달 서비스와 초등교육 이전 1년간의 무상 보육교육 등 재정 지원 확대필요
10)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것: 무차별의 보편적 아동교육권 보장, 경쟁학습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배제, 아동의 참여와, 학습공동체 지향 권고

자료: OECD(2008).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Ⅱ.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공역). 서울: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06년 원저 발간)

유니세프도 4개의 범주로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구조, 기회, 질, 지원으로 John Bennett(2008)이 제시한 15가지 지표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소기준 비율이나 수치 등은 John Bennett의 지표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15개 지표가 10개가 되었는데 제외된 지표는 공사립 기관과 정부부처 관련 지표 등이다. 이는 유니세프가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관의 설립 배경이나 정부 부처와 같이 다소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 지표는 제외 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10개 지표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표 III-2-16>과 같다.

〈표 III-2-16〉 UNICEF(2008)의 권고기준

영역	권고기준
정책구조	① 임금이 보장된 육아휴직: 부모 중 한 명이 월급의 50%를 받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소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 실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부모가 최저생계비를 보장, 아빠가 최소한 2주간의 육아휴직을 받는지 유무 ② 불리한 아동의 우선권을 위한 국가계획: 불리한 아동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계획과 재정 지원
기회	③ 3세 미만 영아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3세 미만 영아 25%가 공적 지원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보육서비스를 이용 ④ 4세를 위한 최소한의 접근기회 기준: 4세 유아 80%가 공적 지원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1주에 15시간 이용
질	⑤ 모든 보육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 수준: 가정보육을 포함하여 아이들과 접촉하는 유아기 서비스기관 보육교사의 80%가 관련 교육 사전 이수, 교육과 보육전문가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관심 증가 ⑥ 더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보육교사의 최소 비율: 정부 지원과 인증을 받는 유아교육기관 보육교사 50%가 최소한 3년의 고등교육을 받고 유아교육과 관련 분야의 자격 소지 ⑦ 보육교사 대 아동의 최소한의 비율: 아동 대 훈련받은 성인(교육자와 보조자)비율이 4, 5세는 1:15 미만, 집단 크기는 24명 미만일 것 ⑧ 공공재정의 최소한의 기준: 0~6세의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적 투자가 최소한 GDP의 1%
지원	⑨ 아동빈곤의 최소한의 기준: 아동빈곤율 10% 미만 ⑩ 보편적인 건강 지원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영아사망률 4/1,000미만, 2,500g 미만 저체중아 6% 미만, 12~23개월 영아 예방접종률 95% 이상

자료: UNICEF(2008; 나정, 2010: 106에서 재인용)

최근 들어 다양한 보육정책이 공표되고 시행되면서 보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하는 정책발표나 연구보고서들이 많은데, 나정(2010)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아동권리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근거로써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합의과정, 지표의 적합성, 정보 제공의 유용성,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볼 때 UNICEF의 '영유아교육보육 벤치마크 10개 지표'가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IV.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요구

보육의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계전문가,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진흥원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와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방향성,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서비스의 다양성 및 공공성, 운영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사업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의견조사 결과 학계전문가 67명, 보육담당 공무원 97명, 현장전문가 38명, 학부모 90명 등 총 292명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1. 현 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대한 평가

가. 부모의 비용부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국가의 양육수당 지원의 형평성, 보육료 지원정책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경감된 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IV-1-1 참조).

국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된 정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7.8%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3.80점이었다.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74.6%, 70.1%, 81.6%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의 경우 54.4%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형평성에 대하여 의견을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난 반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는 전체집단의 평균점수가 2.74점이었다.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

다는 응답이 각각 32.9%, 26.8%, 31.6%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의 경우 8.9%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정책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경감된 정도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1.6%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는 전체집단의 평균점수가 3.71점이었다. 전 집단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또는 과반을 나타냈으며,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의 경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67.2%와 70.1%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과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향상 안됨	별로 향상 안됨	보통	약간 향상 됨	매우 향상 됨	계(수)	$\chi^2(df)$	평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2.1	11.3	18.8	40.1	27.7	100.0(292)		3.80
학계전문가	0.0	11.9	13.4	37.3	37.3	100.0(67)	25.882 (12)*	4.00
공무원	2.1	10.3	17.5	36.1	34.0	100.0(97)		3.90
현장전문가	0.0	5.3	13.2	47.4	34.2	100.0(38)		4.11
학부모	4.4	14.4	26.7	43.3	11.1	100.0(90)		3.42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국가의 양육수당 지원의 형평성	8.9	36.0	31.8	18.5	4.8	100.0(292)	22.149 (12)*	2.74
학계전문가	10.4	32.8	23.9	25.4	7.5	100.0(67)		2.87
공무원	4.1	37.1	32.0	22.7	4.1	100.0(97)		2.86
현장전문가	7.9	34.2	26.3	26.3	5.3	100.0(38)		2.87
학부모	13.3	37.8	40.0	5.6	3.3	100.0(90)		2.48
보육료 지원정책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2.4	10.6	25.3	36.6	25.0	100.0(292)	27.357 (12)**	3.71
학계전문가	0.0	4.5	28.4	40.3	26.9	100.0(67)		3.90
공무원	2.1	10.3	17.5	36.1	34.0	100.0(97)		3.90
현장전문가	0.0	5.3	36.8	31.6	26.3	100.0(38)		3.79
학부모	5.6	17.8	26.7	36.7	13.3	100.0(90)		3.34

* $p < .05$, ** $p < .01$

나.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알

아보기 위하여 맞벌이 부모에 적합한 양육지원 서비스, 장애영유아의 개별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IV-1-2 참조).

〈표 IV-1-2〉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과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항상 안됨	별로 항상 안됨	보통	약간 항상 됨	매우 항상 됨	계(수)	χ^2 (df)	평균
맞벌이 부모에 적합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3.8	22.9	29.8	34.2	9.2	100.0(292)		3.22
학계 전문가	1.5	22.4	28.4	41.8	6.0	100.0(67)	16.683 (12)*	3.28
공무원	2.1	18.6	34.0	34.0	11.3	100.0(97)		3.34
현장 전문가	2.6	26.3	15.8	44.7	10.5	100.0(38)		3.34
학부모	7.8	26.7	32.2	24.4	8.9	100.0(90)		3.00
장애영유아의 개별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제공	7.2	25.7	39.7	22.9	4.5	100.0(292)		
학계 전문가	10.4	29.9	29.9	25.4	4.5	100.0(67)	21.676 (12)*	2.84
공무원	5.2	21.6	38.1	28.9	6.2	100.0(97)		3.09
현장 전문가	0.0	23.7	39.5	34.2	2.6	100.0(38)		3.16
학부모	10.0	27.8	48.9	10.0	3.3	100.0(90)		2.69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14.4	33.6	33.2	17.5	1.4	100.0(292)		2.58
학계 전문가	13.4	38.8	28.4	17.9	1.5	100.0(67)	22.766 (12)*	2.55
공무원	8.2	33.0	36.1	21.6	1.0	100.0(97)		2.74
현장 전문가	7.9	23.7	39.5	28.9		100.0(38)		2.89
학부모	24.4	34.4	31.1	7.8	2.2	100.0(90)		2.29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제공	5.1	27.7	38.7	21.2	7.2	100.0(292)		2.98
학계 전문가	6.0	28.4	29.9	28.4	7.5	100.0(67)	17.449 (12)	3.03
공무원	2.1	30.9	36.1	25.8	5.2	100.0(97)		3.01
현장 전문가	5.3	15.8	47.4	23.7	7.9	100.0(38)		3.13
학부모	7.8	28.9	44.4	10.0	8.9	100.0(90)		2.83

* $p < .05$

맞벌이 부모에 적합한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3.22점이었다.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의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47.8%, 45.3%, 55.2%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의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33.3%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영유아의 개별특성에 맞는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7.4%로 응답자의 약 1/4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보았으며, 5점 척도로는 전체집단의 평균점수가 2.92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의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36.8%, 35.1%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많은 반면, 학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29.9%와 13.3%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적게 나타났다.

가정 내 자녀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8.9%인 반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0%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2.58점으로 낮은 평정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한 반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8%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학부모 집단의 평균점수는 2.29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8.4%이었고,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는 전체집단의 평균점수가 2.98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는 응답한 비율은 각각 35.9%와 31.6%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두 응답이 31.0%와 33.0%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학부모의 경우 향상되었다는 응답한 비율은 18.9%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 보육의 질 및 어린이집 배치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균형배치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리의 강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담보, 취약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확충,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IV-1-3 참조).

어린이집 시설 및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9.7%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는 전체집단 평균점수가 3.39점이었다.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리의 강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1.0%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3.61

점이었다. 현장 전문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로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낸 반면, 학계 전문가와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6.8%와 52.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7.8%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는 전체집단의 평균점수가 3.74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6.1%와 81.6%이었던 반면,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이 담보되었는가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62.4%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3.63점이었다. 현장 전문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0%이었던 반면,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이었고,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2.89점이었다.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4%, 40.2%, 23.7%이었던 반면,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37.0%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3.08점이었다.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집단에서는 41.8%에서 50.0%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17.7%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19.5%이었으며,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2.87점이었다. 학계 전문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4%인 반면,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9.1%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가 2.82점이었다. 현장 전문가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이었던 반면, 공무원과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1.7%와 1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3〉 보육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균형배치 과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항상 안됨	별로 항상 안됨	보통	약간 항상 됨	매우 항상 됨	계(수)	$\chi^2(df)$	평균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3.1	14.7	32.5	39.4	10.3	100.0(292)		3.39
학계 전문가	1.5	22.4	20.9	44.8	10.4	100.0(67)	22.225 (12)*	3.40
공무원	1.0	9.3	40.2	41.2	8.2	100.0(97)		3.46
현장 전문가	2.6	7.9	31.6	50.0	7.9	100.0(38)		3.53
학부모	6.7	17.8	33.3	28.9	13.3	100.0(90)		3.24
어린이집 영양, 건강, 안전관리의 강화	1.4	12.0	25.3	46.6	14.4	100.0(292)		
학계 전문가	1.5	20.9	20.9	47.8	9.0	100.0(67)	28.804 (15)*	3.42
공무원	1.0	6.2	26.8	53.6	11.3	100.0(97)		3.69
현장 전문가	0.0	0.0	21.1	60.5	18.4	100.0(38)		3.97
학부모	2.2	16.7	28.9	32.2	20.0	100.0(90)		3.51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4	8.9	21.9	50.3	17.5	100.0(292)		
학계 전문가	1.5	7.5	14.9	55.2	20.9	100.0(67)	25.969 (12)*	3.87
공무원	1.0	6.2	20.6	59.8	12.4	100.0(97)		3.76
현장 전문가	0.0	2.6	15.8	50.0	31.6	100.0(38)		4.11
학부모	2.2	15.6	31.1	36.7	14.4	100.0(90)		3.46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담보	1.7	11.0	25.0	47.3	15.1	100.0(292)		
학계 전문가	1.5	10.4	28.4	49.3	10.4	100.0(67)	11.924 (12)	3.57
공무원	1.0	9.3	23.7	50.5	15.5	100.0(97)		3.70
현장 전문가	0.0	7.9	13.2	55.3	23.7	100.0(38)		3.95
학부모	3.3	14.4	28.9	38.9	14.4	100.0(90)		3.47
취약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1.0	21.9	39.4	22.6	5.1	100.0(292)		
학계 전문가	11.9	14.9	38.8	29.9	4.5	100.0(67)	36.155 (12)***	3.00
공무원	5.2	16.5	38.1	33.0	7.2	100.0(97)		3.21
현장 전문가	2.6	26.3	47.4	18.4	5.3	100.0(38)		2.97
학부모	20.0	31.1	37.8	7.8	3.3	100.0(90)		2.43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7.2	20.2	35.6	31.5	5.5	100.0(292)		
학계 전문가	3.0	16.4	38.8	38.8	3.0	100.0(67)	44.244 (12)***	3.22
공무원	3.1	15.5	35.1	38.1	8.2	100.0(97)		3.33
현장 전문가	0.0	13.2	36.8	42.1	7.9	100.0(38)		3.45
학부모	17.8	31.1	33.3	14.4	3.3	100.0(90)		2.54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확충	7.2	22.3	51.0	15.4	4.1	100.0(292)		
학계 전문가	6.0	23.9	38.8	23.9	7.5	100.0(67)	32.801 (12)**	3.03
공무원	2.1	18.6	57.7	18.6	3.1	100.0(97)		3.02
현장 전문가	0.0	23.7	63.2	10.5	2.6	100.0(38)		2.92
학부모	16.7	24.4	47.8	7.8	3.3	100.0(90)		2.57

(표 IV-1-3 계속)

구분	전혀 항상 안됨	별로 항상 안됨	보통	약간 항상 됨	매우 항상 됨	계(수)	$\chi^2(df)$	평균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	16.1	22.9	31.2	21.2	7.9	100.0(292)	78.722 (15) ^{***}	2.82
학계 전문가	4.5	22.4	28.4	31.3	11.9	100.0(67)		3.24
공무원	11.3	23.7	42.3	18.6	3.1	100.0(97)		2.78
현장 전문가	0.0	15.8	21.1	42.1	21.1	100.0(38)		3.68
학부모	36.7	25.6	25.6	7.8	4.4	100.0(90)		2.18

* $p < .05$ ** $p < .01$ *** $p < .001$

라. 보육인력 전문성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내실화,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IV-1-4 참조).

〈표 IV-1-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항상 안됨	별로 항상 안됨	보통	약간 항상 됨	매우 항상 됨	계(수)	$\chi^2(df)$	평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의 양성교육의 내실화	7.9	23.6	40.8	25.0	2.7	100.0(292)	25.949 (12) [*]	2.91
학계 전문가	14.9	26.9	35.8	22.4	0.0	100.0(67)		2.66
공무원	4.1	25.8	36.1	34.0	0.0	100.0(97)		3.00
현장 전문가	7.9	21.1	52.6	13.2	5.3	100.0(38)		2.87
학부모	6.7	20.0	44.4	22.2	6.7	100.0(90)		3.02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7.5	23.6	46.2	20.2	2.4	100.0(292)	20.128 (12)	2.86
학계 전문가	13.4	31.3	41.8	13.4	0.0	100.0(67)		2.55
공무원	4.1	19.6	50.5	24.7	1.0	100.0(97)		2.99
현장 전문가	7.9	34.2	34.2	18.4	5.3	100.0(38)		2.79
학부모	6.7	17.8	50.0	21.1	4.4	100.0(90)		2.99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	8.6	29.1	32.2	26.0	4.1	100.0(292)	37.317 (12) ^{***}	2.88
학계 전문가	9.0	41.8	23.9	25.4	0.0	100.0(67)		2.66
공무원	3.1	17.5	35.1	39.2	5.2	100.0(97)		3.26
현장 전문가	5.3	39.5	26.3	23.7	5.3	100.0(38)		2.84
학부모	15.6	27.8	37.8	13.3	5.6	100.0(90)		2.66

* $p < .05$ *** $p < .001$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27.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 집단 평균점수는 2.91점이었다. 공무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0%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현장밀착형 보수교육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22.6%로 낮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2.86점이었다. 공무원과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7%와 25.5%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30.1%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2.88점이었다. 공무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인 반면 학계 전문가와 학부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4%와 1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IV-1-5 참조).

〈표 IV-1-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향상 안됨	별로 향상 안됨	보통	약간 향상 됨	매우 향상 됨	계(수)	$\chi^2(df)$	평균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	3.1	11.0	33.2	40.4	12.0	1000(292)		3.47
학계 전문가	1.5	4.5	31.3	46.3	16.4	100.0(67)	29.933	3.72
공무원	2.1	7.2	32.0	45.4	12.4	100.0(97)	(15)*	3.59
현장 전문가	2.6	5.3	31.6	52.6	7.9	100.0(38)		3.58
학부모	5.6	22.2	36.7	25.6	10.0	100.0(90)		3.1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	1.7	11.0	33.9	44.9	8.6	100.0(292)		3.48
학계 전문가	0.0	10.4	35.8	47.8	6.0	100.0(67)	49.796	3.49
공무원	1.0	4.1	26.8	56.7	11.3	100.0(97)	(12)***	3.73
현장 전문가	0.0	5.3	18.4	57.9	18.4	100.0(38)		3.89
학부모	4.4	21.1	46.7	24.4	3.3	100.0(90)		3.01

(표 IV-1-5 계속)

구분	전혀 항상 안됨	별로 항상 안됨	보통	약간 항상 됨	매우 항상 됨	계(수)	$\chi^2(df)$	평균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	6.8	21.9	37.7	27.7	5.8	100.0(292)	56.211 (12) ^{***}	3.04
학계 전문가	3.0	19.4	19.4	47.8	10.4	100.0(67)		3.43
공무원	2.1	21.6	52.6	20.6	3.1	100.0(97)		3.01
현장 전문가	2.6	21.1	26.3	42.1	7.9	100.0(38)		3.32
학부모	16.7	24.4	40.0	14.4	4.4	100.0(90)		2.66

* $p < .05$ *** $p < .001$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2.4%로 과반이 넘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47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7%, 57.8%, 6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48점이었다. 특히 현장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04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또는 과반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 보육사업 지원체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추진,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IV-1-6 참조).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고,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04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7%와 3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항상 안됨	별로 항상 안됨	보통	약간 항상 됨	매우 항상 됨	계(수)	$\chi^2(df)$	평균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4.8	17.8	50.0	22.9	4.5	100.0(292)		3.04
학계 전문가	1.5	10.4	37.3	40.3	10.4	100.0(67)	61.487 (12) ^{***}	3.48
공무원	2.1	14.4	66.0	17.5	0.0	100.0(97)		2.99
현장 전문가	0.0	10.5	50.0	31.6	7.9	100.0(38)		3.37
학부모	12.2	30.0	42.2	12.2	3.3	100.0(90)		2.64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5.1	20.9	56.5	16.1	1.4	100.0(292)		2.88
학계 전문가	1.5	17.9	56.7	23.9	0.0	100.0(67)	33.262 (12) ^{**}	3.03
공무원	3.1	15.5	64.9	16.5	0.0	100.0(97)		2.95
현장 전문가	0.0	26.3	57.9	15.8	0.0	100.0(38)		2.89
학부모	12.2	26.7	46.7	10.0	4.4	100.0(90)		2.68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 추진	8.2	24.0	51.4	14.7	1.7	100.0(292)		2.78
학계 전문가	7.5	22.4	53.7	14.9	1.5	100.0(67)	17.566 (12)	2.81
공무원	5.2	22.7	53.6	18.6	0.0	100.0(97)		2.86
현장 전문가	5.3	18.4	65.8	10.5	0.0	100.0(38)		2.82
학부모	13.3	28.9	41.1	12.2	4.4	100.0(90)		2.66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5.8	17.5	38.0	34.9	3.8	100.0(292)		3.13
학계 전문가	4.5	19.4	37.3	34.3	4.5	100.0(67)	29.187 (12) ^{**}	3.15
공무원	2.1	14.4	36.1	44.3	3.1	100.0(97)		3.32
현장 전문가	0.0	7.9	50.0	42.1	0.0	100.0(38)		3.34
학부모	13.3	23.3	35.6	22.2	5.6	100.0(90)		2.83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7.5	21.2	41.8	25.0	4.5	100.0(292)		2.98
학계 전문가	3.0	28.4	44.8	19.4	4.5	100.0(67)	39.061 (12) ^{***}	2.94
공무원	3.1	16.5	40.2	37.1	3.1	100.0(97)		3.21
현장 전문가	2.6	10.5	44.7	34.2	7.9	100.0(38)		3.34
학부모	17.8	25.6	40.0	12.2	4.4	100.0(90)		2.60

** $p < .01$, *** $p < .001$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7.5%로 낮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2.88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추진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6.4%로 낮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2.78점이었다. 조사된 집단 모두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비율은 20%미만이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38.7%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13점이었다.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4%와 4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29.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2.98점이었다.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2%와 4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가. 정책 방향성

보육의 정체성과 보육이념, 국가의 보육책임을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IV-2-1 참조). '보육은 국가적 책임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1점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없이 지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45.9%로써 그렇다는 응답비율인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2.98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5.6%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인 3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는 평균점수가 3.47점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은 어머니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41.1%로써 그렇다는 응답비율인 42.4%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09점이었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학부모의 54.4%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3.42점인 반면 학계 전문가의 31.4%가 그렇다고 응답하며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2.73점으로, 학부모가 학계 전문가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는 무상보육정책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게 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9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49점이었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학계 전문가의 98.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82.2%와 공무원의 89.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계 전문가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학부모나 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만큼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83.2%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영아자녀(0~2세)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학계 전문가의 92.6%와 현장 전문가의 92.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66.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부모가 영아의 가정양육에 동의하는 정도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V-2-1〉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평균
보육은 국가적 책임임	0.3	7.5	12.3	40.1	39.7	1000(292)		4.11
학계 전문가	0.0	10.4	9.0	31.3	49.3	100.0(67)	16.775 (12)	4.19
공무원	1.0	8.2	17.5	45.4	27.8	100.0(97)		3.91
현장 전문가	0.0	10.5	10.5	42.1	36.8	100.0(38)		4.05
학부모	0.0	3.3	10.0	40.0	46.7	100.0(90)		4.30
무상보육정책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없이 지속해야 함	18.5	27.4	12.7	20.2	21.2	1000(292)	37.724 (12) ^{***}	2.98
학계 전문가	29.9	29.9	10.4	16.4	13.4	100.0(67)		2.54
공무원	14.4	29.9	13.4	29.9	12.4	100.0(97)		2.96
현장 전문가	18.4	39.5	15.8	7.9	18.4	100.0(38)		2.68
학부모	14.4	17.8	12.2	17.8	37.8	100.0(90)		3.47

(표 IV-2-1 계속)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평균
무상보육정책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15.8	25.3	16.4	19.5	22.9	100.0(292)	31.418	3.09
학계 전문가	26.9	26.9	14.9	9.0	22.4	100.0(67)	(12)**	2.73
공무원	9.3	35.1	16.5	24.7	14.4	100.0(97)		3.00
현장 전문가	10.5	28.9	18.4	21.1	21.1	100.0(38)		3.13
학부모	16.7	12.2	16.7	21.1	33.3	100.0(90)		3.4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게 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함	1.0	2.7	5.8	26.4	63.7	100.0(292)	49.066	4.49
학계 전문가	0.0	1.5	0.0	11.9	86.6	100.0(67)	(15)***	4.84
공무원	0.0	1.0	9.3	40.2	49.5	100.0(97)		4.38
현장 전문가	0.0	2.6	0.0	28.9	65.8	100.0(38)		4.62
학부모	3.3	5.6	8.9	21.1	61.1	100.0(90)		4.31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만큼 중요함	1.4	3.1	12.3	27.7	55.5	100.0(292)	20.901	4.33
학계 전문가	3.0	4.5	6.0	32.8	53.7	100.0(67)	(12)	4.30
공무원	1.0	1.0	14.4	34.0	49.5	100.0(97)		4.30
현장 전문가	2.6	0.0	5.3	21.1	71.1	100.0(38)		4.58
학부모	0.0	5.6	17.8	20.0	56.7	100.0(90)		4.28
영아자녀(0~2세)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4.5	11.6	25.3	57.2	100.0(292)	32.504	4.33
학계 전문가	1.5	3.0	3.0	28.4	64.2	100.0(67)	(12)**	4.51
공무원	0.0	1.0	12.4	32.0	54.6	100.0(97)		4.40
현장 전문가	0.0	5.3	2.6	21.1	71.1	100.0(38)		4.58
학부모	3.3	8.9	21.1	17.8	48.9	100.0(90)		4.00

** $p < .01$, *** $p < .001$

향후 보육정책을 수립할 때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V-2-2>는 향후 보육정책 수립 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인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68.2%로 동의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약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이 18.8%, '부모의 취업지원'이 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보육정책 수립 시 우선순위(1순위)

항목	단위: %(명)				
	전체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68.2	73.1	67.0	73.7	63.3
취약가정의 자녀양육지원	18.8	20.9	20.6	10.5	18.9
부모의 취업지원	6.8	6.0	5.2	10.5	7.8
기타	6.2	0.0	7.2	5.3	10.0

각 연령대에서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 중 선택한 경우, 만 1세 미만의 경우 94.6%,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81.5%가 가정양육을 선택하였다.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67.5%가 어린이집 보육을 선택하였고 31.8%가 가정양육을 선호하였다.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의 경우 96.2%,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의 경우 97.9%, 만 5세 이상은 97.6%가 어린이집 보육을 선택하였다(표 IV-2-3 참조).

〈표 IV-2-3〉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연령별 적합성

구분	단위: %(명)			
	가정양육	어린이집	기타	계
만 1세 미만	94.6	4.8	0.3	100.0(292)
만 1세 이상 - 2세 미만	81.5	17.8	0.7	100.0(292)
만 2세 이상 - 3세 미만	31.8	67.5	0.7	100.0(292)
만 3세 이상 - 4세 미만	3.1	96.2	0.7	100.0(292)
만 4세 이상 - 5세 미만	1.4	97.9	0.7	100.0(292)
만 5세 이상	1.7	97.6	0.7	100.0(292)

어린이집 보육을 선택한 경우 각 연령대에서 적절한 이용시간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결과, 만 1세 미만의 경우 5.79시간,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5.94시간,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5.66시간,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의 경우 6.16시간,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인 경우 6.86시간, 만 5세 이상인 경우 7.18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취업모의 자녀와 비취업모의 자녀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서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경우 7.17시간,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7.44시간,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8.04시간,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의 경우 8.48시간,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인 경우 8.70시간, 만 5세 이상인 경우 8.80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경우 2.89시간,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3.27시간,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4.53시간,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의 경우 5.58시간,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인 경우 6.03시간, 만 5세 이상인 경우 6.35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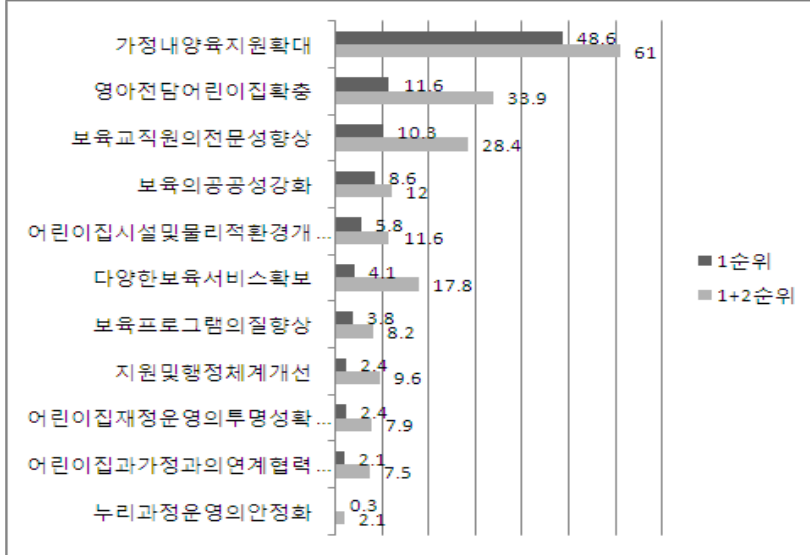
〈표 IV-2-4〉 아동 연령별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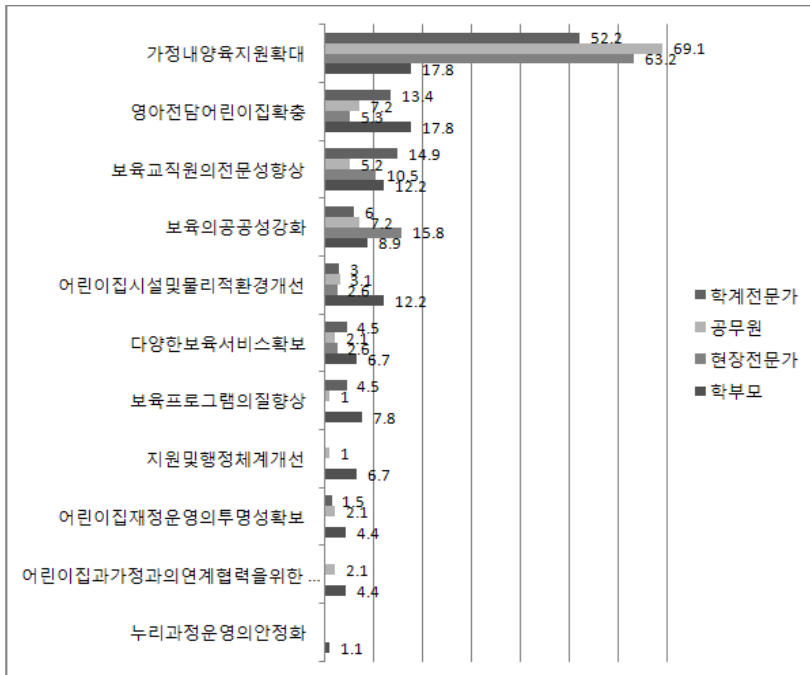
구분	어린이집 이용 시 적정 시간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의 경우
만 1세 미만	5.79	7.17	2.89
만 1세 이상 - 2세 미만	5.94	7.44	3.27
만 2세 이상 - 3세 미만	5.66	8.04	4.53
만 3세 이상 - 4세 미만	6.16	8.48	5.58
만 4세 이상 - 5세 미만	6.86	8.70	6.03
만 5세 이상	7.18	8.80	6.35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어떤 정책이 향후 5년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과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만 0세에서 만 2세의 영아 대상 보육정책 중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된 순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48.6%가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로 응답하였고, 전체의 11.6%가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으로 응답하였고, 전체의 10.3%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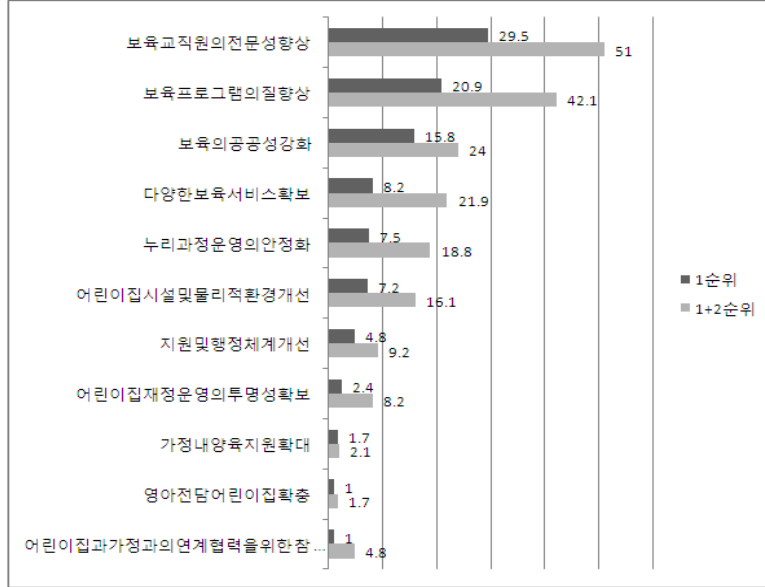
만 3세에서 만 5세의 유아 대상 보육정책 중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된 순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29.5%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응답하였고 전체의 20.9%가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전체의 15.8%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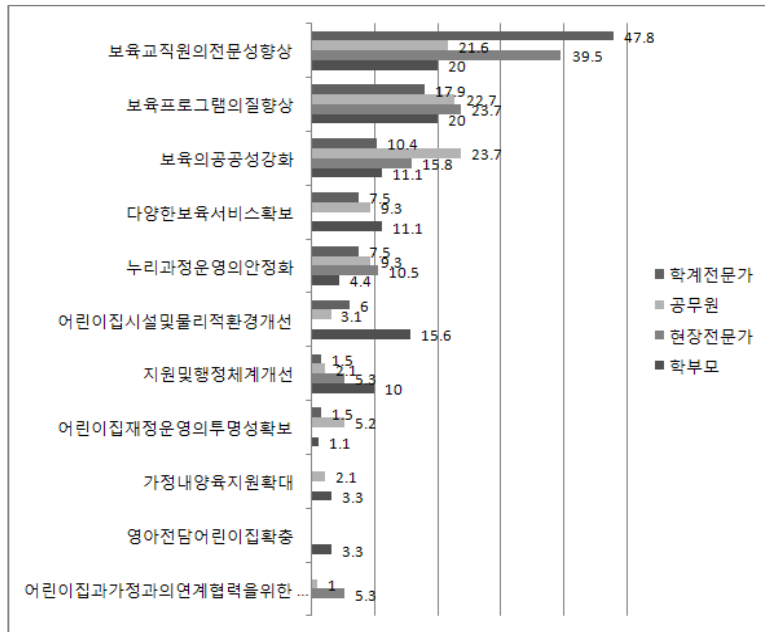
[그림 IV-2-1]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순위



[그림 IV-2-2] 집단별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 1순위



[그림 IV-2-3]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순위



[그림 IV-2-4] 집단별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 개선의 우선 1순위

나.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현 재정지원 체계는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만 2세의 영유아와 만 5세아에게 소득 및 재산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되며, 만 3세아와 만 4세아는 가구소득 70%인 경우 지원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만 3세아와 만 4세아에게도 보육료가 전액지원될 계획이다. 현 재정지원 체계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에게 현행유지와 개선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8%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2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의 80%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61.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5〉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무응답 포함)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단위: %(명)	
				χ^2	(df)
전체	20.9	78.8	100.0(292)		
학계 전문가	11.9	88.1	100.0(67)	27.573(6) ^{***}	
공무원	12.4	86.6	100.0(97)		
현장 전문가	15.8	84.2	100.0(38)		
학부모	38.9	61.1	100.0(90)		

^{***} $p < .001$

현 보육료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육료 지원의 금액범위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할지를 질문한 결과, '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소득계층에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5.7%로 '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의 선택에 의한 추가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인 24.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6참조).

〈표 IV-2-6〉 보육료 지원의 금액범위 개선안 의견

구분	소득계층에 차등적 지원	부모의 선택에 의한 추가비용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			계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	기타		
전체	65.7	24.8	9.8	100.0(230)	
학계 전문가	81.4	15.3	5.1	100.0(59)	
공무원	58.3	23.8	16.8	100.0(84)	
현장 전문가	78.1	15.6	6.2	100.0(32)	
학부모	52.7	41.8	5.4	100.0(55)	

현 보육료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육료 지원 조건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를 질문한 결과, '보육료는 맞벌이 부모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1%로, '보육료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인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7참조).

〈표 IV-2-7〉 보육료 지원 조건의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맞벌이 부모나 경제적 조건을 고려	부모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제공	기타	계
전체	66.1	31.3	2.5	100.0(230)
학계 전문가	72.9	22.0	6.8	100.0(59)
공무원	66.7	29.8	3.6	100.0(84)
현장 전문가	68.8	31.3	0.0	100.0(32)
학부모	56.4	43.6	0.0	100.0(55)

현 보육료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영아와 유아를 구분한 보육료 지원 조건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를 질문한 결과, '보육료는 영아와 유아의 구분 없이 동일요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인 4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아의 경우는 취업모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만 무상보육 지원을 하고, 유아는 부모의 취업여부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3%로 나타났다(표 IV-2-8참조).

〈표 IV-2-8〉 영아와 유아를 구분한 보육료 지원 조건의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영아와 유아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제공	영아는 취업모 및 한부모 자녀만, 유아는 부모의 취업여부 상관없이	영아는 부모의 취업여부 상관없이, 유아는 취업모 및 한부모 자녀에게만	기타	계
전체	46.5	38.3	9.6	6.3	100.0(230)
학계 전문가	55.9	33.9	3.4	8.5	100.0(59)
공무원	34.5	46.4	11.9	7.2	100.0(84)
현장 전문가	56.3	28.1	12.5	6.2	100.0(32)
학부모	49.1	36.4	10.9	3.6	100.0(55)

양육수당의 지원에 대하여, 현 지원체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에서 만 2세아를 둔 소득하위 15% 가구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수당 지원 체계에 대하여 현행유지와 개선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양육수당 지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69.9%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인 29.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9 참조).

〈표 IV-2-9〉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성

구분	단위: %(명)			χ^2 (df)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전체	29.8	69.9	100.0(292)	5.279(6)
학계 전문가	31.3	67.2	100.0(67)	
공무원	24.7	75.3	100.0(97)	
현장 전문가	31.6	68.4	100.0(38)	
학부모	33.3	66.7	100.0(90)	

현 양육수당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한 결과,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0.3%,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37.7%로 나타났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양육수당 지원대상 개선안 의견

구분	단위: %(명)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고려해야 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고려해야 함	기타	계
전체	60.3	37.7	2.5	100.0(204)
학계 전문가	66.7	31.1	4.4	100.0(45)
공무원	58.9	38.4	2.8	100.0(73)
현장 전문가	61.5	34.6	3.8	100.0(26)
학부모	56.7	43.3	0.0	100.0(60)

현 양육수당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양육수당 지원에 영유아 연령별 차등을 두어야 할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양육수당 영유아 연령별 지원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등을 고려해야 함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함	기타	계
전체	59.3	39.7	1.0	1000(204)
학계 전문가	55.6	44.4	0.0	100.0(45)
공무원	57.5	41.1	1.4	100.0(73)
현장 전문가	65.4	30.8	3.8	100.0(26)
학부모	61.7	38.3	0.0	100.0(60)

보육지원이 계속되거나 향후 이루어져야 할 보육지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지원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표 IV-2-12참조).

〈표 IV-2-12〉 보육지원의 필요성 (무응답 포함)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평균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 시간에 따른 보육료 책정	전체	3.8	10.6	17.1	29.1	39.0	100.0(292)	34.109 (15)**	3.89
	학계 전문가	1.5	10.4	11.9	25.4	50.7	100.0(67)		4.13
	공무원	1.0	18.6	15.5	29.9	35.1	100.0(97)		3.79
	현장 전문가	5.3	5.3	10.5	31.6	44.7	100.0(38)		4.08
	학부모	7.8	4.4	25.6	30.0	32.2	100.0(90)		3.74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적절성 검토	전체	0.0	1.4	20.9	30.1	47.3	100.0(292)	35.147 (12)***	4.24
	학계 전문가	0.0	1.5	10.4	22.4	65.7	100.0(67)		4.52
	공무원	0.0	3.1	17.5	33.0	46.4	100.0(97)		4.23
	현장 전문가	0.0	0.0	13.2	39.5	44.7	100.0(38)		4.32
	학부모	0.0	0.0	35.6	28.9	35.6	100.0(90)		4.00
세금혜택을 통한 지원확대	전체	1.7	3.8	18.5	34.9	40.8	100.0(292)	16.730 (15)	4.10
	학계 전문가	0.0	1.5	16.4	37.3	44.8	100.0(67)		4.25
	공무원	3.1	7.2	19.6	33.0	37.1	100.0(97)		3.94
	현장 전문가	2.6	2.6	21.1	39.5	31.6	100.0(38)		3.97
	학부모	1.1	2.2	17.8	33.3	45.6	100.0(90)		4.20
어린이집 부정 수급 관리감독 강화	전체	0.0	0.7	7.9	21.6	69.5	100.0(292)	20.957 (12)	4.60
	학계 전문가	0.0	1.5	0.0	20.9	77.6	100.0(67)		4.75
	공무원	0.0	0.0	11.3	24.7	63.9	100.0(97)		4.53
	현장 전문가	0.0	0.0	2.6	23.7	71.1	100.0(38)		4.70
	학부모	0.0	1.1	12.2	17.8	68.9	100.0(90)		4.54

** $p < .01$ *** $p < .001$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책정’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89점이었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학계 전문가의 76.1%와 현장 전문가의 7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의 65%와 학부모의 6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적절성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은 77.4%로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 점수는 4.24점이었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학계 전문가의 88.1%와 현장 전문가의 8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6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금혜택을 통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은 75.7%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0점이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했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60점이었다(표 IV-2-12 참조).

2012년 현재,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만 0세에서 만 5세의 무상보육이 실시될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현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현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37.7%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전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성 (무응답 포함)

구분	단위: %(명)			χ^2 (df)
	지속	개선필요	계	
전체	37.7	62.0	100.0(292)	50.418 (6) ^{***}
학계 전문가	22.4	77.6	100.0(67)	
공무원	28.9	71.1	100.0(97)	
현장 전문가	21.1	76.3	100.0(38)	
학부모	65.6	34.4	100.0(90)	

^{***} $p < .001$

무상보육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IV-2-14 참조).

〈표 IV-2-14〉 전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정책 지속이유 (무응답 포함)

단위: %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계
전체	100.0(15)	100.0(28)	100.0(8)	100.0(59)	100.0(110)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임	80.0	60.7	75.0	71.2	70.0
미래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필요함	20.0	17.9	12.5	18.6	18.2
이미 시행된 정책으로 수혜대상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0.0	21.4	12.5	6.8	10.0

무상보육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개선해야하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가정양육을 받던 영유아가 어린이 집에 대거 몰리면서 저소득이나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다(표 IV-2-15 참조).

〈표 IV-2-15〉 전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이유

단위: %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계
전체	100.0(53)	100.0(69)	100.0(29)	100.0(90)	100.0(241)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임	22.6	26.1	10.3	10.0	17.4
부모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때문임	11.3	14.5	13.8	4.4	10.0
실수요자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임	37.7	44.9	34.5	63.3	49.0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56.6	42.0	58.6	14.4	36.9
기타	7.5	4.3	6.9	7.8	6.6

2012년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구 36개월 미만 영아와 장애아동 및 농어촌 거주아동이다. 향후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83.6%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16.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표 IV-2-16 참조).

〈표 IV-2-16〉 양육수당 확대방안에 대한 견해

구분	단위: %(명)		
	긍정적	부정적	계
전체	83.6	16.4	100.0(292)
학계 전문가	76.1	23.9	100.0(67)
공무원	87.6	12.4	100.0(97)
현장 전문가	84.2	15.8	100.0(38)
학부모	84.4	15.6	100.0(90)

향후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8%가 '가구소득수준'에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4.2%는 '아동연령'에 응답하였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양육수당 지급의 전제조건(복수 응답)

	단위: 명				
	가구소득 수준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여부	필요하지 않음	계
전체	67.8	34.2	29.8	20.2	100.0(292)
학계 전문가	74.6	37.3	25.4	17.9	100.0(67)
공무원	64.9	29.9	22.7	22.7	100.0(97)
현장 전문가	73.7	42.1	34.2	15.8	100.0(38)
학부모	63.3	33.3	38.9	21.1	100.0(90)

2012년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 취학전 농어촌 거주 아동(최대 84개월), 취학전 등록 장애 아동(최대 84개월)이다. 차상위 계층 36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연령별로 차등이 있어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 만 2세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차상위 초과 계층이며 소득 하위 70%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할 추세이다. 연령별 양육수당의 예상 적정금액을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적정금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32.5%, 만 1세의 경우 35.6%, 만 2세의 경우 33.9%가 20만원이었다. 한편 만 3세에 27.1%, 만 4세에 31.8%, 만 5세 32.9%가 0원에 응답하였다(표 IV-2-18 참조).

〈표 IV-2-18〉 연령별 양육수당 예상 적정금액

단위: 만원, %(명)

연령	금액	양육수당														계	평균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만 0세	전체	5.5	0.0	2.7	1.7	32.5	12.7	31.2	1.7	5.1	0.0	3.4	0.3	0.0	0.3	0.7	100.0(292)	25.33
	학계	11.9	0.0	1.5	3.0	31.3	10.4	29.9	4.5	3.0	0.0	3.0	0.0	0.0	0.0	1.5	100.0(67)	23.73
	공무원	2.1	0.0	3.1	2.1	34.0	16.5	27.8	0.0	6.2	0.0	4.1	0.0	0.0	0.0	0.0	100.0(97)	25.48
	현장	7.9	0.0	0.0	2.6	26.3	18.4	36.8	0.0	0.0	0.0	0.0	0.0	0.0	0.0	2.6	100.0(38)	24.44
	학부모	3.3	0.0	4.4	0.0	34.4	7.8	33.3	2.2	7.8	0.0	4.4	1.1	0.0	1.1	0.0	100.0(90)	26.72
만 1세	전체	4.8	0.0	3.1	14.4	35.6	16.4	16.4	1.7	3.1	0.3	1.4	0.3	0.3	0.0	0.7	100.0(292)	22.48
	학계	9.0	0.0	3.0	11.9	26.9	16.4	25.4	1.5	3.0	0.0	1.5	0.0	0.0	0.0	1.5	100.0(67)	22.69
	공무원	2.1	0.0	2.1	19.6	37.1	12.4	15.5	2.1	3.1	1.0	2.1	0.0	0.0	0.0	0.0	100.0(97)	22.45
	현장	7.9	0.0	2.6	15.8	39.5	23.7	5.3	0.0	0.0	0.0	0.0	0.0	0.0	0.0	2.6	100.0(38)	20.41
	학부모	3.3	0.0	4.4	10.0	38.9	17.8	15.6	2.2	4.4	0.0	1.1	1.1	1.1	0.0	0.0	100.0(90)	23.22
만 2세	전체	5.1	1.0	16.1	16.1	33.9	8.6	13.4	0.7	2.1	0.3	1.0	0.0	0.3	0.3	0.0	100.0(292)	19.36
	학계	10.4	1.5	14.9	10.4	25.4	14.9	16.4	1.5	1.5	0.0	1.5	0.0	0.0	1.5	0.0	100.0(67)	19.70
	공무원	2.1	0.0	20.6	18.6	34.0	6.2	12.4	0.0	3.1	0.0	1.0	0.0	0.0	0.0	0.0	100.0(97)	19.05
	현장	7.9	0.0	18.4	26.3	31.6	5.3	5.3	0.0	0.0	0.0	0.0	0.0	0.0	2.6	0.0	100.0(38)	17.03
	학부모	3.3	2.2	11.1	13.3	41.1	7.8	15.6	1.1	2.2	1.1	1.1	0.0	0.0	0.0	0.0	100.0(90)	20.39
만 3세	전체	27.1	5.1	15.4	9.2	24.3	7.5	6.2	0.0	2.7	0.3	0.3	0.3	0.3	0.0	0.0	100.0(292)	13.74
	학계	44.8	3.0	9.0	6.0	14.9	6.0	13.4	0.0	1.5	0.0	0.0	0.0	1.5	0.0	0.0	100.0(67)	11.94
	공무원	36.1	2.1	19.6	7.2	19.6	5.2	4.1	0.0	3.1	0.0	1.0	0.0	0.0	0.0	0.0	100.0(97)	11.58
	현장	31.6	21.1	18.4	7.9	13.2	2.6	2.6	0.0	0.0	0.0	0.0	0.0	0.0	0.0	0.0	100.0(38)	8.38
	학부모	2.2	3.3	14.4	14.4	41.1	13.3	4.4	0.0	4.4	1.1	0.0	1.1	0.0	0.0	0.0	100.0(90)	19.56
만 4세	전체	31.8	4.8	19.2	7.9	19.9	4.5	7.5	0.0	2.1	0.0	0.7	0.7	0.0	0.0	0.0	100.0(292)	12.35
	학계	46.3	3.0	7.5	7.5	11.9	7.5	13.4	0.0	1.5	0.0	0.0	1.5	0.0	0.0	0.0	100.0(67)	11.72
	공무원	37.1	3.1	21.6	6.2	19.6	2.1	5.2	0.0	2.1	0.0	1.0	0.0	0.0	0.0	0.0	100.0(97)	10.79
	현장	31.6	21.1	21.1	7.9	10.5	2.6	2.6	0.0	0.0	0.0	0.0	0.0	0.0	0.0	0.0	100.0(38)	8.11
	학부모	15.6	1.1	24.4	10.0	30.0	5.6	7.8	0.0	3.3	0.0	1.1	1.1	0.0	0.0	0.0	100.0(90)	16.22
만 5세	전체	32.9	4.8	18.2	7.9	19.5	4.1	8.2	0.0	1.7	0.0	1.4	0.3	0.0	0.0	0.0	100.0(292)	12.32
	학계	46.3	3.0	7.5	7.5	11.9	7.5	13.4	0.0	1.5	0.0	1.5	0.0	0.0	0.0	0.0	100.0(67)	11.64
	공무원	37.1	3.1	21.6	6.2	19.6	2.1	5.2	0.0	2.1	0.0	1.0	0.0	0.0	0.0	0.0	100.0(97)	10.79
	현장	31.6	21.1	21.1	7.9	10.5	2.6	2.6	0.0	0.0	0.0	0.0	0.0	0.0	0.0	0.0	100.0(38)	8.11
	학부모	18.9	1.1	21.1	10.0	28.9	4.4	10.0	0.0	2.2	0.0	2.2	1.1	0.0	0.0	0.0	100.0(90)	16.17

다. 서비스의 다양성 및 공공성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5.3%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

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5%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현장 전문가의 97.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72.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2-19참조).

〈표 IV-2-19〉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의 개선 필요성

구분	단위: %(명)			χ^2 (df)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전체	17.5	82.5	100.0(292)	18.088 (3) ^{***}
학계 전문가	7.5	92.5	100.0(67)	
공무원	27.8	72.2	100.0(97)	
현장 전문가	2.6	97.4	100.0(38)	
학부모	20.0	80.0	100.0(90)	

^{***} $p < .001$

국공립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확충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0%'로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2-20참조).

〈표 IV-2-20〉 국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확충 필요도

구분	단위: %(명)					
	전체의 20%로 확충	전체의 30%로 확충	전체의 40%로 확충	전체의 50%로 확충	기타	전체
전체	22.0	34.9	8.3	31.1	3.6	100.0(241)
학계 전문가	17.7	35.5	9.7	35.5	1.6	100.0(62)
공무원	32.9	37.1	2.9	24.3	2.8	100.0(70)
현장 전문가	18.9	40.5	5.4	24.3	10.8	100.0(37)
학부모	16.7	29.2	13.9	37.5	2.8	100.0(72)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하게 하는 유형이다. 2011년 기준으로 665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1%로 나타났다(표 IV-2-21참조).

〈표 IV-2-21〉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 비중에 대한 개선 필요성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단위: %(명)	
				χ^2	(df)
전체	20.9	79.1	100.0(292)	5.956	(3)
학계 전문가	17.9	82.1	100.0(67)		
공무원	28.9	71.1	100.0(97)		
현장 전문가	13.2	86.8	100.0(38)		
학부모	17.8	82.2	100.0(90)		

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확충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0%'로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 '전체의 25%로 확충'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나타났다(표 IV-2-22참조).

〈표 IV-2-22〉 공공형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확충 필요도

구분	단위: %(명)					
	전체의 10%로 확충	전체의 15%로 확충	전체의 20%로 확충	전체의 25%로 확충	기타	전체
전체	17.3	8.7	32.0	32.9	9.1	100.0(231)
학계 전문가	16.4	5.5	29.1	34.5	14.5	100.0(55)
공무원	31.9	8.7	24.6	23.2	11.4	100.0(69)
현장 전문가	6.1	9.1	42.4	30.3	12.0	100.0(33)
학부모	9.5	10.8	36.5	41.9	1.4	100.0(74)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어린이집 39,842개소 중 민간 어린이집은 37.7%, 가정어린이집이 52.0%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전체의 약 89%이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전체 대비 비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84.6%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23참조). 현장 전문가의 97.4%와 학계 전문가의 9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75.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2-23 참조).

〈표 IV-2-23〉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전체 비중 개선 필요성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단위: %(명)	
				χ^2	(df)
전체	15.4	84.6	100.0(292)	16.207 (3)**	
학계 전문가	6.0	94.0	100.0(67)		
공무원	24.7	75.3	100.0(97)		
현장 전문가	2.6	97.4	100.0(38)		
학부모	17.8	82.2	100.0(90)		

** $p < .01$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축소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50%'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2-24참조).

〈표 IV-2-24〉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축소 필요도

구분	단위: %(명)				
	전체의 70%로 축소	전체의 60%로 축소	전체의 50%로 축소	기타	전체
	전체	19.0	13.8	58.7	8.4
학계 전문가	12.7	7.9	66.7	12.8	100.0(63)
공무원	31.5	16.4	46.6	5.6	100.0(73)
현장 전문가	18.9	16.2	56.8	8.1	100.0(37)
학부모	12.2	14.9	64.9	8.2	100.0(74)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중일돌봄 (07:30 - 19:30)에 중점을 두고 있어 12시간이 기본이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8%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25참조).

〈표 IV-2-25〉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선 필요성 (무응답 있음)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단위: %(명)	
				χ^2	(df)
전체	31.8	67.8	100.0(292)	9.461 (6)	
학계 전문가	29.9	70.1	100.0(67)		
공무원	36.1	63.9	100.0(97)		
현장 전문가	21.1	76.3	100.0(38)		
학부모	33.3	66.7	100.0(90)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향후 5년간 1일 몇 시간으로 단축조정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2-26 참조).

〈표 IV-2-26〉 어린이집 운영시간 향후 5년간 필요도

단위: %(명)

구분	1일 11시간	1일 10시간	1일 9시간	1일 8시간	기타	전체
전체	9.1	20.7	12.6	38.9	18.7	100.0(198)
학계 전문가	4.3	19.1	14.9	44.7	17.0	100.0(47)
공무원	6.5	22.6	12.9	48.4	9.7	100.0(62)
현장 전문가	0.0	10.3	24.1	55.2	10.3	100.0(29)
학부모	20.0	25.0	5.0	16.7	33.3	100.0(60)

현재 시행 중인 시간제 일시보육으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육아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일시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 일시보육의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시간제 일시보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0%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27 참조).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현장 전문가의 89.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의 6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2-27 참조).

〈표 IV-2-27〉 시간제 일시보육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2 (df)
전체	26.0	74.0	100.0(292)	
학계 전문가	20.9	79.1	100.0(67)	
공무원	34.0	66.0	100.0(97)	9.021
현장 전문가	10.5	89.5	100.0(38)	(3)*
학부모	27.8	72.2	100.0(90)	

* $p < .05$

시간제 일시보육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8%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28 참조).

〈표 IV-2-28〉 시간제 일시보육 향후 5년간 필요도

			단위: %(명)
구분	지속적인 확대	기타	전체
전체	89.8	10.2	100.0(216)
학계 전문가	94.3	5.7	100.0(53)
공무원	92.2	7.8	100.0(64)
현장 전문가	70.6	29.4	100.0(34)
학부모	93.8	6.2	100.0(65)

보육서비스지원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향후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비교한 결과, '시설 미이용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 협동보육의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78.7%, '영유아가 아플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표 IV-2-29 참조).

〈표 IV-2-29〉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

		단위: % (명)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평균 점수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전체	2.7	11.6	25.0	42.8	17.5	100.0(292)		3.61	
	학계 전문가	3.0	13.4	28.4	38.8	16.4	100.0(67)		3.52	
	공무원	1.0	14.4	23.7	51.5	8.2	100.0(97)	34.771	3.52	
	현장 전문가	5.3	21.1	34.2	28.9	10.5	100.0(38)	(15)**	3.18	
	학부모	3.3	3.3	20.0	42.2	31.1	100.0(90)		3.94	
2시간 보육 어린이집 확대	전체	7.2	21.9	32.2	26.7	12.0	100.0(292)		3.14	
	학계 전문가	6.0	26.9	37.3	19.4	10.4	100.0(67)		3.01	
	공무원	4.1	19.6	37.1	34.0	5.2	100.0(97)	47.168	3.16	
	현장 전문가	5.3	47.4	28.9	13.2	5.3	100.0(38)	(12)***	2.66	
	학부모	12.2	10.0	24.4	30.0	23.3	100.0(90)		3.42	
시간연장보육의 확대	전체	1.7	6.5	21.6	44.9	25.3	100.0(292)		3.86	
	학계 전문가	4.5	7.5	20.9	41.8	25.4	100.0(67)		3.76	
	공무원	0.0	6.2	27.8	53.6	12.4	100.0(97)	31.262	3.72	
	현장 전문가	2.6	15.8	18.4	36.8	26.3	100.0(38)	(12)**	3.68	
	학부모	1.1	2.2	16.7	41.1	38.9	100.0(90)		4.14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	전체	3.8	15.4	29.5	36.6	14.7	100.0(292)		3.43	
	학계 전문가	4.5	17.9	34.3	31.3	11.9	100.0(67)		3.28	
	공무원	2.1	14.4	36.1	42.3	5.2	100.0(97)	43.859	3.34	
	현장 전문가	5.3	31.6	28.9	28.9	5.3	100.0(38)	(12)***	2.97	
	학부모	4.4	7.8	18.9	37.8	31.1	100.0(90)		3.83	

(표 IV-2-29 계속)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평균 점수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전체	1.7	4.8	20.2	44.9	28.4	100.0(292)		3.93
	학계 전문가	3.0	3.0	10.4	49.3	34.3	100.0(67)	26.878 (12)**	4.09
	공무원	0.0	10.3	28.9	43.3	17.5	100.0(97)		3.68
	현장 전문가	2.6	2.6	13.2	50.0	31.6	100.0(38)		4.05
	학부모	2.2	1.1	21.1	41.1	34.4	100.0(90)		4.04
전체	1.0	2.1	18.2	39.0	39.7	100.0(292)			4.14
시설 미이용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협동 보육의 활성화	학계 전문가	1.5	0.0	6.0	40.3	52.2	100.0(67)		4.42
	공무원	2.1	3.1	25.8	45.4	23.7	100.0(97)	33.641	3.86
	현장 전문가	0.0	2.6	10.5	52.6	34.2	100.0(38)	(12)**	4.18
	학부모	0.0	2.2	22.2	25.6	50.0	100.0(90)		4.23
가정방문 영아돌봄 서비스 확대	전체	1.0	3.4	21.9	42.8	30.8	100.0(292)		3.99
	학계 전문가	0.0	3.0	10.4	53.7	32.8	100.0(67)		4.16
	공무원	0.0	1.0	32.0	42.3	24.7	100.0(97)	41.869	3.91
	현장 전문가	0.0	13.2	10.5	55.3	21.1	100.0(38)	(12)***	3.84
	학부모	3.3	2.2	24.4	30.0	40.0	100.0(90)		4.01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전체	1.4	2.7	21.6	40.1	33.6	100.0(292)		4.02
	학계 전문가	0.0	1.5	11.9	41.8	41.8	100.0(67)		4.28
	공무원	1.0	3.1	36.1	39.2	20.6	100.0(97)	36.065	3.75
	현장 전문가	0.0	2.6	7.9	50.0	39.5	100.0(38)	(15)**	4.26
	학부모	3.3	3.3	18.9	35.6	38.9	100.0(90)		4.03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휴식보호서비스모형 제공	전체	1.7	7.5	27.7	39.0	24.0	100.0(292)		3.76
	학계 전문가	1.5	6.0	23.9	37.3	31.3	100.0(67)		3.91
	공무원	2.1	7.2	36.1	40.2	14.4	100.0(97)	13.845	3.58
	현장 전문가	2.6	13.2	23.7	42.1	18.4	100.0(38)	(12)	3.61
	학부모	1.1	6.7	23.3	37.8	31.1	100.0(90)		3.91
영유아가 아플 경우 이용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	전체	0.7	3.4	17.5	29.5	49.0	100.0(292)		4.23
	학계 전문가	0.0	3.0	11.9	19.4	65.7	100.0(67)		4.48
	공무원	2.1	7.2	32.0	39.2	19.6	100.0(97)	60.945	3.67
	현장 전문가	0.0	0.0	7.9	34.2	57.9	100.0(38)	(12)**	4.50
	학부모	0.0	1.1	10.0	24.4	64.4	100.0(90)		4.52
농산어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지원센터 설치	전체	1.0	4.1	20.9	38.0	35.6	100.0(292)		4.03
	학계 전문가	0.0	1.5	9.0	47.8	40.3	100.0(67)		4.29
	공무원	3.1	7.2	36.1	40.2	13.4	100.0(97)	60.775	3.54
	현장 전문가	0.0	2.6	10.5	47.4	39.5	100.0(38)	(15)***	4.24
	학부모	0.0	3.3	17.8	24.4	54.4	100.0(90)		4.30
어린이집운영시간에 대한 법률개정	전체	1.4	3.1	20.9	34.9	39.7	100.0(292)		4.09
	학계 전문가	0.0	7.5	16.4	34.3	41.8	100.0(67)		4.10
	공무원	2.1	4.1	27.8	40.2	25.8	100.0(97)	23.824	3.84
	현장 전문가	0.0	0.0	15.8	28.9	55.3	100.0(38)	(12)*	4.39
	학부모	2.2	0.0	18.9	32.2	46.7	100.0(90)		4.21

(표 IV-2-29 계속)

항목	구분	전혀	거의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X ² (df)	평균 점수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어린이집 이용 부모 사전 이용자 교육 활성화	전체	0.0	3.1	20.9	33.6	42.5	100.0(292)		4.15
	학계 전문가	0.0	3.0	13.4	29.9	53.7	100.0(67)		4.34
	공무원	0.0	4.1	28.9	43.3	23.7	100.0(97)	24.885	3.87
	현장 전문가	0.0	0.0	13.2	26.3	60.5	100.0(38)	(9)**	4.47
	학부모	0.0	3.3	21.1	28.9	46.7	100.0(90)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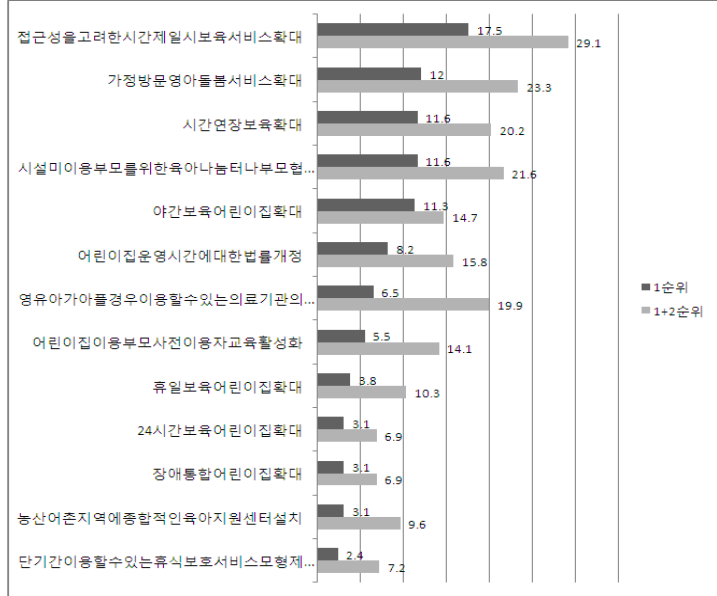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제시된 정책 중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표 IV-2-30 참조). 보육서비스 중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순으로 살펴보면,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확대'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정방문 영아돌봄서비스 확대'가 12.0%로 나타났다(표 IV-2-30 참조).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확대'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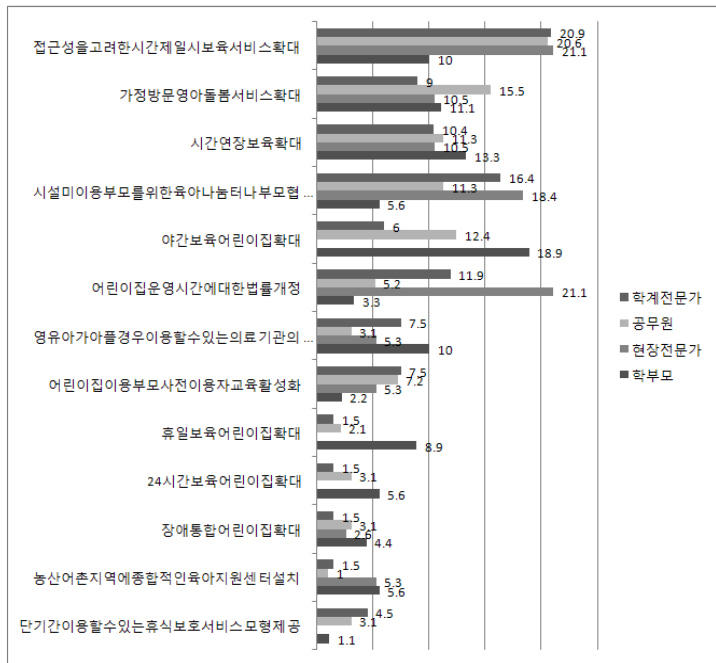
〈표 IV-2-30〉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구분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계
전체	100.0(67)	100.0(97)	100.0(38)	100.0(90)	100.0(292)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20.9	20.6	21.1	10.0	17.5
가정방문 영아돌봄서비스 확대	9.0	15.5	10.5	11.1	12.0
시간연장보육의 확대	10.4	11.3	10.5	13.3	11.6
시설 미이용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협동보육의 활성화	16.4	11.3	18.4	5.6	11.6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6.0	12.4	0.0	18.9	11.3
어린이집운영시간에 대한 법률개정	11.9	5.2	21.1	3.3	8.2
영유아가이플 경우 이용할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	7.5	3.1	5.3	10.0	6.5
어린이집 이용 부모 사전 이용자 교육 활성화	7.5	7.2	5.3	2.2	5.5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	1.5	2.1	0.0	8.9	3.8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확대	1.5	3.1	0.0	5.6	3.1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1.5	3.1	2.6	4.4	3.1
농산어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지원센터 설치	1.5	1.0	5.3	5.6	3.1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휴식보호서비스모형 제공	4.5	3.1	0.0	1.1	2.4



[그림 IV-2-5]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 정책 우선순위



[그림 IV-2-6] 집단별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 정책 우선 1순위

라. 운영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현행체제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은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 만 4세에서 만 5세는 1:20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필요성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단위: %(명)	
					χ^2	(df)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만1세미만(1:3)	58.2	40.4	1.4	100.0(292)	29.427 (6) ^{***}	
학계 전문가	53.7	46.3	0.0	100.0(67)		
공무원	67.0	32.0	1.0	100.0(97)		
현장 전문가	28.9	63.2	7.9	100.0(38)		
학부모	64.4	35.6	0.0	100.0(90)		
만1세(1:5)	55.5	42.5	2.1	100.0(292)	29.405 (6) ^{***}	
학계 전문가	52.2	46.3	1.5	100.0(67)		
공무원	69.1	29.9	1.0	100.0(97)		
현장 전문가	31.6	57.9	10.5	100.0(38)		
학부모	53.3	46.7	0.0	100.0(90)		
만2세(1:7)	54.8	43.2	2.1	100.0(292)	29.207 (6) ^{***}	
학계 전문가	49.3	49.3	1.5	100.0(67)		
공무원	70.1	28.9	1.0	100.0(97)		
현장 전문가	42.1	47.4	10.5	100.0(38)		
학부모	47.8	52.2	0.0	100.0(90)		
만3세(1:15)	38.0	60.3	1.7	100.0(292)	43.057 (6) ^{***}	
학계 전문가	38.8	59.7	1.5	100.0(67)		
공무원	55.7	44.3	0.0	100.0(97)		
현장 전문가	26.3	63.2	10.5	100.0(38)		
학부모	23.3	76.7	0.0	100.0(90)		
만4~5세(1:20)	36.3	62.0	1.7	100.0(292)	42.745 (6) ^{***}	
학계 전문가	41.8	56.7	1.5	100.0(67)		
공무원	51.5	48.5	0.0	100.0(97)		
현장 전문가	26.3	63.2	10.5	100.0(38)		
학부모	20.0	80.0	0.0	100.0(90)		

*** $p < .001$

그 결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 1세 미만에서 58.2%, 만 1세에서 55.5%, 만 2세에 54.8%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

났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 3세에서 60.3%, 만 4~5세에서 62.0%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31참조).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 공무원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만 1세미만과 만 1세에는 현장 전문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만 2세, 만 3세, 만 4~5세에는 학부모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32〉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요구

연령	교사 대 아동비율				단위: %(명)
	(1:2)	(1:1)	기타	계	
만 1세미만(1:3)	(1:2)	(1:1)	기타		
전체	84.7	13.6	1.6		100.0(118)
학계 전문가	83.9	16.1	-		100.0(31)
공무원	90.3	9.7	-		100.0(31)
현장 전문가	83.3	12.5	4.2		100.0(24)
학부모	81.3	15.6	3.1		100.0(32)
만 1세(1:5)	(1:4)	(1:3)	(1:2)		
전체	29.0	54.8	16.1		100.0(124)
학계 전문가	25.8	54.8	19.4		100.0(31)
공무원	44.8	51.7	3.4		100.0(29)
현장 전문가	36.4	54.5	9.1		100.0(22)
학부모	16.7	57.1	26.2		100.0(42)
만 2세(1:7)	(1:6)	(1:5)	(1:4)	기타	
전체	19.0	54.0	26.2	0.8	100.0(126)
학계 전문가	21.2	51.5	27.3	-	100.0(33)
공무원	28.6	50.0	21.4	-	100.0(28)
현장 전문가	27.8	55.6	16.7	-	100.0(18)
학부모	8.5	57.4	31.9	2.1	100.0(47)
만 3세(1:15)	(1:13)	(1:11)	(1:9)	기타	
전체	12.5	33.0	52.3	2.3	100.0(176)
학계 전문가	22.5	40.0	37.5	-	100.0(40)
공무원	11.6	32.6	55.8	-	100.0(43)
현장 전문가	12.5	54.2	33.3	-	100.0(24)
학부모	7.2	21.7	65.2	5.7	100.0(69)
만 4~5세(1:20)	(1:18)	(1:16)	(1:14)	기타	
전체	10.5	24.3	60.8	4.6	100.0(181)
학계 전문가	15.8	36.8	47.4	-	100.0(38)
공무원	17.0	21.3	61.7	-	100.0(47)
현장 전문가	8.3	37.5	54.2	-	100.0(24)
학부모	4.2	15.3	69.4	11.2	100.0(72)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62.7%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33 참조). 현장 전문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6.8%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학부모의 경우 43.3%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2-33〉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인가제한권 개선 필요성

구분				단위: %(명)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chi^2(df)$
전체	36.6	62.7	0.7	100.0(292)	45.102 (6) ^{***}
학계	14.9	85.1	0.0	100.0(67)	
공무원	43.3	55.7	1.0	100.0(97)	
현장 전문가	10.5	86.8	2.6	100.0(38)	
학부모	56.7	43.3	0.0	100.0(90)	

^{***} $p < .001$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인가제한권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인가 설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한지 또는 어린이집 인가설비기준의 강화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인가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73.2%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34 참조).

〈표 IV-2-34〉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인가제한권 개선안 의견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인가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함	어린이집 인가설비기준 강화가 필요함	기타	계	
전체	73.2	17.5	9.3	100.0(183)	
학계	82.5	14.0	3.5	100.0(57)	
공무원	77.8	9.3	13.0	100.0(54)	
현장 전문가	69.7	21.2	9.0	100.0(33)	
학부모	56.4	30.8	12.9	100.0(39)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정책의 필요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양

한 개선정책에 대한 향후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비교한 결과,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와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의 질적관리 지원'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2-35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78.7%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20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86.3%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9점이었다. '현장 실태조사의 수시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80.5%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26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의 질적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49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5.5%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66점이었다. 특히 현장 전문가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아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9%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4%로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2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보육과정과 유아보육과정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5%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6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개보수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6%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00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5%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23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은 79.4%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5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조 교사의 추가배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9%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2점이었다. 특히 현장 전문가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1%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47점이었다. 특히 현장 전문가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35〉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필요성

단위: % (명)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χ^2 (df)	평균 점수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 지표 개발	전체	0.0	2.4	18.8	34.9	43.8	100.0(292)	27.692 (9)**	4.20
	학계	0.0	0.0	14.9	37.3	47.8	100.0(67)		4.33
	공무원	0.0	5.2	25.8	44.3	24.7	100.0(97)		3.89
	현장 전문가	0.0	2.6	13.2	31.6	52.6	100.0(38)		4.34
	학부모	0.0	1.1	16.7	24.4	57.8	100.0(90)		4.39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예: 1인 1개소, 부채비율제한)	전체	0.7	1.7	11.3	30.1	56.2	100.0(292)	15.933 (12)	4.39
	학계	0.0	0.0	7.5	23.9	68.7	100.0(67)		4.61
	공무원	1.0	3.1	13.4	35.1	47.4	100.0(97)		4.25
	현장 전문가	2.6	0.0	7.9	21.1	68.4	100.0(38)		4.53
	학부모	0.0	2.2	13.3	33.3	51.1	100.0(90)		4.33
현장 실태조사의 수시 실시	전체	0.0	1.4	18.2	33.6	46.9	100.0(292)	31.602 (9)***	4.26
	학계	0.0	3.0	16.4	28.4	52.2	100.0(67)		4.30
	공무원	0.0	2.1	28.9	40.2	28.9	100.0(97)		3.96
	현장 전문가	0.0	0.0	13.2	44.7	42.1	100.0(38)		4.29
	학부모	0.0	0.0	10.0	25.6	64.4	100.0(90)		4.54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의 질적 관리 지원	전체	0.0	0.3	9.2	31.8	58.6	100.0(292)	30.967 (9)***	4.49
	학계	0.0	1.5	3.0	23.9	71.6	100.0(67)		4.66
	공무원	0.0	0.0	14.4	47.4	38.1	100.0(97)		4.24
	현장 전문가	0.0	0.0	7.9	21.1	71.1	100.0(38)		4.63
	학부모	0.0	0.0	8.9	25.6	65.6	100.0(90)		4.57
보육교직원의 인성 교육 강화	전체	0.0	0.3	4.1	24.3	71.2	100.0(292)	22.125 (9)**	4.66
	학계	0.0	0.0	3.0	20.9	76.1	100.0(67)		4.73
	공무원	0.0	0.0	7.2	37.1	55.7	100.0(97)		4.48
	현장 전문가	0.0	0.0	0.0	21.1	78.9	100.0(38)		4.79
	학부모	0.0	1.1	3.3	14.4	81.1	100.0(90)		4.76

(표 IV-2-35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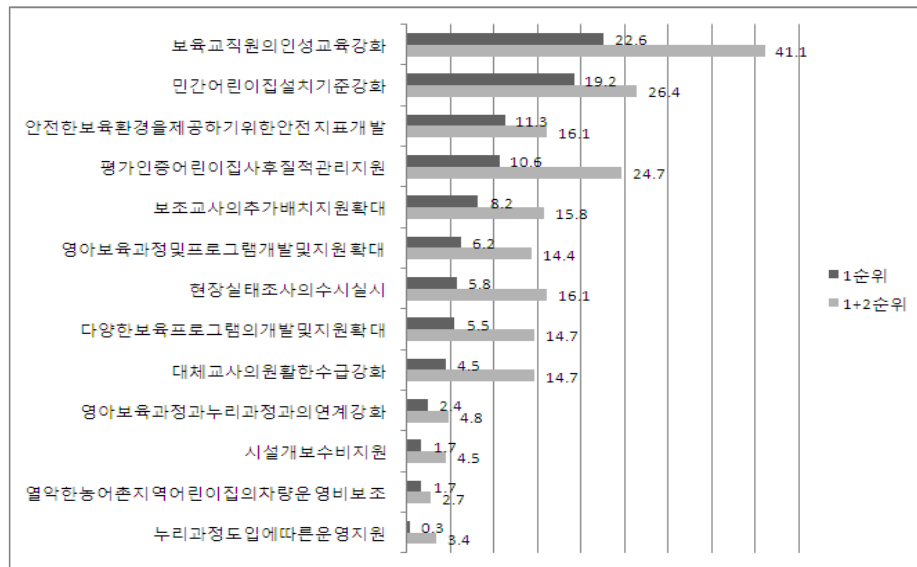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평균 점수
영아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전체	0.7	1.4	12.0	36.6	49.3	100.0(292)		4.33
	학계	0.0	1.5	6.0	32.8	59.7	100.0(67)	34.885 (12)***	4.51
	공무원	2.1	2.1	19.6	48.5	27.8	100.0(97)		3.98
	현장 전문가	0.0	0.0	15.8	34.2	50.0	100.0(38)		4.34
	학부모	0.0	1.1	6.7	27.8	64.4	100.0(90)		4.56
전체	1.0	2.1	19.5	39.0	38.4	100.0(292)	4.12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운영 지원	학계	1.5	6.0	13.4	41.8	37.3	100.0(67)	49.662 (12)***	4.07
	공무원	2.1	1.0	28.9	50.5	17.5	100.0(97)		3.80
	현장 전문가	0.0	2.6	28.9	21.1	47.4	100.0(38)		4.13
	학부모	0.0	0.0	10.0	32.2	57.8	100.0(90)		4.48
	전체	0.7	2.4	15.4	43.5	38.0	100.0(292)		4.16
영아보육과정과 유아보육 과정과의 연계 강화	학계	0.0	4.5	10.4	43.3	41.8	100.0(67)	36.389 (12)***	4.22
	공무원	1.0	2.1	23.7	54.6	18.6	100.0(97)		3.88
	현장 전문가	0.0	2.6	18.4	44.7	34.2	100.0(38)		4.11
	학부모	1.1	1.1	8.9	31.1	57.8	100.0(90)		4.43
	전체	0.0	1.0	26.4	44.5	28.1	100.0(292)		4.00
시설개보수비 지원 강화	학계	0.0	1.5	20.9	49.3	28.4	100.0(67)	49.866 (9)***	4.04
	공무원	0.0	2.1	43.3	45.4	9.3	100.0(97)		3.62
	현장 전문가	0.0	0.0	21.1	55.3	23.7	100.0(38)		4.03
	학부모	0.0	0.0	14.4	35.6	50.0	100.0(90)		4.36
	전체	0.7	1.0	14.7	41.4	42.1	100.0(292)		4.23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확대	학계	0.0	1.5	10.4	37.3	50.7	100.0(67)	36.926 (12)***	4.37
	공무원	1.0	2.1	20.6	55.7	20.6	100.0(97)		3.93
	현장 전문가	2.6	0.0	15.8	42.1	39.5	100.0(38)		4.16
	학부모	0.0	0.0	11.1	28.9	60.0	100.0(90)		4.49
	전체	0.0	2.4	18.2	41.4	38.0	100.0(292)		4.15
열악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보조	학계	0.0	3.0	11.9	44.8	40.3	100.0(67)	47.580 (9)***	4.22
	공무원	0.0	4.1	33.0	42.3	20.6	100.0(97)		3.79
	현장 전문가	0.0	0.0	7.9	63.2	28.9	100.0(38)		4.21
	학부모	0.0	1.1	11.1	28.9	58.9	100.0(90)		4.46
	전체	0.7	1.0	12.3	38.0	47.9	100.0(292)		4.32
보조교사의 추가배치 지원확대	학계	0.0	1.5	1.5	35.8	61.2	100.0(67)	61.385 (12)***	4.57
	공무원	1.0	2.1	26.8	49.5	20.6	100.0(97)		3.87
	현장 전문가	0.0	0.0	0.0	26.3	73.7	100.0(38)		4.74
	학부모	1.1	0.0	10.0	32.2	56.7	100.0(90)		4.43
	전체	0.0	0.3	9.2	32.9	57.2	100.0(292)		4.47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강화	학계	0.0	1.5	3.0	34.3	61.2	100.0(67)	34.806 (12)**	4.55
	공무원	0.0	0.0	17.5	41.2	40.2	100.0(97)		4.23
	현장 전문가	0.0	0.0	0.0	15.8	84.2	100.0(38)		4.84
	학부모	0.0	0.0	8.9	30.0	61.1	100.0(90)		4.52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제시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표 IV-2-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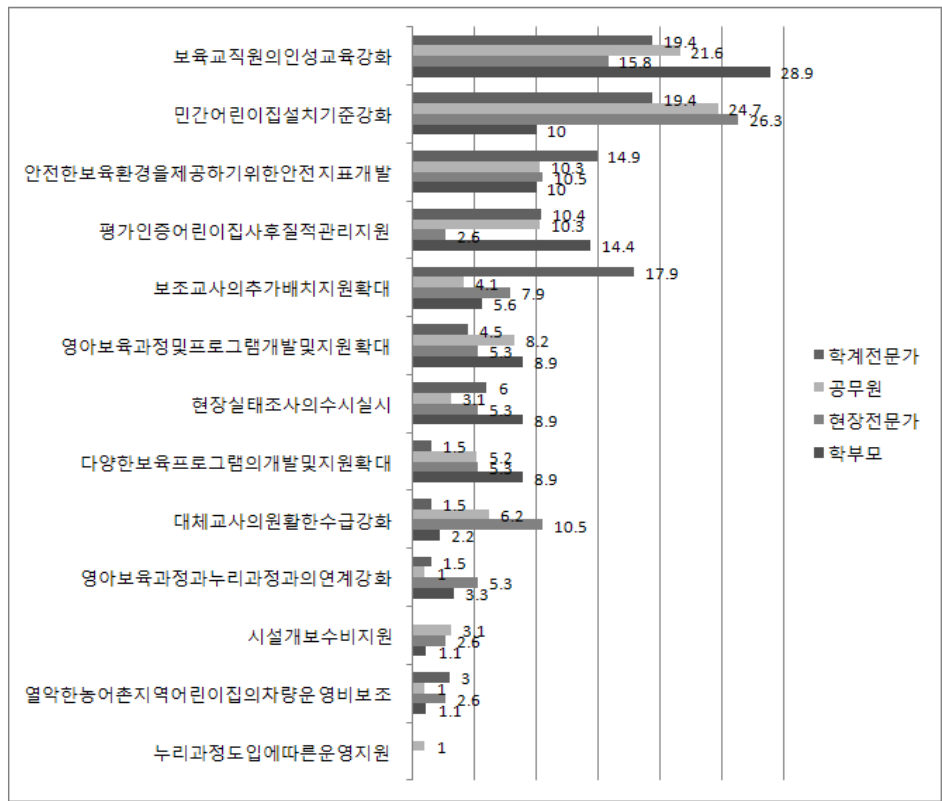
〈표 IV-2-36〉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우선순위(1순위)

구분	단위: %(명)				
	전체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	22.6	19.4	21.6	15.8	28.9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예: 1인 1개소, 부채비율제한)	19.2	19.4	24.7	26.3	10.0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지표 개발	11.3	14.9	10.3	10.5	10.0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의 질적 관리 지원	10.6	10.4	10.3	2.6	14.4
보조교사의 추가배치 지원 확대	8.2	17.9	4.1	7.9	5.6
영아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6.2	4.5	8.2	5.3	5.6
현장 실태조사의 수시 실시	5.8	6.0	3.1	5.3	8.9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확대	5.5	1.5	5.2	5.3	8.9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 강화	4.5	1.5	6.2	10.5	2.2
영아보육과정과 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	2.4	1.5	1.0	5.3	3.3
시설개보수비 지원 강화	1.7	0.0	3.1	2.6	1.1
열악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보조	1.7	3.0	1.0	2.6	1.1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운영 지원	0.3	0.0	1.0	0.0	0.0



[그림 IV-2-7]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우선 순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순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가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가 19.2%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7 참조).



[그림 IV-2-8] 어린이집 운영 개선정책 우선 1순위

마. 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지자체별로 차등화 되어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37).

〈표 IV-2-37〉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개선 필요성

구분	단위: %(명)				$\chi^2(df)$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전체	16.8	82.9	0.3	100.0(292)	24.185 (6) ^{***}
학계 전문가	9.0	91.0	0.0	100.0(67)	
공무원	26.8	73.2	0.0	100.0(97)	
현장 전문가	0.0	97.4	2.6	100.0(38)	
학부모	18.9	81.1	0.0	100.0(90)	

*** $p < .001$

지자체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따른 차등없이 일원화되어야 하는지 또는 기본 처우개선비는 일원화하고 기타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야 하는지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 따른 차등 없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0%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38 참조).

〈표 IV-2-38〉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개선안 의견

구분	단위: %(명)			
	처우개선비의 일원화	기본처우개선비는 일원화, 기타 처우개선비는 지자체별로 차등화	기타	계
전체	57.0	42.1	0.8	100.0(242)
학계 전문가	54.1	45.9	0.0	100.0(61)
공무원	70.4	29.6	0.0	100.0(71)
현장 전문가	51.4	45.9	2.7	100.0(37)
학부모	49.3	49.3	1.4	100.0(73)

보육교사의 보수가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은 현 체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3%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39).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7%와 94.7%이었고 공무원과 학부모 집단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와 61.1%이었다.

〈표 IV-2-39〉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chi^2(df)$
전체	25.3	74.3	0.3	100.0(292)	50.048 (6) ^{***}
학계 전문가	3.0	97.0	0.0	100.0(67)	
공무원	37.1	62.9	0.0	100.0(97)	
현장 전문가	2.6	94.7	2.6	100.0(38)	
학부모	38.9	61.1	0.0	100.0(90)	

*** $p < .001$

보육교사의 보수가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은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호봉체계를 개편해야 하는지, 보수에 학력에 따른 차등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보수에 경력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호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호봉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 '보육교사의 보수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나타났다(표 IV-2-40 참조)

〈표 IV-2-40〉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호봉체계의 개편	학력에 따른 차등 반영	경력에 따른 차등반영	기타	계
전체	43.3	33.2	26.3	4.6	100.0(217)
학계 전문가	32.3	50.8	15.4	10.7	100.0(65)
공무원	37.7	23.0	47.5	0.0	100.0(61)
현장 전문가	55.6	47.2	8.3	2.8	100.0(36)
학부모	54.5	14.5	27.3	3.6	100.0(55)

〈표 IV-2-41〉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chi^2(df)$
전체	22.9	76.7	0.3	100.0(292)	19.881 (6) ^{**}
학계 전문가	14.9	85.1	0.0	100.0(67)	
공무원	28.9	71.1	0.0	100.0(97)	
현장 전문가	5.3	92.1	2.6	100.0(38)	
학부모	30.0	70.0	0.0	100.0(90)	

** $p < .01$

보육교사의 보수가 시설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있는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표 IV-2-41 참조).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보수가 시설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있는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육교사의 보수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차등이 철폐되어야 하는지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에서 반드시 급여체계가 명시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보수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차등은 철폐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55.8%로 '보육교사의 보수에서 반드시 급여체계가 명시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인 42.0%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42 참조).

〈표 IV-2-42〉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 개선안 의견

구분	단위: %(명)			
	시설유형에 따른 차등 철폐	시설유형별 급여체계 명시	기타	계
전체	55.8	42.0	2.2	100.0(224)
학계 전문가	61.4	36.8	1.8	100.0(57)
공무원	52.2	43.5	4.3	100.0(69)
현장 전문가	65.7	31.4	2.9	100.0(35)
학부모	49.2	50.8	0.0	100.0(63)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2013년 기준으로 51학점인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67.8%로 나타났다(표 IV-2-43 참조). 현장 전문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3〉 보육교사 양성과목 교과목 개선 필요성

구분	단위: %(명)				$\chi^2(df)$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전체	31.8	67.8	0.3	100.0(292)	27.682 (6) ^{***}
학계 전문가	23.9	76.1	0.0	100.0(67)	
공무원	36.1	63.9	0.0	100.0(97)	
현장 전문가	5.3	92.1	2.6	100.0(38)	
학부모	44.4	55.6	0.0	100.0(90)	

*** $p < .001$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과목에 대한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수교과목을 늘려야 하는지, 보육실습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지, 학과제로 자격부여방식을 전환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육실습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0%, 과제로 자격부여방식을 전환해야한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났다(표 IV-2-44 참조).

〈표 IV-2-44〉 보육교사 양성과목 교과목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보육실습 관리체계 강화	학과제로 자격부여 방식 전환	이수과목 수 늘림	기타	계
전체	46.0	35.4	16.7	4.0	100.0(198)
학계 전문가	29.4	51.0	17.6	8.0	100.0(51)
공무원	51.6	29.0	19.4	1.6	100.0(62)
현장 전문가	28.6	51.4	11.4	8.5	100.0(35)
학부모	68.0	16.0	16.0	0.0	100.0(50)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2급 보육교사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혹은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급 보육교사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1급 보육교사 자격은 이후 경력에 따라 부여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표 IV-2-45 참조).

〈표 IV-2-45〉 보육교사 자격요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chi^2(df)$
전체	27.1	72.6	0.3	100.0(292)	43.167 (6) ^{***}
학계 전문가	9.0	91.0	0.0	100.0(67)	
공무원	34.0	66.0	0.0	100.0(97)	
현장 전문가	2.6	94.7	2.6	100.0(38)	
학부모	43.3	56.7	0.0	100.0(90)	

*** $p < .001$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6%로 나타났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있어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91%와 94.7%로 나타났고 공무원과 학부모 집단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66.0%와 56.7%로 나타났다(표 IV-2-45 참조).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3급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하면서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3급 보육교사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3급 보육교사 자격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3급 교사 자격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2-46 참조).

〈표 IV-2-46〉 보육교사 자격요건 개선안 의견

구분	단위: %(명)				계
	3급 보육교사 자격의 중장기적 폐지	3급 보육교사 자격유지· 자격요건의 상향조정	3급 보육교사를 가정 어린이집이나 보조교사로 활용	기타	
전체	50.5	32.1	16.5	2.5	100.0(212)
학계 전문가	68.9	18.0	13.1	3.2	100.0(61)
공무원	42.2	37.5	18.8	1.6	100.0(64)
현장 전문가	47.2	36.1	13.9	5.6	100.0(36)
학부모	41.2	39.2	19.6	0.0	100.0(51)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향후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강화'와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2-47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41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2.5%와 9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55점이었다. 특히 학계 전문가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육교사 2교대 체제 도입 고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4.9%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7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5.5%와 9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행정사무원이나 청소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28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3%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4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어린이집 간 자체 장학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9%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93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지원과정에 인성검사, 양성과정에 인성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7%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45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3.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63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7〉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구분	전혀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평균 점수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	전체	0.3	1.7	9.9	32.5	55.1	100.0(292)	55.996 (15)***	4.41
	학계	0.0	4.5	3.0	17.9	74.6	100.0(67)		4.63
	공무원	0.0	2.1	15.5	44.3	38.1	100.0(97)		4.19
	현장	0.0	0.0	0.0	13.2	84.2	100.0(38)		4.86
	학부모	1.1	0.0	13.3	38.9	46.7	100.0(90)		4.30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	전체	0.0	0.3	6.8	29.8	62.7	100.0(292)	55.924 (12)***	4.55
	학계	0.0	0.0	0.0	11.9	88.1	100.0(67)		4.88
	공무원	0.0	0.0	10.3	43.3	46.4	100.0(97)		4.36
	현장	0.0	0.0	0.0	10.5	86.8	100.0(38)		4.89
	학부모	0.0	1.1	11.1	36.7	51.1	100.0(90)		4.38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	전체	0.3	1.7	9.9	32.5	55.1	100.0(292)	55.996 (15)***	4.41
	학계	0.0	4.5	3.0	17.9	74.6	100.0(67)		4.63
	공무원	0.0	2.1	15.5	44.3	38.1	100.0(97)		4.19
	현장	0.0	0.0	0.0	13.2	84.2	100.0(38)		4.86
	학부모	1.1	0.0	13.3	38.9	46.7	100.0(90)		4.30

(표 IV-2-47 계속)

구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평균 점수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	전체	0.0	0.3	6.8	29.8	62.7	100.0(292)	55.924 (12)***	4.55
	학계	0.0	0.0	0.0	11.9	88.1	100.0(67)		4.88
	공무원	0.0	0.0	10.3	43.3	46.4	100.0(97)		4.36
	현장	0.0	0.0	0.0	10.5	86.8	100.0(38)		4.89
	학부모	0.0	1.1	11.1	36.7	51.1	100.0(90)		4.38
보육교사 2교대 체제 도입 고려(8시간 근무 준수)	전체	1.0	1.7	12.0	29.8	55.1	100.0(292)	49.842 (15)***	4.37
	학계	0.0	0.0	4.5	19.4	76.1	100.0(67)		4.72
	공무원	2.1	4.1	15.5	37.1	41.2	100.0(97)		4.11
	현장	0.0	0.0	0.0	15.8	81.6	100.0(38)		4.84
	학부모	1.1	1.1	18.9	35.6	43.3	100.0(90)		4.19
보육교사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행정 사무원이나 청소 도우미 지원	전체	1.0	1.7	14.0	34.2	48.6	100.0(292)	59.242 (15)***	4.28
	학계	0.0	0.0	3.0	26.9	70.1	100.0(67)		4.67
	공무원	2.1	3.1	22.7	48.5	23.7	100.0(97)		3.89
	현장	0.0	2.6	5.3	15.8	73.7	100.0(38)		4.65
	학부모	1.1	1.1	16.7	32.2	48.9	100.0(90)		4.27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강화	전체	0.3	0.0	12.0	40.4	46.9	100.0(292)	32.195 (12)**	4.34
	학계	0.0	0.0	3.0	34.3	62.7	100.0(67)		4.60
	공무원	0.0	0.0	18.6	48.5	33.0	100.0(97)		4.14
	현장	0.0	0.0	5.3	28.9	63.2	100.0(38)		4.59
	학부모	1.1	0.0	14.4	41.1	43.3	100.0(90)		4.26
지역어린이집 간 자체장학 지원 확대	전체	1.0	3.8	25.0	41.1	28.8	100.0(292)	53.416 (15)***	3.93
	학계	0.0	1.5	13.4	46.3	38.8	100.0(67)		4.22
	공무원	3.1	8.2	37.1	39.2	12.4	100.0(97)		3.49
	현장	0.0	5.3	5.3	47.4	39.5	100.0(38)		4.24
	학부모	0.0	0.0	28.9	36.7	34.4	100.0(90)		4.06
보육교사 지원과정에 인성검사 양성과정에 인성교육 추가	전체	0.0	0.7	9.2	33.9	55.8	100.0(292)	21.427 (12)*	4.45
	학계	0.0	1.5	13.4	31.3	53.7	100.0(67)		4.37
	공무원	0.0	1.0	8.2	43.3	47.4	100.0(97)		4.37
	현장	0.0	0.0	0.0	23.7	73.7	100.0(38)		4.76
	학부모	0.0	0.0	11.1	30.0	58.9	100.0(90)		4.48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위생 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 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전체	0.3	0.7	5.1	23.6	69.9	100.0(292)	33.428 (15)**	4.63
	학계	0.0	0.0	1.5	11.9	86.6	100.0(67)		4.85
	공무원	0.0	1.0	5.2	36.1	57.7	100.0(97)		4.51
	현장	2.6	0.0	5.3	23.7	65.8	100.0(38)		4.54
	학부모	0.0	1.1	7.8	18.9	72.2	100.0(90)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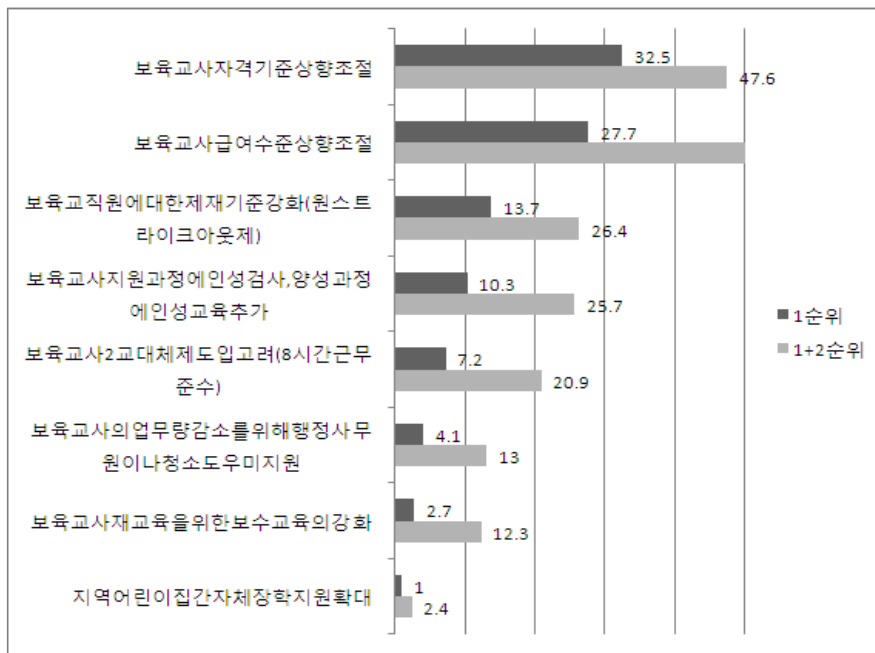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표 IV-2-48 참조)

〈표 IV-2-48〉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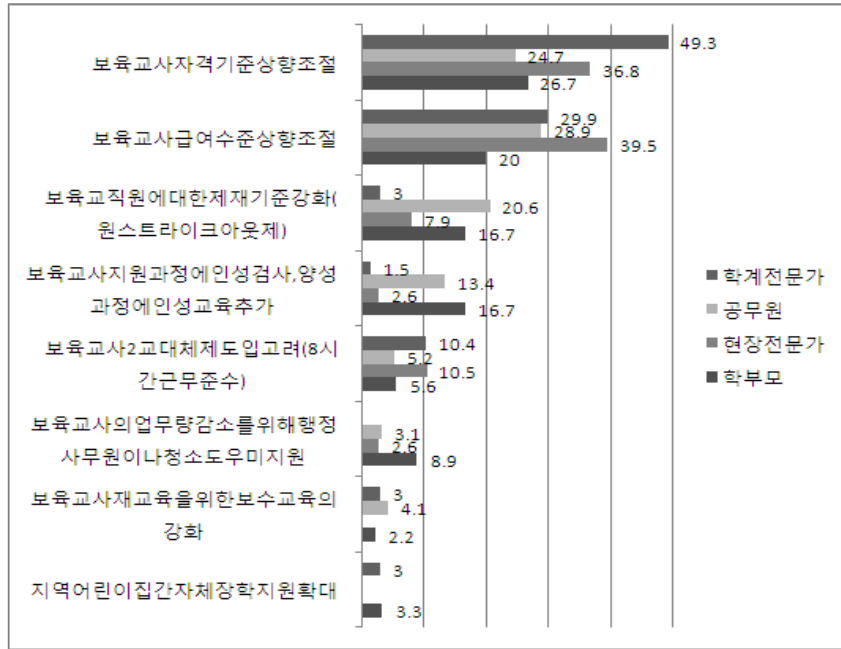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	32.5	49.3	24.7	36.8	26.7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 조절	27.7	29.9	28.9	39.5	20.0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3.7	3.0	20.6	7.9	16.7
보육교사 지원과정에 인성검사, 양성과정에 인성교육 추가	10.3	1.5	13.4	2.6	16.7
보육교사 2교대 체제 도입 고려(8시간 근무 준수)	7.2	10.4	5.2	10.5	5.6
보육교사의 업무량 감소 위해 행정사무원이나 청소도우미 지원	4.1	0.0	3.1	2.6	8.9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	2.7	3.0	4.1	0.0	2.2
지역어린이집 간 자체장학 지원 확대	1.0	0.0	0.0	0.0	3.3



[그림 IV-2-9]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정책 우선순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된 순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32.5%가 '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로 응답하였고 전체의 27.7%가 '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과 '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이 각각 47.6%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9 참조)



[그림 IV-2-10]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정책 우선 1순위

바. 사업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현 보육사업 지원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육사업지원체계 및 부모참여에 관한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42.5%,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56.8%이었다.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이나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로 나타났다. 학계 및 현장 전문

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7%와 7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55.8%,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로 나타났다(표 IV-2-49 참조).

〈표 IV-2-49〉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관련 개선 필요성

항목	구분	단위: %(명)				계	χ²(df)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	전체	42.5	56.8	0.7	100.0(292)	10.040 (6)	
	학계	41.8	58.2	0.0	100.0(67)		
	공무원	48.5	50.5	1.0	100.0(97)		
	현장	23.7	73.7	2.6	100.0(38)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 '지자체별부모 모니터랑단' 등이 구성되어 있음	전체	46.2	53.1	0.7	100.0(292)	20.061 (6)**	
	학계	40.3	59.7	0.0	100.0(67)		
	공무원	53.6	45.4	1.0	100.0(97)		
	현장	18.4	78.9	2.6	100.0(38)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전체	55.8	43.5	0.7	100.0(292)	6.980 (6)	
	학계	55.2	44.8	0.0	100.0(67)		
	공무원	53.6	45.4	1.0	100.0(97)		
	현장	44.7	52.6	2.6	100.0(38)		
	학부모	63.3	36.7	0.0	100.0(90)		

*** p < .01

〈표 IV-2-50〉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개선안 의견

항목	구분	단위: %(명)				계
		축소	강화	기타	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	전체	25.9	70.5	3.6	100.0(166)	
	학계	30.8	66.7	2.6	100.0(39)	
	공무원	46.9	49.0	4.1	100.0(49)	
	현장 전문가	14.3	78.6	7.1	100.0(28)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랑단' 등이 구성되어 있음	학부모	8.0	90.0	2.0	100.0(50)	
	전체	10.3	86.5	3.9	100.0(155)	
	학계	12.5	80.0	10.0	100.0(40)	
	공무원	9.1	88.6	2.3	100.0(44)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현장 전문가	20.0	76.7	3.3	100.0(30)	
	학부모	2.4	97.6	0.0	100.0(41)	
	전체	9.4	85.0	6.3	100.0(127)	
	학계	6.7	83.3	13.3	100.0(30)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공무원	13.6	84.1	2.3	100.0(44)	
	현장 전문가	10.0	80.0	10.0	100.0(20)	
	학부모	6.1	90.9	3.0	100.0(33)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에 관한 현 체계를 개선한다면 축소해야 하는지 또는 강화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세 항목 모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5-50 참조).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개선을 위하여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86.3%가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 강화'와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각각 4.33점과 4.36점이었다(표 IV-2-51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5.7%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7점이었다. 특히 현장 전문가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6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1%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08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어린이집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98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9.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 의견 수렴창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3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5%와 8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정책에 대한 부모대상 캠페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8%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92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서포터즈, 부모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5.7%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86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운영위원회에 참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78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등하원 여부 알림서비스 전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0%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03점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하차하는 지정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8.3%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74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8.4%와 6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에서 부모양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7%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7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교육참여 의무화 방안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2%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3.98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2.2%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21점이었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1〉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관련 향후 지원 필요성

항목	구분	단위: % (명)					계	X ² (df)	평균점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	전체	1.7	4.1	18.2	27.4	48.3	100.0(292)		4.17
	학계전문가	1.5	3.0	14.9	20.9	59.7	100.0(67)	49.452	4.34
	공무원	2.1	4.1	27.8	36.1	28.9	100.0(97)	(15)***	3.86
	현장전문가	0.0	0.0	0.0	10.5	89.5	100.0(38)		4.89
	학부모	2.2	6.7	17.8	30.0	43.3	100.0(90)		4.06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체	0.0	1.4	12.0	36.0	50.3	100.0(292)		4.36
	학계전문가	0.0	0.0	9.0	29.9	61.2	100.0(67)	28.300	4.52
	공무원	0.0	2.1	17.5	47.4	32.0	100.0(97)	(12)**	4.10
	현장전문가	0.0	0.0	2.6	23.7	73.7	100.0(38)		4.71
	학부모	0.0	2.2	12.2	33.3	52.2	100.0(90)		4.36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 강화	전체	0.0	1.4	12.0	38.7	47.6	100.0(292)		4.33
	학계전문가	0.0	1.5	9.0	29.9	59.7	100.0(67)	22.331	4.48
	공무원	0.0	2.1	13.4	51.5	32.0	100.0(97)	(12)*	4.15
	현장전문가	0.0	0.0	5.3	28.9	65.8	100.0(38)		4.61
	학부모	0.0	1.1	15.6	35.6	47.8	100.0(90)		4.30

(표 IV-2-51 계속)

항목	구분	전혀	거의	보통	약간	매우	계	$\chi^2(df)$	평균 점수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	전체	1.0	2.7	16.8	45.9	33.2	100.0(292)		4.08
	학계전문가	0.0	6.0	13.4	49.3	31.3	100.0(67)	30.023 (15)*	4.06
	공무원	3.1	4.1	22.7	47.4	21.6	100.0(97)		3.81
	현장전문가	0.0	0.0	7.9	36.8	55.3	100.0(38)		4.47
	학부모	0.0	0.0	16.7	45.6	37.8	100.0(90)		4.21
전체	0.0	3.4	22.3	46.6	27.4	100.0(292)			3.98
지역 어린이집간의 네트워크 구축	학계전문가	0.0	6.0	14.9	55.2	23.9	100.0(67)	18.018 (12)	3.97
	공무원	0.0	5.2	26.8	48.5	18.6	100.0(97)		3.81
	현장전문가	0.0	0.0	23.7	39.5	36.8	100.0(38)		4.13
	학부모	0.0	1.1	22.2	41.1	35.6	100.0(90)		4.11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 의견 수렴창구 활성화	전체	0.0	0.7	18.2	48.3	32.5	100.0(292)		4.13
	학계전문가	0.0	0.0	17.9	52.2	29.9	100.0(67)	37.854 (12)***	4.12
	공무원	0.0	2.1	27.8	54.6	14.4	100.0(97)		3.82
	현장전문가	0.0	0.0	10.5	50.0	39.5	100.0(38)		4.29
학부모	0.0	0.0	11.1	37.8	51.1	100.0(90)	4.40		
시행정책에 대한 부모 대상 캠페인 실시	전체	0.7	2.7	26.0	43.8	26.0	100.0(292)		3.92
	학계전문가	1.5	1.5	25.4	49.3	22.4	100.0(67)	31.842 (15)**	3.90
	공무원	0.0	6.2	33.0	44.3	14.4	100.0(97)		3.68
	현장전문가	0.0	2.6	10.5	52.6	34.2	100.0(38)		4.18
학부모	1.1	0.0	25.6	35.6	37.8	100.0(90)	4.09		
부모 서포터즈, 부모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전체	1.0	4.8	28.1	39.0	26.7	100.0(292)		3.86
	학계전문가	1.5	9.0	31.3	35.8	22.4	100.0(67)	35.598 (15)**	3.69
	공무원	2.1	6.2	36.1	41.2	13.4	100.0(97)		3.58
	현장전문가	0.0	5.3	21.1	47.4	26.3	100.0(38)		3.95
학부모	0.0	0.0	20.0	35.6	44.4	100.0(90)	4.24		
부모의 운영위원회에 참여 의무화	전체	2.1	5.8	28.4	38.7	24.7	100.0(292)		3.78
	학계전문가	1.5	7.5	31.3	40.3	19.4	100.0(67)	26.439 (15)*	3.69
	공무원	3.1	7.2	36.1	37.1	15.5	100.0(97)		3.55
	현장전문가	0.0	2.6	10.5	57.9	28.9	100.0(38)		4.13
학부모	2.2	4.4	25.6	31.1	36.7	100.0(90)	3.96		
영유아의 등하원 여부 알림서비스 전자시스템 구축	전체	0.7	3.8	22.9	36.0	36.0	100.0(292)		4.03
	학계전문가	0.0	4.5	25.4	38.8	31.3	100.0(67)	21.410 (15)	3.97
	공무원	0.0	5.2	25.8	40.2	27.8	100.0(97)		3.92
	현장전문가	2.6	5.3	21.1	39.5	28.9	100.0(38)		3.89
학부모	1.1	1.1	18.9	27.8	51.1	100.0(90)	4.27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하차하는 지정정류장 설치	전체	3.1	5.8	32.5	31.2	27.1	100.0(292)		3.74
	학계전문가	4.5	6.0	29.9	29.9	29.9	100.0(67)	28.447 (15)*	3.75
	공무원	3.1	11.3	39.2	30.9	14.4	100.0(97)		3.43
	현장전문가	2.6	2.6	26.3	44.7	23.7	100.0(38)		3.84
학부모	2.2	1.1	30.0	26.7	40.0	100.0(90)	4.01		

(표 IV-2-51 계속)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χ^2 (df)	평균 점수
자녀양육에서 부모양육의 책임을 강화 규정 신설	전체	0.3	3.1	17.1	37.3	41.4	100.0(292)		4.17
	학계전문가	0.0	4.5	9.0	31.3	53.7	100.0(67)	31.609 (15)**	4.36
	공무원	0.0	3.1	23.7	44.3	27.8	100.0(97)		3.98
	현장전문가	0.0	0.0	2.6	31.6	65.8	100.0(38)		4.63
	학부모	1.1	3.3	22.2	36.7	36.7	100.0(90)		4.04
부모교육참여 의무화 방안 신설	전체	1.7	6.2	22.6	31.2	38.0	100.0(292)		3.98
	학계전문가	0.0	6.0	9.0	25.4	59.7	100.0(67)	56.211 (15)***	4.39
	공무원	2.1	11.3	28.9	37.1	19.6	100.0(97)		3.61
	현장전문가	0.0	0.0	5.3	31.6	63.2	100.0(38)		4.58
	학부모	3.3	3.3	33.3	28.9	31.1	100.0(90)		3.81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도입	전체	0.0	1.0	16.1	43.2	39.0	100.0(292)		4.21
	학계전문가	0.0	1.5	4.5	40.3	53.7	100.0(67)	36.563 (12)***	4.46
	공무원	0.0	2.1	28.9	43.3	23.7	100.0(97)		3.91
	현장전문가	0.0	0.0	5.3	55.3	39.5	100.0(38)		4.34
	학부모	0.0	0.0	15.6	40.0	44.4	100.0(90)		4.2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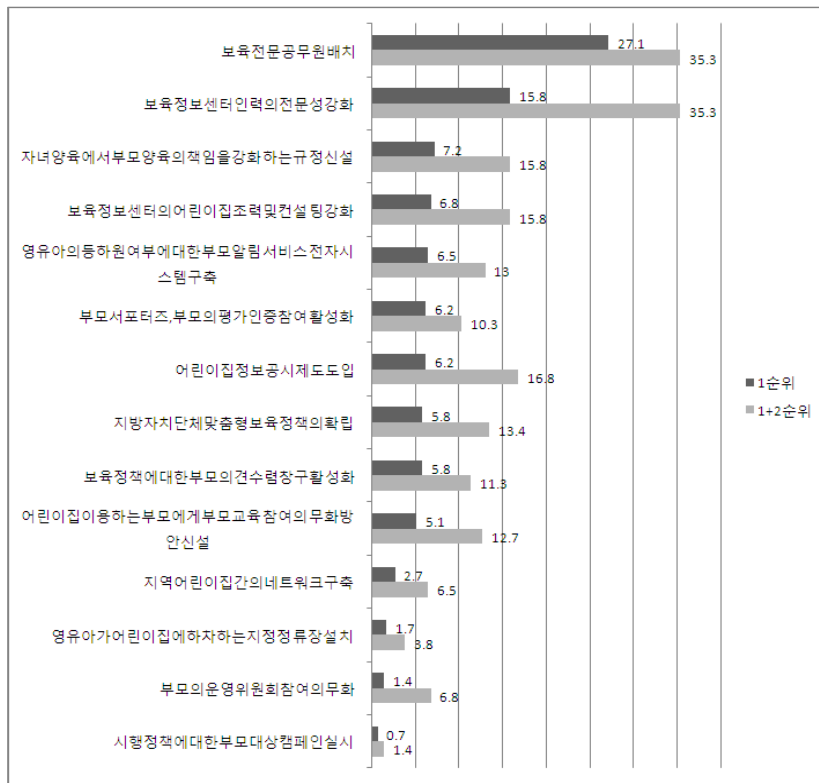
보육정책의 지원 및 행정체계 효율성 확립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질문하였다(표 IV-2-52 참조).

<표 IV-2-52>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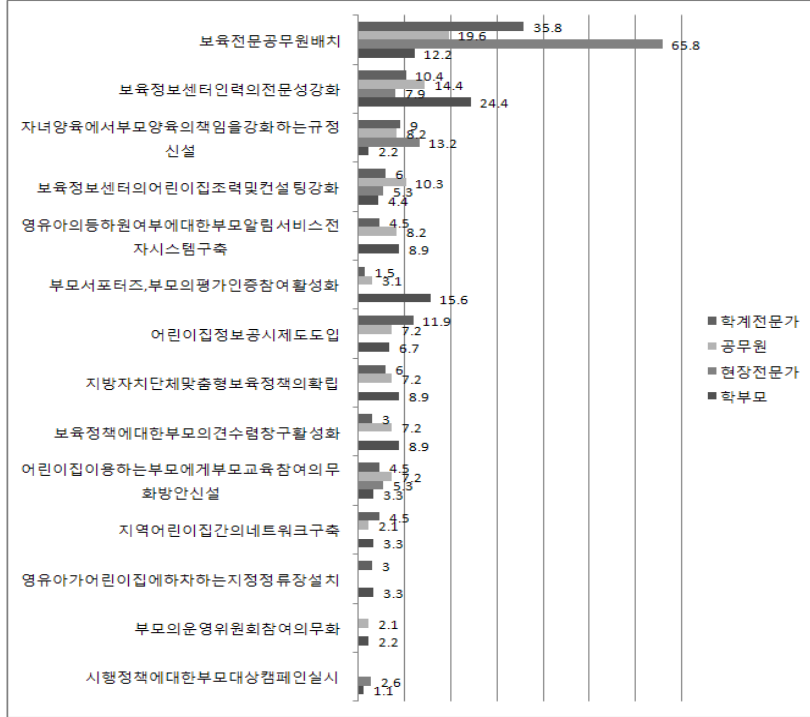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계	공무원	현장	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	27.1	35.8	19.6	65.8	12.2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15.8	10.4	14.4	7.9	24.4
자녀양육에서 부모양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	7.2	9.0	8.2	13.2	2.2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 강화	6.8	6.0	10.3	5.3	4.4
영유아의 등하원 여부에 대한 부모알림서비스 전자시스템 구축	6.5	4.5	8.2	0.0	8.9
부모 서포터즈, 부모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6.2	1.5	3.1	0.0	15.6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	6.2	11.9	7.2	0.0	3.3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	5.8	6.0	7.2	0.0	6.7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의견 수렴창구 활성화	5.8	3.0	7.2	0.0	8.9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에게 부모교육참여 의무화 방안 신설	5.1	4.5	7.2	5.3	3.3
지역 어린이집간의 네트워크 구축	2.7	4.5	2.1	0.0	3.3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하차하는 지정정류장 설치	1.7	3.0	0.0	0.0	3.3
부모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 의무화	1.4	0.0	2.1	0.0	2.2
시행정책에 대한 부모대상 캠페인 실시	0.7	0.0	0.0	2.6	1.1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된 순으로 살펴보면,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15.8%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와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11 참조)



[그림 IV-2-11]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순위

응답자 집단별로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 IV-2-12]와 같다. 거의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나타난 '보육전문공무원 배치'는 현장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현저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보육정보센터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부모서포터즈, 부모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IV-2-12]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관련 정책 우선 1순위

사. 평가체계

현 평가체계에서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해 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으로 70개 항목을 평가하고 통과점수는 75점이다. 현 평가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 유지 해야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표 IV-2-53> 평가인증 통과점수 개선 필요성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단위: %(명)
전체	39.4	59.6	1.0	100.0(29)	
학계 전문가	22.4	77.6	0.0	100.0(67)	36.325 (6) ^{***}
공무원	41.2	56.7	2.1	100.0(97)	
현장 전문가	15.8	81.6	2.6	100.0(38)	
학부모	60.0	40.0	0.0	100.0(90)	

^{***} p < .001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59.6%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53 참조).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7.6%와 8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평가인증의 통과점수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해야 하는지 또는 평가인증 통과점수의 상향조정보다는 점수체계의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가인증 통과점수의 상향조정보다는 점수체계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77.7%로 나타났다(표 IV-2-54 참조)

〈표 IV-2-54〉 평가인증 통과점수 개선안 의견

구분	단위: %(명)			
	점수체계의 변별력 향상	통과점수의 상향조정	기타	계
전체	77.7	20.6	2.9	100.0(175)
학계 전문가	76.9	19.2	5.7	100.0(52)
공무원	80.4	19.6	1.8	100.0(56)
현장 전문가	83.9	16.1	0.0	100.0(31)
학부모	69.4	27.8	2.8	100.0(36)

현 평가체계에서, 평가인증지표는 40인 이상 기준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평가인증지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 해야하는 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행 유지는 49.3%,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7%로 나타났다(표 IV-2-55 참조).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7.2%와 7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5〉 평가인증지표 개선 필요성

구분	단위: %(명)				$\chi^2(df)$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전체	49.3	49.7	1.0	100.0(29)	28.082 (6) ^{***}
학계 전문가	32.8	67.2	0.0	100.0(67)	
공무원	56.7	41.2	2.1	100.0(97)	
현장 전문가	26.3	71.1	2.6	100.0(38)	
학부모	63.3	36.7	0.0	100.0(90)	

*** $p < .001$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평가인증지표를 보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지, 기존보다 건강 및 위생 등을 더 강조해야 하는지, 현재의 평가인증지표를 더 세분화해야 하는지, 평가인증지표는 정원 구별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보육과정만 영아와 유아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평가인증지표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은 지도점검 등의 내용과 일관되게 개편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육과정 중심 개편'되어야 한다'에 23.4%가 응답하였다 (표 IV-2-56 참조).

〈표 IV-2-56〉 평가인증 통과점수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보육과정 중심개편	지도점검 내용과 일관된 안전·건강 ·위생	안전 ·건강 ·위생 강조	평가인증 지표유지, 보육과정 개편	현재영역 세분화	기타	계
전체	23.4	22.8	22.1	19.3	13.1	3.5	100.0(145)
학계 전문가	40.0	13.3	13.3	22.2	13.3	6.6	100.0(45)
공무원	20.0	30.0	27.5	15.0	7.5	0.0	100.0(40)
현장 전문가	18.5	48.1	18.5	14.8	7.4	0.0	100.0(27)
학부모	9.1	6.1	30.3	24.2	24.2	6.0	100.0(33)

현 평가체계에서 평가인증체계는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어린이집의 약 75%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현 평가인증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7 참조).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6.6%와 8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7〉 평가인증제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chi^2(df)$
전체	30.8	68.2	1.0	100.0(29)	27.384 (6) ^{***}
학계 전문가	13.4	86.6	0.0	100.0(67)	
공무원	41.2	56.7	2.1	100.0(97)	
현장 전문가	13.2	84.2	2.6	100.0(38)	
학부모	40.0	60.0	0.0	100.0(90)	

*** $p < .001$

평가인증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야 하는지, 평가인증에 2회 이상 탈락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하는지, 평가인증이 지원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표 IV-2-58 참조). 그 결과, '어린이집의 상시적 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이 지원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58〉 평가인증제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평가인증과 지원정책 연계	평가인증제 의무화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	기타	계
전체	53.8	40.2	12.1	0.5	100.0(199)
학계 전문가	48.3	48.3	13.8	0.0	100.0(58)
공무원	61.8	38.2	9.1	1.8	100.0(55)
현장 전문가	75.0	28.1	0.0	0.0	100.0(32)
학부모	38.9	40.7	20.4	0.0	100.0(54)

현 평가체계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확인점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유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59 참조).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와 8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9〉 확인점검제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chi^2(df)$
전체	35.3	63.7	1.0	100.0(29)	38.090 (6) ^{***}
학계 전문가	16.4	83.6	0.0	100.0(67)	
공무원	36.1	61.9	2.1	100.0(97)	
현장 전문가	15.8	81.6	2.6	100.0(38)	
학부모	56.7	43.3	0.0	100.0(90)	

^{***} $p < .001$

확인점검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현행 확인점검보다 강화된 불시점검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또는 확인점검의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행 확인점검보다 강화된 불시점검제를 도입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59.9%로 높았다(표 IV-2-60 참조).

〈표 IV-2-60〉 확인점검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불시점검제 도입	지원정책에 결과 반영	기타	계
전체	59.9	37.4	2.7	100.0(187)
학계 전문가	53.6	46.4	0.0	100.0(56)
공무원	68.9	31.1	0.0	100.0(61)
현장 전문가	29.0	54.8	16.1	100.0(31)
학부모	79.5	20.5	0.0	100.0(39)

평가체계에 관련된 정책에서 향후 필요성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제시된 정책 중에서 전체의 80%이상이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2-61 참조).

〈표 IV-2-61〉 평가체계 관련 향후 정책 필요성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χ^2 (df)	평균 점수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전체	0.0	2.1	20.5	42.1	34.9	100.0(292)	17.983 (12)	4.10
	학계 전문가	0.0	1.5	17.9	34.3	46.3	100.0(67)		4.25
	공무원	0.0	4.1	26.8	41.2	26.8	100.0(97)		3.92
	현장 전문가	0.0	2.6	7.9	55.3	34.2	100.0(38)		4.21
	학부모	0.0	0.0	21.1	43.3	35.6	100.0(90)		4.14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전체	0.0	0.7	13.4	33.9	51.7	100.0(292)	20.402 (12)	4.37
	학계 전문가	0.0	1.5	7.5	25.4	65.7	100.0(67)		4.55
	공무원	0.0	1.0	17.5	44.3	36.1	100.0(97)		4.17
	현장 전문가	0.0	0.0	10.5	36.8	52.6	100.0(38)		4.42
	학부모	0.0	0.0	14.4	27.8	57.8	100.0(90)		4.43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	전체	0.3	2.1	12.7	36.6	47.9	100.0(292)	30.725 (12)*	4.30
	학계 전문가	0.0	3.0	7.5	34.3	55.2	100.0(67)		4.42
	공무원	0.0	4.1	11.3	49.5	34.0	100.0(97)		4.15
	현장 전문가	2.6	0.0	13.2	34.2	50.0	100.0(38)		4.29
	학부모	0.0	0.0	17.8	25.6	56.7	100.0(90)		4.39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	전체	0.3	0.3	12.3	27.4	58.9	100.0(292)	32.868 (15)**	4.45
	학계 전문가	0.0	0.0	3.0	22.4	73.1	100.0(67)		4.71
	공무원	0.0	1.0	14.4	37.1	46.4	100.0(97)		4.30
	현장 전문가	0.0	0.0	2.6	18.4	78.9	100.0(38)		4.76
	학부모	1.1	0.0	21.1	24.4	53.3	100.0(90)		4.29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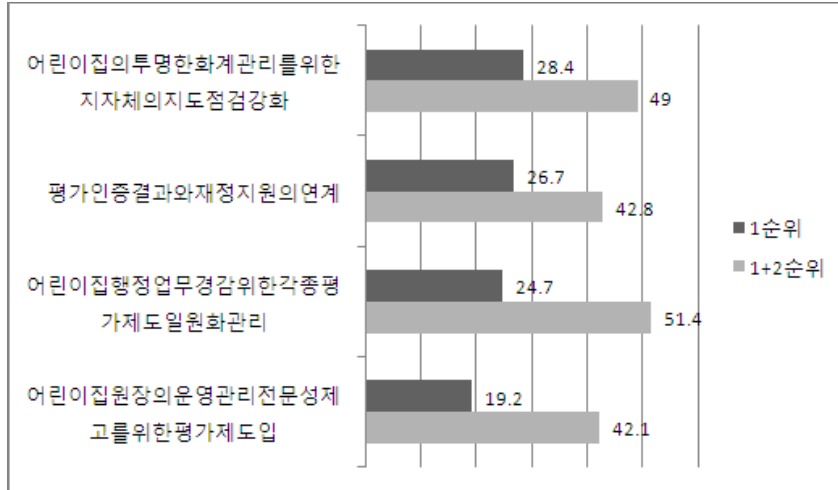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0%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10점이었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6%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7점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7점이었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6%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30점이었다.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 위한 각종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4.45점이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5.5%와 9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61 참조).

평가체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질문하였다(표 IV-2-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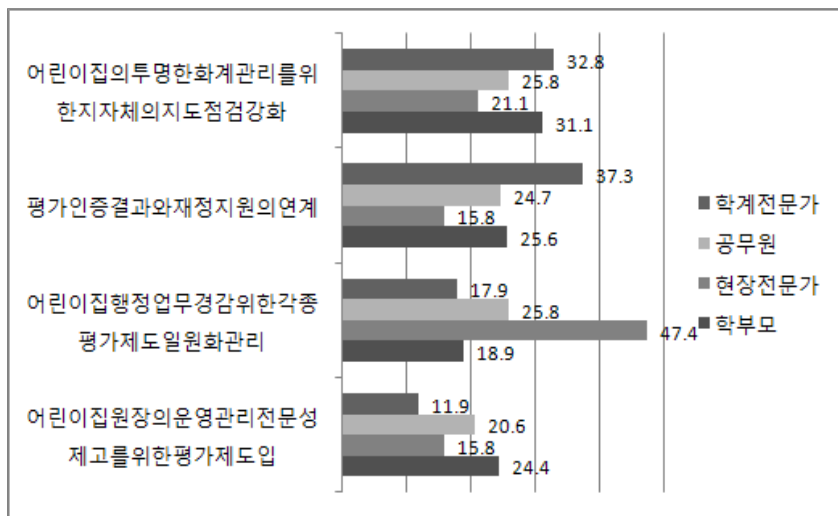
〈표 IV-2-62〉 평가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1순위)

구분	단위: %(명)				
	전체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28.4	32.8	25.8	21.1	31.1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26.7	37.3	24.7	15.8	25.6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위한 각종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	24.7	17.9	25.8	47.4	18.9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	19.2	11.9	20.6	15.8	24.4

1순위로 응답한 순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에 28.4%가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 위한 각종평가제도 일원화 관리’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V-2-13 참조).



[그림 IV-2-13] 평가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그림 IV-2-14] 평가체계 관련 정책 우선 1순위

아. 소결

현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첫째, 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적절하게 향상되었고 이러한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평가되는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형평성은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향상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맞벌이 부모 양육지원, 장애영유아 양육지원, 가정 내 양육지원, 다문화 가정 양육지원으로 세분화된 서비스에 대하여,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4에서 1/2정도를 차지하고 평균점수는 2.58점에서 3.22점으로 향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맞벌이 부모에 적절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향상되었다는 응답비율이 43.4%로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으나, '가정 내 자녀 양육 지원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48.0%이며 평균점수도 2.58점으로 낮았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게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리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담보와 같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과반이 넘었고 평균점수가 3.39점에서 3.74점으로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인식되었다. 반면, 취약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와 같은 어린이집의 균형배치 세부사업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9.5%에서 37.0%로 향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세부과제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의 평균점수는 2.8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현장전문가는 63.2%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12.2%만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집단간 차이가 현저하였다.

넷째,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내실화,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과 같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과 같거나 적게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집단간 차이가 있어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의 경우 공무원은 학계전문가나 학부모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과 같은 세부과제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과반이 넘어 이러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지역별 보육정보센터의 확충에 대해서는 학계나 현장 전문가의 과반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과 학부모의 경우 각각 23.7%와 18.8%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보육서비스 지원 기능 통합추진,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와 같은 보육사업 지원체계의 세부과제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6.4%에서 38.7%로 사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추진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6.4%로 낮게 평가된 반면,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은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가) 정책방향성

보육의 정체성과 보육이념,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견해는 내용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순위 우선권, 영아(0-2세)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 취업만큼 중요한 가정양육, 보육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내용에는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순위 우선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90.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학계전문가는 9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무상보육정책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에 차등없이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41.1%에서 45.9%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만 1세 미만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어린이집 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1/3정도가 가정양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만 3세 이상에서 만 5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어린이집 보육이 가정양육보다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각 연령대에서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을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의 경우 5.79시간,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5.94시간,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5.66시간,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인 경우 6.16시간,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인 경우 6.86시간, 만 5세 이상인 경우 7.18시간으

로 나타나서 조사된 모든 연령대에서 8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와 비취업모의 자녀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서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경우 7.17시간,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7.44시간,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8.04시간,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의 경우 8.48시간,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인 경우 8.70시간, 만 5세 이상인 경우 8.80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경우 2.89시간, 만 1세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의 경우 3.27시간,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경우 4.53시간, 만 3세 이상에서 만 4세 미만의 경우 5.58시간, 만 4세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인 경우 6.03시간, 만 5세 이상인 경우 6.35시간으로 나타났다.

만 0-2세 영아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보육정책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5세 유아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보육정책으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보육료 지원의 금액범위에 대하여, 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이 소득계층에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맞벌이 부모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며, 영유아와 구분없이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소득수준 및 영유아의 연령별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계속 추진되거나 향후 이루어져야 할 보육정책으로 영유아의 실제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책정이나 재정조달방식의 적절성 검토, 세금혜택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감독의 강화에는 91.1%가 응답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현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는 현행유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부모는 현 지원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상보육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무상보육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가정양육을 하던 유아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면서 실수요자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으며, 양육수당 지급의 전

제조건으로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 양육수당이 연령별로 차등이 있어야 하며, 연령별 양육수당의 예상 적정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적정금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32.5%, 만 1세의 경우 35.6%, 만 2세의 경우 33.9%가 20만원에 응답하였다. 한편 만 3세에 27.1%, 만 4세에 31.8%, 만 5세 32.9%가 0원에 응답하였다.

다) 서비스의 다양성 및 공공성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현장 전문가가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으로 향후 5년간 전체의 30%로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으로 향후 5년간 전체의 20% 또는 25%로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게 나타났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학계 및 현장전문가가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전체 대비 비중으로 향후 5년간 전체의 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개선이 필요하며 1일 8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시간제 일시보육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중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협동보육을 활성화하고 영유아가 아플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중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의 확대가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

라) 운영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만 1세 미만, 만 1세와 만 2세의 경우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만 3세와 만 4~5세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 집단 간 차이가 있어 만 1세 미만과 만 1세에는 현장 전문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만 2세, 만 3세, 만 4~5세에는 학부모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로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정책 중에서 보육교직원의 인성강화와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의 질적 관리 지원 또는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으며, 우선순위로 추진할 정책으로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가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

마) 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개선되어야 하며, 지자체에 대한 차등없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보수는 호봉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시설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현 체계는 철폐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과목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실습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3급 보육교사 자격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 정책 중에서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의 상향조절과 아동학대, 보조급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우선순위로 추진할 정책으로 교사의 급여수준이나 자격수준을 상향 조절하는 것이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

바) 사업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개선해야 할 경우에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이나 부모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있는 현 체계는 강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을 강화하거나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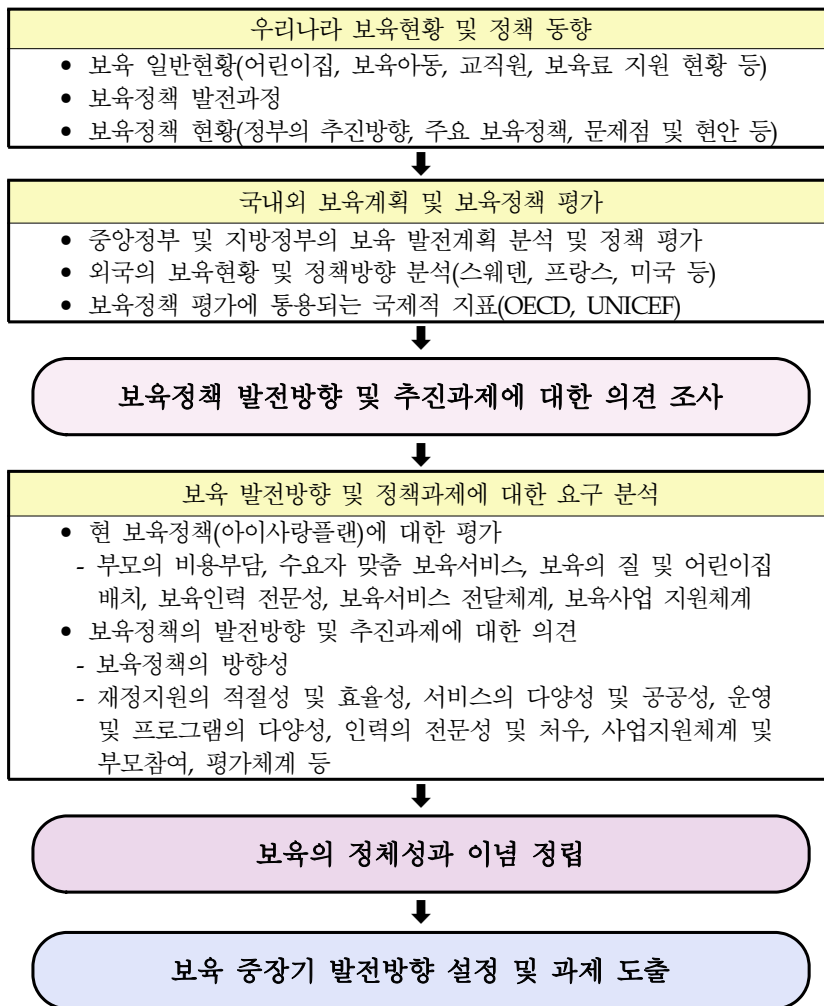
사) 평가체계

현 평가인증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며 평가인증 통과점수의 상향조정보다는 점수체계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평가인증지표에 대하여 현행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개선할 경우, 보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도점검 내용과 일관된 안전, 건강, 위생이 강조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현 평가체계는 평가인증이 지원정책과 연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후관리를 위해 확인점검제를 실시하는 현 체계는 불시점검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평가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28.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V. 보육 중장기 정책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 현황 및 국내·외 보육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보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 절차는 [그림 V-1-1]과 같다.



[그림 V-1-1]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과 과제 도출 절차

1. 보육정책의 방향

가. 보육의 정체성 확립과 보육이념 정립

우리나라의 보육이념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영유아나 보호자의 배경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은 보육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보육이념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에게 최상의 출발과 공평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자녀양육의 최적임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보육정책이 동등한 수준의 가정 내 양육 지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

현 정부의 보육정책 특성은 보육을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플랜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및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보육이념의 구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 기본권 보장을 기초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이루어진다. 또한 영유아기는 생애주기별 국가 투자비용을 산정했을 때 인적투자 대비 회수율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영유아에게 최상의 출발과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반복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 노력은 핵심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도 보육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조된다. 영유아가 국가 인적투자대비 회수비율이 큰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저출산 기조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 경제활동 확대 지원과 함께 맞벌

이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양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며(5점 만점 중 평균 4.11),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68.2%)과 취약가정의 자녀양육지원(18.8%)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 취약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영양, 건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을 담보하도록 한다.

셋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2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의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을, 만 0~2세 영아는 개정된 3차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의 영유아가 연령에 따라 표준화된 프로그램 및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평등한 조건에서 성장·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공통보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아와 유아의 보육과정이 연속선상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부모 교육프로그램 및 교사교육용 자료의 배포 등을 통한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보육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고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영유아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시설보육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육시간과 보육 방법을 정립하고, 부모의 가정 양육과 시설 이용 선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현 정부의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보다 나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여부, 부모의 근로유형 및 근로시간, 저소득가정, 조손가정을 포함한 계층 별 요구, 장애아 및 특수아 자녀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취업지원을 고려한 방향성을 견지한다.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미래인적 자원 개발과 저출산 대응 정책,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서 범정부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취업모를 위한 차별적 정책을 통해 맞벌이가족을 지원한다.

셋째, 가정 내 양육과 시설 양육의 균형을 제고한다. 기존 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통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꾀하였다면 이제 보다 합리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보육료 지원의 확대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미취업의 구분뿐 아니라 각 가정 및 영유아의 특성을 고루 반영할 때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시설지원과 동등한 비중으로 확대하고 0-2세 영아와 만 3-5세 유아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가정 내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양육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에 앞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역할 학습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 및 지역사회 내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활성화한다.

라. 보육의 질 관리체계 마련

현 정부의 보육의 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리의 강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담보’ 부분에서는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보다 나은 보육의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개선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된 부정수급 어린이집은 2,918개소이고, 환수결정액은 166억원에 달하여, 어린이집 권리금 거래,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취약하고 제재가 미흡하여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역자치단체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유도해야한다. 또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 검토 및 어린이집 운영자, 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평가인증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강화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강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기 평가·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마. 적정 보육시간 및 보육방법 제시

현 정부의 적정 보육시간 및 보육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도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아동 연령별 적절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합한 보육방법의 제고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0-2세 영아에 있어서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맞벌이 부모는 16개월 간 봉급의 80%를 받으면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이용은 생후 16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6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아는 가정양육보다는 어린이집 보육이,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양육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 이용 적정시간'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 0~2세 영아의 경우 무상보육 지원의 전제조건을 재검토 하고 시설 이용 시간과 가정 내 양육 지원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만 3~5세 유아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취업 모의 자녀의 경우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이

용시간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바. 보육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현 정부의 보육환경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추진,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등에 대한 보육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내실화와 현장밀착형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또 보육교사의 보수수준 개선,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지역별로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보육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육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사업 지원기구를 개편한다. 넷째, 공공인프라 마련 및 민·관·학의 연계망 활성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다섯째,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을 개선하고 부모단체,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꾀한다.

2. 보육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가. 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

현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개선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육료 지원정책과 양육수당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보육료 지원정책

가) 현황 및 문제점

보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보육료를 지원받는 지원아동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

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는 991,301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대비 73.5%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2). 보육료 지원의 수단으로써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만 0~2세 영유아와 5세아에게는 소득·재산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3~4세아는 가구소득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만 3~4세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예정이며,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지나 보육료지원 아동수의 급증으로 보육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정책 과제

첫째, 보육료 재원조달방식 및 지방보육료 부족분 재정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재정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시설보육보다 가정 내 양육이 적절한 만 0~2세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영아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한다.

셋째, 보육재정 추계를 통해 3~5세 무상보육료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

넷째, 시설이용시간에 비례한 보육료 책정을 논의한다.

다섯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여섯째, 무상보육 투자의 결과를 분석하여 공공재정 투자를 통한 효율성을 검토한다.

일곱째,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시행과정을 보완한다.

여덟째, 어린이집의 부채 규모에 제한을 설정한다.

아홉째,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용을 재산정한다.

2) 양육수당 지원정책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만 0~2세 영아 중 소득하위 15%가구에 지

원되고 있으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0-2세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2013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4,169억원으로 2012년과 대비하여 3,143억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미이용 대상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이용 지원 간 금액 불균형으로 인해 부모의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영아 어린이집 쏠림현상으로 대기 원아 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과 같은 실수요층의 이용 불편, 교사의 업무과중, 보육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함께 야기되었다.

나) 정책 과제

첫째, 노동권과 부모권에 대한 기본철학을 정립한 후 이에 따른 지원수준 결정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 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수당의 적정지원 금액을 책정하고,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여부, 아동연령 등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을 재검토한다. 이때 정책 우선순위는 지원대상 소득계층 확대, 액수조정 순이다.

둘째, 연령별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시설 미이용 대상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지원 간 금액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인 증액을 검토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보육재정분담율을 재고한다.

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현 정부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한 개선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및 축소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어린이집의 약 5.3%이고, 이용 아동

수는 이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약 10.6%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선호도가 높지만, 높은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민간 자원 육성·활용 및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 재정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다.

나) 정책 과제

첫째, 전체 보육아동 중 30%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질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비를 통해 재정 효율적이고 현실 가능한 확충계획 수립한다.

2)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2012년 현재 665개소에서 2013년에 최대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정책 과제

첫째, 자율형 어린이집 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의 수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등한 지역 배치를 고려한다.

3)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급 조절

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어린이집 39,842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은 37.7%,

가정어린이집이 52.0%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체비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적정비율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나) 정책 과제

첫째,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을 조절한다.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비중 축소를 위한 단계적 플랜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의 적정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둘째, 어린이집 인가 제한 기준을 설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34.3%가 어린이집 인가를 전면제한, 42.6%가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 정도와 난립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제한 수준을 설정한다.

다.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현 정부의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개선 필요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운영시간의 개선과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종일돌봄(07:30-19:30)에 중점을 두고 있어 12시간이 기본 운영시간이다. 또한 취업모 및 모부재 아동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므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가 예상된다. 실제로 교사들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9.5시간으로 보고되었으며(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2011. 7. 확대 기준법)을 초과하는 것이다.

나) 정책 과제

첫째, 교사의 적정근무시간과 수요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재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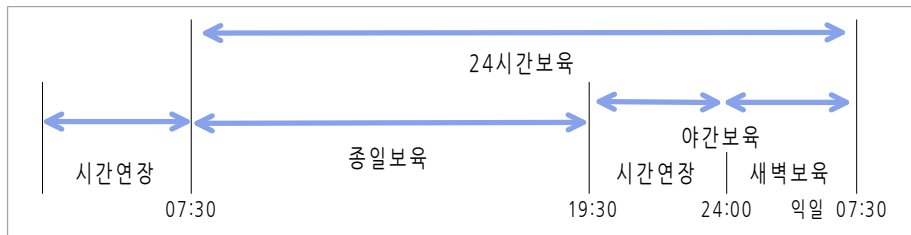
둘째, 보육교사 업무를 총 8시간 중 6시간을 보육에 사용하고, 하루 2시간 정도 연구 및 다음날 보육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셋째,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2) 시간제 일시보육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육아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일시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연장제 보육, 휴일보육 어린이집 등이 운영 중이다. 2012년 말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를 비롯하여 16개 시도에 17개소, 시군구 44개소, 총 62개소의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중앙정부가 설치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림 V-2-1] 시간연장형⁶⁾ 보육 개념

나) 정책 과제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보육 또는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수요에 따른 어린이집의 탄력적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232개 시군구에 일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간제 일시보육, 육아나눔터, 또는 부모협동보육을 제공하며 서비스 운영장소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가정방문을 통한 영아 돌봄서비스와 장애아 부모 단기휴식 보호서비스 모형을 도입한다.

6) 시간연장형 보육은 24시간 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8.)

3)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12월 말 보육교사는 180,247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48,635명의 약 70%를 차지하며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⁷⁾는 평균 7.5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아 1:3, 만 1세아 1:5, 만 2세아 1:7, 만 3세아 1:15, 만 4~5세 1:20이다.

나) 정책 과제

첫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한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절에 대한 요구, 특히 4~5세아에 대한 비율 조절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보육의 질 제고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조교사 추가배치 및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팀티칭, 순환근무, 상시대체교사제 등을 통해서 현재 1인 근무를 1.5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대체교사를 확보하여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휴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후반 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확대 효과를 기하도록 한다.

4)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실화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유아 간 보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3~5세 누리과정 제정에 따라 0~1세 보육과정 및 2세 보육과정을 개정한다.

둘째, 5세 어린이집 프로그램, 0~2세 어린이집 프로그램, 3~4세 어린이집 프로그램, 장애·다문화·반편견 등 취약 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교육용 자료를 개발한다.

7) 2011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2)에 의하면 전체 보육아 수는 1,348,729명 임.

8) 만 1세 미만(40.2%), 만 1세(42.5%), 만 2세(43.2%), 만 3세(60.3%), 만 4~5세(62.0%)로 나타남.

5) 어린이집 운영 및 환경 관련 정책 과제

어린이집 운영 및 환경 관련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현장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셋째,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한다.

넷째, 농어산촌 지역 차량운영비를 보조한다.

라.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현 정부의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영유아발달 및 지도, 보육과 아동복지에 기초하여 향후(2013년 변경고시) 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은 인터넷 강의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수여되고, 2급 보육교사 자격은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보육학이나 아동관련학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되며, 1급 보육교사자격은 자격 취득 후 현장 경력에 따라 부여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자격 취득, 보육실습 실시 및 확인 미흡 등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양성과정으로 인해 보육교사 공급 과잉 및 자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나) 정책 과제

(1) 보육교사 자격

첫째,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체계를 개편한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교과목 수를 늘리고, 보육실습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이수학점제에서 학과제로 자격부여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3급 보육교사 자격의 전문성 신장, 혹은 폐지를 검토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으로는 자격요건 상향조정, 가정어린이집 교사 혹은

보조교사로서의 활용, 자격의 중장기적 폐지 등이 있다. 나아가 인터넷(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경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어린이집 경력기간을 연장하고, 시설장 직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내실화한다.

셋째, 보육교사 자격 승급과정을 강화한다.

(2) 보수교육

첫째,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상시 연수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보수교육 대체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대학의 교과목, 세미나 수업시간 적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지역 어린이집 간 자체장학을 활성화한다.

넷째,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인력 보수교육 기회 확대 및 예산 지원 증액을 검토한다.

(3) 관리 등 기타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 제재를 강화한다.

2) 보육인력 처우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보육교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및 공급 과잉 현상 등은 우수 인력의 현장 이탈을 가져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고, 급여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가 114만원으로 조사되어 사립유치원교사 평균 급여인 166만원(2010)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보수는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라 차별화 되지 않으나, 시설유형에 따라 차별화 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자체별로 차등화 된다. 또 높은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가 호봉체계의 급여조정에서 경력이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나) 정책 과제

(1) 보수 개선

보육교사의 보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절한다.

둘째, 교직원의 학력, 자격, 직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한다.

셋째, 시설유형별 급여체계를 명시한다.

넷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 따른 차등 없이 일원화하거나, 기본 처우개선비는 일원화하고 기타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르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다섯째, 보육교사 수당(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여섯째,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곱째,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 인상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2)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2교대 체제를 도입하여 8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둘째,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원활하게 공급한다.

셋째, 교사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넷째, 보육교사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행정사무원이나 청소도우미를 지원한다.

마.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현 정부의 보육사업 지원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현 보육사업지원체계 및 부모참여에 관한 개선 필요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이나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있는 현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부모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부모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바우처지원

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부모와 어린이집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보육정보를 공유하며, 보육료 결제 상황 등을 부모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는 디지털맵을 활용한 맞춤형 검색기능과 부모의 커뮤니티 공간 및 정보 공유의 장이 제공되고 있다. 즉, 기존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에서 이루어졌던 어린이집 운영관련 모든 업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아이사랑포털(부모지원시스템)에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나) 정책 과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에서 오는 행·재정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및 부모의 정보 이용 편리성 제고 정도를 평가한다.

2)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기능 다양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2010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보육컨설팅사업의 대상 어린이집 690개소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2012년도에는 대상을 4,300여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와 지방보육정보센터 63개소에 불과하다.

나) 정책 과제

첫째, 보육정보센터를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 양육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정립한다. 초기 보육정보센터는 시설보육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육아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거점 육아지원기관으로의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부모의 고립감을 해소하여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보육정보센터의 조력, 컨설팅 역할을 강화한다.

3) 부모참여 확대 및 정보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조사결과, 부모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이 전체 15.5%(현재 7.8%, 과거 7.7%), 부모모니터링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9%(현재 5.9%, 6.0%),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32.3%로, 부모교육 참여율에 비해 운영위원회 및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2년 시범 운영되었던 부모서포터즈 사업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를 평가인증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나) 정책 과제

첫째, 부모양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부모서포터즈에 대한 지속적 훈련과 관리가 수요자 입장의 보육의 질 평가로 이어지도록 한다.

셋째, 부모운영위원회를 건전화하고 이를 부모평가에 활용하는 등 부모참여율을 높인다.

넷째, 어린이집 수업이나 평가에 적극적인 부모참여를 유도한다.

다섯째,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

여섯째,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홍보를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곱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담당 전문가를 구성하고 지자체 혹은 보육정보센터 등의 역할을 강화한다.

여덟째,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홉째, 부모의견 수렴창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열째, 육아데이, 육아와 관련한 주말 행사 등을 개최한다.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는 평가인증의 신청, 현장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 등이 있다.

나) 정책 과제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정책을 확립한다.

둘째, 지역 어린이집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무원,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료, 특별활동비 상한액 결정, 원장 자격 취소처분 등을 심의한다. 이 때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는 최소화하고 학부모 참여는 확대하며 공적 사무(행정처분 등)는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전환한다.

바.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

현 정부의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도를 조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한 질 유지

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12월말 기준, 전국어린이집의 약 75%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평가인증은 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 보육환경(11항목), 운영관리(12항목), 보육과정(14항목),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건강과 영양(12항목), 안전(10항목)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70개 항목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현재 통과점수는 75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37.7%)이 높고 이들 시설의 질적인 개선이 더욱 요구되지만,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비율(26.2%)이 낮지 않아 평가인증 운영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 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보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수 시설설비 등 환경과 관련된 평가가 많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영역에 있어서 관련 법규나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나) 정책 과제

첫째, 평가인증제의 제도적 성격을 인증의무화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상에 제시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미준수나 위법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한다.

셋째, 평가인증 통과점수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상향 조정한다.

넷째, 점수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다섯째, 점수체계 변별성 강화를 위해 3점 체계를 5점 체계로 전환하고, 0점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여섯째, 보육환경보다 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편한다.

일곱째,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세분화한다.

여덟째, 전체 통합지표 외, 연령별, 기관규모 및 특성별 특화된 지표를 마련한다.

아홉째,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를 도입한다.

열째, 평가인증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연계 방안과 평가인증 상위 점수 통과 시설에 대한 보육료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다.

열한번째, 시군구별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조력기능을 확대 등을 통해 평가인증 조력체계를 강화한다.

열두째, 평가인증 점수 공개를 통해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확보한다.

2) 평가인증 사후관리 방안 정교화

가) 현황 및 문제점

2012년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점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확인점검이 사후관리방안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시점검과 같이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수도권 등의 지자체를 모니터링 대상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정책 과제

첫째, 현행 확인점검 제도의 강화 또는 불시점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현장 실태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일선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 준수 및 지자체별 이용수요와 보육서비스 정원, 보육교사 확충 상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넷째, 어린이집 행정업무 및 평가제도를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다섯째, 평가인증 결과가 단계적으로 운영비, 보육바우처, 정부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도록 한다.

3)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 인센티브 지급 등의 결과활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평가인증 결과를 교재교구비와 연계하고, 지방정부는 부분적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평가인증 통과 및 참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이한 실정이다.

나) 정책 과제

첫째,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의 방편으로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에 재정지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미참여시설이 평가인증제에 유입되도록 한다.

둘째,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상으로 보육 증장기 정책목표 및 과제와 세부추진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 V-2-1>과 같다. 6가지 정책목표(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육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에 따른 22가지 정책과제와 96가지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표 V-2-1〉 보육 중장기 정책목표 및 과제와 세부추진사업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	1.1 보육료 지원 정책 합리화	1.1.1 재원조달방식 및 지방보육료 부족분 관련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재정 협의 1.1.2 영아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1.1.3 보육재정추계를 통한 무상보육료 합리적 재설계 1.1.4 시설이용시간 비례 보육료 책정 1.1.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1.1.6 무상보육 투자의 결과에 대한 분석 1.1.7 보육바우처(i-사랑카드) 시행의 보완 1.1.8 어린이집의 부채규모 제한설정 1.1.9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재산정
	1.2 양육수당 지 원정책 적절 성 제고	1.2.1 노동권과 부모권에 대한 기본철학 정립에 따른 지원수준결정 1.2.2 양육수당 적정수준 책정 및 전제조건 재검토 1.2.3 연령별 적정 지원금액 합의 도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2.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1.1 보육아동의 30%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확충 2.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재정과 공공형어린이집 확 대 및 질 유지 소요비용 대비를 통해 재정 효율 적이고 현실 가능한 확충계획 수립
	2.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2.1 자율형 어린이집 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의 수단 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활용 방안 마련 2.2.2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등한 지역 배치
	2.3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급 조절	2.3.1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비율 조절 2.3.1.1 민간어린이집 비중 축소 단계적 플랜 마련 2.3.1.2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의 적정비 율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합의 도출 2.3.2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 정도와 난립을 다차원적 으로 고려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제한 수 준 설정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의 다양성	3.1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3.1.1 교사의 적정근무시간과 수요자의 이용시간을 고 려한 기본보육시간의 재검토 3.1.1.1 보육교사 업무시간 6(보육)+2(연구)=8시간으로 변경 3.1.1.2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운영시간 선택할 수 있 도록 변경
	3.2 시간제 일시 보육 확대	3.2.1 재가(在家) 영아 대상 일시보육 서비스 도입 3.2.2 수요에 따른 탄력적 어린이집 운영시간 수립 3.2.2.1 전국 232개 시군구에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3.2.2.2 접근성을 고려 시간제일시보육·육아나눔터·부 모협동보육 제공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의 다양성		3.2.2.3 가정방문 영아돌봄 및 장애아 부모 단기휴식보 호서비스모형의 도입 3.2.2.4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확대 3.2.2.5 어린이집 이용부모 사전교육 강화 3.2.3 고정 및 위급시간 일시보육제도의 운영 및 평가 3.2.4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장소의 접근성 향상
	3.3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3.3.1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 3.3.2 보조교사 추가배치 지원과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 3.3.3 중장기적으로 오후반 교사제도 도입
	3.4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실화	3.4.1 표준보육과정 개정 및 영아-유아 보육과정 연계 강화 3.4.2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5세 어린이집프로그램, 0~2세 어린이집프로그램, 3~4세 어린이집프로그 램, 장애·다문화·반편견 등 취약보육프로그램) 3.4.3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교사교육용 자료 개발
	3.5 어린이집 운영 및 환경 개선	3.5.1 안전지표 개발 3.5.2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 3.5.3 현장실태조사 수시 실시 3.5.4 시설개보수비 지원 3.5.5 농어산촌 지역 차량운영비 보조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4.1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4.2 보수교육 및 보육교사 관리 강화		4.2.1 보육교사 관리시스템 구축 4.2.2 시설장 교육 내실화 4.2.3 보육교사 보수교육 상시 연수교육 체계 마련 4.2.4 보수교육 대체방안 마련(한국보육진흥원과 보육 정보센터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대학 의 교과목, 세미나 수업시간을 적립 등)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4.1.5 어린이집 품질관리 컨설팅 활성화 4.1.6 지역 어린이집 간 자체장학 활성화 4.1.7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4.1.8 보육인력 보수교육 기회확대 및 예산지원 증액 4.1.9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 교직원 제재 강화
	4.3 보육 인력 보수 개선	4.3.1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절 및 학력, 자격, 직무에 의한 보수의 차별화 4.3.2 시설유형별 급여체계 명시 및 민간어린이집 보 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4.3.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자체 여건에 따른 합리화 4.3.4 보육교사 수당 지원 확대 4.3.5 보육료 수입을 보육교사 임금인상과 연계
	4.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4.4.1 보육교사 2교대 체제 도입(8시간 근무 준수) 4.4.2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 4.4.3 교사근무시간 탄력운용 4.4.4 행정사무원 및 청소도우미 지원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5.1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성과 평가	5.1.1 행재정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및 부모의 정보 이 용 편리성의 제고 정도 평가
	5.2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기능 다양화	5.2.1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 양육지원 허브로서 의 역할을 정립 5.2.2 육아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거점 육아지원기 관으로 위상 재정립 5.2.3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 지원 5.2.4 부모의 고립감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덜 수 있 는 공간 제공 5.2.5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5.3 보육정보센터 내실화	5.3.1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5.3.2 보육정보센터의 조력, 컨설팅 역할 강화
	5.4 부모참여확대 및 정보제공	5.4.1 부모양육의 책임 강화 규정 신설 5.4.2 부모서포터즈 훈련을 통해 보육의 질 평가와 연계 5.4.3 부모 운영위원회의 건전화 및 부모참여율 제고 5.4.4 부모 대상 육아정책 캠페인 활성화 5.4.5 부모교육의 중요성 홍보 및 참여 유도 5.4.6 부모교육 관련예산 확보 5.4.7 부모의견 수렴창구 활성화 및 어린이집 정보 공 시제도 도입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참여	5.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5.5.1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 5.5.2 지역 어린이집 간 네트워크 구축 5.5.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의 공정성 강 화 및 기능 합리화 5.5.4 시군구별로 공무원,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보육료, 특별활동비 상한액 결정, 원장 자격취소처분 등 심의 5.5.5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는 최 소화, 학부모 참여 확대 및 공적 사무(행정처분 등)는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전환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	6.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한 질 유지	6.1.1 평가인증제 의무화 6.1.2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혹은 위법 이력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신청 제한 6.1.3 평가인증 통과점수의 타당도 검증 및 상향조정 6.1.4 점수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개선 6.1.5 점수체계 변별성 강화(3점→5점, 0점 신설 방안) 6.1.6 보육환경보다 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지표개편 6.1.7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세분화 6.1.8 전체 통합지표 외 연령별, 기관규모 및 특성별 특화된 지표를 마련 6.1.9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 6.1.10 평가인증 조력체계 강화 6.1.11 평가인증 점수공개로 부모선택권 확대
	6.2 평가인증 사후관리방안 정교화	6.2.1 확인점검 제도 강화 혹은 불시점검 제도 도입 6.2.2 현장실태조사의 연중 수시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6.2.3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 준수 및 지자체 별 이용수요와 보육서비스 정원, 보육교사 확충 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6.2.4 어린이집 행정업무 및 평가제도 일원화 관리
	6.3 평가인증 결과 활용방안	6.3.1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강화(평가인증 결과가 단계적으로 운영비, 보육바우처, 정부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6.3.2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6.3.3 시설운영 투명성 관리 6.3.4 평가인증 상위점수 통과시설에 대한 보육료 상 한제 폐지 검토

참 고 문 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 계획(2011~2012) 수립(안).
- 관계부처합동(2012).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관계부처협동보도자료,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에서 2012년 3월 22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 권정윤·한유미(2005). 스웨덴 보육의 배경과 현황. 아동학회지, 26(2), 175-191.
- 김현숙(2006). 보육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나정(2010).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위치와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14(3), 102-122.
-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 문무경 편역(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백혜리(2007). 보육정책의 전망과 발전방향 탐색. 보육정책연구, 3(1), 5-25.
-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통계(2011. 12월말 기준).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b). 보육정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에서 2012년 6월 21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c). 2012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d). 보육정책 연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에서 2012년 6월 21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e). 보육정책 환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에서 2012년 6월 21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0).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2001).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2).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9인 이하 어린이집).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2012). 외국의 보육정책. retrieved 2012년 6월 18일 from <http://m.nlnc.co.kr/articleView.html?idxno=1160&menu=1>
- 서문희·김은설·최윤경·최유진·최혜선·안재진·김진경(2010).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욕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안재진·유희정·이세원(2009).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성효용(2006). 참여정부의 '새싹플랜' 실현 가능한가? 김애실 의원실 정책세미나 자료집.
- 신운정(201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151, 1-8.
- 신은수·유영의(2006). 유아교육 학제 선진화방향 모색: 2000년 이후 미국의 K-grade 체제 반성과 Pre-Kindergarten체제 구축 과정, 미래유아교육학 회지, 13(4), 257-288.
- 여성부(2005).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여성부.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서울: 감사연구원.
- 유희정(2007). 참여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미간행자료.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a).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정부문헌.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b).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통계.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c).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d).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2007~2011).
- 이미화(2012). 한국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미화·권용은·김은설·신나리·유은영·정미영(2007).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2007~2011).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김은설·양미선·오유정(2012). 보육교사 중장기 수급추계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홍승아·정민자·권혜진·임양미·신보원(2011). 수요자 입장에서 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가족부.
- 이옥·서문희·유희정·장명림·이미화·김은설·신나리 외(2007).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 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이옥(2010). 한국 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변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동학회지, 31(1), 197-217.
- 인천광역시(2011). 인천광역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2012~2016).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
- 장명림(2012). 미래사회와 공생을 위한 육아정책의 선진화 방안. 2012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포럼 1차 자료집, 7-34.
- 정미라·조희연·안재진 편역(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백서.
-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사랑플랜 2011~2012: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 조은경·김은영 편역(2008). 미국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표갑수(2006).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46, 71-91.
- Center for the child care workforce (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ts. http://www.ccw.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2&Itemid=51에서 2012년 6월 19일 인출.
-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 (2012). Etudes et resultats. <http://www.drees.sante.gouv.fr/IMG/pdf/er803.pdf>에서 2012년 7월 1일 인출.
- Early Childhood Learning and Knowledge Center (ECLKC) (2010). Head Start Program Fact Sheet Fiscal Year 2010. <http://eclkc.ohs.acf.hhs.gov/hslc/mr/factsheets/fHeadStartProgr.htm>에서 2012년 6월 20일 인출.

- Eurostat (2011). Demography report 2010: Older, more numerous and diverse Europeans. European commission.
- Fagnani, J. (2012). Recent reforms in childcare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and Germany: What was at stak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 509-516.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1).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HHS and education are taking steps to improve workforce data and enhance worker quality. <http://www.gao.gov/assets/590/588577.pdf> 에서 2012년 6월 30일 인출.
- Lokteff, M. and Piercy, K. W. (2012). "Who cares for the children?" less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of child care polic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120-130.
-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 (NACCRRA) (2011a). 2011-2012 Public policy agenda 112th congress. http://www.naccrra.org/sites/default/files/default_site_pages/2011/publicpolicyagenda_comp.pdf에서 2012년 6월 19일 인출.
-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 (NACCRRA) (2011b). Child care in America today. http://www.naccrra.org/sites/default/files/default_site_pages/2011/childcareinamericafacts_2011_final.pdf에서 2012년 6월 19일 인출.
-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 (NACCRRA) (2012). Leaving children to chance. http://www.naccrra.org/sites/default/files/default_site_pages/2012/lc_executivesummaryapril2012.pdf에서 2012년 6월 19일 인출.
-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 (2011). The state of preschool 2011. <http://nieer.org/sites/nieer/files/2011yearbook.pdf>에서 2012년 6월 19일 인출.
- OECD (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and Care.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nex E*. <http://www.oecd.org/dataoecd/16/14/37423831.pdf> and <http://www.oecd.org/dataoecd/16/1/37423446.pdf>에서 2012년 6월 22일 인출.
- OECD (2008).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II.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공역). 서울: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06년 원저 발간)
- OECD (2010). OECD review on evaluation and assessment frameworks for improving school outcomes: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Sweden. <http://www.oecd.org/edu/preschoolandschool/45957739.pdf>에서 2012년 9월 22일 인출.
- OECD (2010). Data for chart PF3.1.A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 2007 & 3.1.B Public expenditure on pre-school per child, 2007. <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37864512.pdf>에서 2012년 7월 1일 인출.
- OECD (2012).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Starting Strong III 요약문).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공역).
- Palley, E. (2010). Who cares for children? Why are we where we are with American child care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55-163.
- Palley, E. & Shdaimah, C. (2011). Child care policy: A need for greater advoca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1159-1165.
- Rhodes, H. & Huston, A. (2012). Building the workforce our youngest children deserve. *Social Report*, 26, 1, 1-26.
-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 (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 United Nations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 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 Economic news release Table 5. employment status of the population b sex, marital status, and presence and age of own children under 18, 2010-2011 annual averages. <http://data.bls.gov/cgi-bin/print.pl/news.release/famee.t05.htm>에서 2012년 9월 15일 인출.

- U. S. Department of Commerce (2001 & 2011). U. S. Census Bureau: Resident population estimates of the United States by age and sex. http://www.census.gov/popest/data/historical/2000s/vintage_2001/index.html과 <http://www.census.gov/popest/data/national/totals/2011/index.html>에서 2012년 9월 15일 인출.
- U. S. Department of Commerce (2004). U. S. census bureau: Interim projections of the total popul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States.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projections/projectionsagesex.html>에서 2012년 9월 15일 인출.
- U. S. Department of Commerce (2008). U. S. Census Bureau: U. S. population projections.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projections/methodstatement.html> 에서 2012년 9월 15일 인출.

Abstract

Mid- and Long-term Developmental Plans of Child Care Policies: 2013-2017

Meehwa Lee Jongil Yuh Ji-Won Eom

The present study aimed to establish mid- and long-term goals for child care policies from 2013 through 2017.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hievements of the child car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2008 through 2012, and the future tasks. Two-hundred ninety-two childcare policy experts consisting of p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 workers at support centers, and parents of you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In addition,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ild care policies was conducted along with secondary in-depth data collection through advisory meetings with childcare policy experts. Criteria for childcare policy were based on the national framework, affordable childcare costs for families, infrastructure and delivery system for diverse programs and services, quality improve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workforce, participation of supporting systems and parents, and quality assessment. A series of Chi-square analyses yielded six main frameworks for future polic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urrent childcare policy is considered to focus on providing affordable childcare for parents.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current childcare polic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delivery system, as well as, quality assurance regarding the environment, programs of and standards for childcare. Secondly, it is suggested to impose a stronger emphasis on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Perspectives on childcare assistance to parents and subsidy support to service providers were varied by groups and specific contents. For quality improvement, increase in opportuniti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a seamless delivery system is recommended. Last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childcare policy development were discussed.

부 록

부록 1. 전문가용 조사표

부록 2. 부모용 조사표

부록 1. 전문가용 조사표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조사지
[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인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2013-2017」의 일환으로 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2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02) 398-7720 mhlee@kicce.re.kr
여종일 부연구위원 (02) 398-7744 jyuh@kicce.re.kr
엄지원 연구원 (02) 398-7751 gracejiwon@kicce.re.kr

응답자의 일반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령	만 ()세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고졸이하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졸업-석사	<input type="checkbox"/> (2, 3년제) 전문대 졸업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졸업-박사	<input type="checkbox"/> (4년제) 대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직장유형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중앙정부공무원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지자체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교수, 강사,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기관, 단체근무자	
거주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I.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된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전혀 향상 안됨	2 별로 향상 안됨	3 보통	4 약간 향상됨	5 매우 향상됨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2)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국가의 양육수당 지원의 형평성					
	3) 보육료지원정책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 보육 서비스	4) 맞벌이 부모에 적합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5) 장애영유아의 개별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6)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7)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보육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균형배치	8)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9) 어린이집 영양, 건강, 안전관리의 강화					
	10)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예: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11)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담보					
	12) 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					
	14)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15)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					
	16)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의 양성교육의 내실화					
	17)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보육 전달체계 효율화	18)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예: 보수수준 및 근무환경 개선, 대체교사 인력지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19)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					
	2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					
	21)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22)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23)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24)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 추진(예: 공공인프라 마련, 민관학 연 계망 활성화)					
	25)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26)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공공형어린이집: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어린이집 유형을 지칭함.

II. 보육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보육은 국가적 책임이다.					
2) 무상보육정책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속해야 한다.					
3) 무상보육정책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4)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게 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5)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만큼 중요하다.					
6) 영아자녀(0-2세)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향후 보육정책의 수립 시,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보기] 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② 부모의 취업지원
 ③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④ 장애아동 등 특수유구를 가진 영유아의 양육지원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 연령 별 아동에게 가정양육이 적합하지, 어린이집 보육이 적합한지 해당란에 √ 표한 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면 1일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연령	가정 양육	어린이집	3-1. 적합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1) 만 1세 미만	①	② (☞ 3-1-a)	
2) 만 1세 이상 ~ 만 2세 미만	①	② (☞ 3-1-b)	b) 1일에 □□시간
3) 만 2세 이상 ~ 만 3세 미만	①	② (☞ 3-1-c)	c) 1일에 □□시간
4) 만 3세 이상 ~ 만 4세 미만	①	② (☞ 3-1-d)	d) 1일에 □□시간
5) 만 4세 이상 ~ 만 5세 미만	①	② (☞ 3-1-e)	e) 1일에 □□시간
6) 만 5세 이상	①	② (☞ 3-1-f)	f) 1일에 □□시간

* ②어린이집을 택한 경우만 3-1 문항에서 해당연령의 적합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응답

3-2. 취업모 혹은 비취업모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면 1일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연령별로 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연령	적합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취업모의 자녀	비취업모의 자녀
1) 만 1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2) 만 1세 이상 ~ 만 2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3) 만 2세 이상 ~ 만 3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4) 만 3세 이상 ~ 만 4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5) 만 4세 이상 ~ 만 5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6) 만 5세 이상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4. 향후 5년간 보육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4-1.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4-2.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보기]
- | | |
|--------------------------------|-----------------|
|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②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보 |
| ③ 어린이집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 ④ 보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
| 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 ⑥ 지원 및 행정체계 개선 |
| ⑦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화 | ⑧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
| ⑨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⑩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 |
| ⑪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참여방안 활성화 | |

III.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1-1. 보육료 지원

현행체계	현행유지	개선필요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만2세 영유아와 5세아에게 소득·재산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되며, 만 3~4세아는 가구소득 70%인 경우 지원됨. (2013년부터 만 3~4세아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될 계획임)	① (☞ 1-2)	② (☞ A)
A. 보육료지원의 금액범위		
<input type="checkbox"/> ①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의 선택에 의한 추가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소득계층에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B. 보육료지원의 조건		
<input type="checkbox"/> ①보육료는 맞벌이 부모(혹은 한부모)나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료는 부모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C. 영아와 유아를 구분한 보육료지원		
<input type="checkbox"/> ①보육료는 영아와 유아의 구분 없이 동일요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영아의 경우는 취업모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만 무상보육 지원을 하고, 유아는 부모의 취업여부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영아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고, 유아는 취업모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만 무상보육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1-2. 양육수당 지원

현행체계	현행유지	개선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만 2세아를 둔 소득하위 15% 가구에 양육수당 지원함 (2013년부터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 가구로 확대할 계획임).	① (☞ 2)	② (☞ A)
A. 양육수당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①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B. 영유아 연령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①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IV.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어린이집의 약 5.3%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전체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약 10.6%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국공립 어린이집은 향후 5년간 전체어린이집의 ()로 확충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20% <input type="checkbox"/> ② 30% <input type="checkbox"/> ③ 40% <input type="checkbox"/> ④ 50%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2)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하게 하는 유형임. 2011년 기준, 665개소가 운영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공공형어린이집은 향후 5년간 민간어린이집의 ()까지 증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10% <input type="checkbox"/> ② 15% <input type="checkbox"/> ③ 20% <input type="checkbox"/> ④ 25%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3) 민간어린이집의 전체비중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어린이집 39,842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은 37.7%, 가정어린이집이 52.0%으로 전체의 약89%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체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5년간 ()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70% <input type="checkbox"/> ② 60% <input type="checkbox"/> ③ 50%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_____
4)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종일돌봄 (07:30 - 19:30)에 중점을 두고 있어 12시간이 기본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은 향후 5년간 1일 ()시간으로 단축조정 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11 <input type="checkbox"/> ② 10 <input type="checkbox"/> ③ 9 <input type="checkbox"/> ④ 8시간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5) 시간제 일시보육 서울형 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일시보육이 제공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시간제 일시보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 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지속적인 필요성 정도를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2)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확대					
3) 시간연장보육의 확대					
4)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					
5)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6) 시설 미이용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협동보육의 활성화					
7) 가정방문 영아돌봄서비스 확대					
8)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9)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휴식보호서비스모형 제공					
10) 영유아가 아플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					
11) 농산어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지원센터 설치					
12) 어린이집운영시간에 대한 법률개정					
13) 어린이집 이용 부모 사전 이용자 교육 활성화					

* 휴식보호서비스모형은 장애아동의 가족 및 양육자에게 단기의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함.

3. (위 2번 항목 중에서)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V.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만 1세 미만</td> <td>1:3</td> </tr> <tr> <td>만 1세</td> <td>1:5</td> </tr> <tr> <td>만 2세</td> <td>1:7</td> </tr> <tr> <td>만 3세</td> <td>1:15</td> </tr> <tr> <td>만 4~5세</td> <td>1:20</td> </tr> </table>	만 1세 미만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5세	1:2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향후 5년 후까지 교사 1명 당 영유아의 수가 다음의 비율로 감소되어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input type="checkbox"/> 만 1세미만</td> <td><input type="checkbox"/> 1:2</td> <td><input type="checkbox"/> 1:1</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1세</td> <td><input type="checkbox"/> 1:4</td> <td><input type="checkbox"/> 1:3</td> <td><input type="checkbox"/> 1:2</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2세</td> <td><input type="checkbox"/> 1:6</td> <td><input type="checkbox"/> 1:5</td> <td><input type="checkbox"/> 1:4</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3세</td> <td><input type="checkbox"/> 1:13</td> <td><input type="checkbox"/> 1:11</td> <td><input type="checkbox"/> 1:9</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4~5세</td> <td><input type="checkbox"/> 1:18</td> <td><input type="checkbox"/> 1:16</td> <td><input type="checkbox"/> 1:14</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②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만 1세미만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1: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 1세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만 2세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만 3세	<input type="checkbox"/> 1:13	<input type="checkbox"/> 1:11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만 4~5세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16	<input type="checkbox"/> 1:14
만 1세 미만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5세	1:20																																
<input type="checkbox"/> 만 1세미만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1: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 1세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만 2세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만 3세	<input type="checkbox"/> 1:13	<input type="checkbox"/> 1:11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만 4~5세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16	<input type="checkbox"/> 1:14																														
2)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34.3%가 어린이집 인가를 전면제한, 42.6%가 부분적으로 제한함.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인가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인가 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지표 개발					
2)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예: 1인 1개소, 부채비율제한)					
3) 현장 실태조사의 수시 실시					
4)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의 질적 관리 지원					
5)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					
6) 영아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7)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운영 지원					
8) 영아보육과정과 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					
9) 시설개보수비 지원 강화					
10)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확대					
11) 열악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보조					
12) 보조교사의 추가배치 지원 확대					
13)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 강화					

3. (위 2번 항목 중에서) 시설 및 물리적 여건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VI. 보육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별로 차등화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 따른 차등 없이 일원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기본 처우개선비는 일원화하고 기타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보육교사 보수는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라 차별화 되지 않음.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의 호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호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보수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보육교사의 보수에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3) 보육교사 보수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별화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의 보수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차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보수에서 시설유형별로 반드시 급여체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4)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영유아 발달 및 지도, 보육과 아동복지에 기초하여 향후(2013년 변경고시) 51 학점을 이수해야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 수를 늘려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보육실습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제도에서 학과제로 자격부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5) 2급 보육교사 자격은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보육학이나 아동관련학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되고 보육교사는 인터넷 강의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3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부여되고, 1급 보육교사자격은 이후 경력에 따라 부여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3급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교육정도 등)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하면서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②3급 보육교사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3급 보육교사 자격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					
2)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 조절					
3) 보육교사 2교대 체제 도입 고려(8시간 근무 준수)					
4) 보육교사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행정사무원이나 청소도우미 지원					
5)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					
6) 지역어린이집 간 자체장학 지원 확대					
7) 보육교사 지원과정에 인성검사, 양성과정에 인성교육 추가					
8) 아동학대, 보조급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3. (위 2번 항목 중에서) 보육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Ⅶ.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①	②	평가인증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____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축소 <input type="checkbox"/> ② 강화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2) 부모참여로써 '마더답사단'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 등이 구성되어 있음.	①	②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의견의 반영도를 ____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축소 <input type="checkbox"/> ② 확대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3) 부모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①	②	어린이집의 제반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을 ____ 시켜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축소 <input type="checkbox"/> ② 확대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					
2)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3)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 강화					
4)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					
5) 지역 어린이집간의 네트워크 구축					
6)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의견 수렴장구 활성화					
7) 시행정책에 대한 부모대상 캠페인 실시					
8) 부모 서포터즈, 부모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9) 부모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 의무화					
10) 영유아의 등하원 여부에 대한 부모 알림서비스의 전자시스템 구축					
11)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하차하는 지정정류장 설치					
12) 자녀양육에서 부모양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					
1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부모교육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신설					
14)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					

3. (위 2번 항목 중에서) 보육정책의 지원 및 행정체계 효율성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Ⅷ. 평가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해 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으로 70개 항목을 평가함. 통과점수는 75점임.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평가인증의 통과점수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평가인증 통과점수의 상향조정보다는 점수체계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11항목), 운영관리(12항목), 보육과정(14항목),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건강과 영양(12항목), 안전(10항목)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40인 이상 기준)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평가인증지표 영역을 보육환경보다 보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기준보다 안전이나 건강·위생 등을 더 강조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현재의 평가인증지표 영역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평가인증지표는 정원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보육과정만 영아/유아로 개편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⑤평가인증지표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은 지도점검 등의 내용과 연관되게 개편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_____
3) 평가인증제는 참여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어린이집의 약 75%가 인증통과 하였음.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의 상시적 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평가인증에 2회 이상 탈락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어린이집의 상시적 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이 지원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4)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위해 확인점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현행 확인점검보다 강화된 불시점검제(방문일 비공지)를 도입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확인점검의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2)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3)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					
4)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위한 각종 평가제도(지도점검, 기본 사항확인, 평가인증 등) 일원화 관리					

3. (위 2번 항목 중에서) 평가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를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골라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IX. 향후 중장기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향후 보육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싶으시면 해당란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야	과제내용	
	중기(5년 이내)	장기(10년 이내)
보육정책의 비전 및 방향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정책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설 및 물리적 여건과 보육프로그램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평가체계		
기타		

※ 참고자료 (제1-2차 중장기 보육계획)

구분	새싹플랜(2006-2010)	아이사랑플랜(2009-2012)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정책목표 혹은 추진방향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구축	
정책과제	공보육 기반조성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 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 지원
	부모 육아부담 경감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지원	-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다문화,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 고려 강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보호자의 특성 고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 활성화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조성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 접근처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자격관리와 상응한 처우 -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 보육사업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효율화 -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제고 - 보육시설과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 보육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성 강화 - 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 강화 - 지원기구 개편 -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원 및 부모의 참여 활성화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부모용 조사표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조사지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인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2013-2017」의 일환으로 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어린이집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NI리서치 02) 520-7900

응답자의 일반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어머니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영유아 자녀	연령	<input type="checkbox"/> 만 1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1세~만 2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2세~만 3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3세~만 4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5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만)세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민간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법인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가정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직장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부모협동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평가인증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증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미인증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모름
거주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자녀의 어린이집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1.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명

2. 자녀 수를 아동의 연령대 별로 각각 기입하십시오.

(※ 영아와 유아의 연령은 2012년 10월 1일 기준임. 대상이 없는 경우 0을 기입함.)

① 영아 (36개월 미만)	② 유아 (만 3세 이상 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중학생 이상	⑤ 총 자녀 수
명	명	명	명	명

3.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연령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무학
아버지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무직 (주부, 학생, 군인포함)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전문직)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수확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귀 닥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월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영유아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시간을 기입해주시시오.

()시 ()분 ~ ()시 ()분

예: 7시 30분~19시 30분

7.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 총 기간을 월단위로 기입해주시시오.

※ 출생 이후 어린이집에 다닌 총 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기입함.

()년 ()개월 → 개월 수로 환산하면 총 ()개월

1.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향상된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전혀 향상 안됨	2 별로 향상 안됨	3 보통	4 약간 향상됨	5 매우 향상됨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2)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국가의 양육수당 지원의 형평성					
	3) 보육료지원정책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 보육 서비스	4) 맞벌이 부모에 적합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5) 장애영유아의 개별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6)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7)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보육의 질 제고 및 어린이집 균형배치	8)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9) 어린이집 영양, 건강, 안전관리의 강화					
	10)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예: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11)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담보					
	12) 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					
	14) 농산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15)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					
	16)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의 양성교육의 내실화					
	17)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보육 전달체계 효율화	18)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예: 보수수준 및 근무환경 개선, 대체교사 인력지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19)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증대					
	2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의한 행정업무 효율성					
	21)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22)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23)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24)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 추진(예: 공공인프라 마련, 민관학 연 계망 활성화)					
	25)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26)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공공형어린이집: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어린이집 유형을 지칭함.

II. 보육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보육은 국가적 책임이다.					
2) 무상보육정책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속해야 한다.					
3) 무상보육정책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4)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게 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5)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만큼 중요하다.					
6) 영아자녀(0-2세)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향후 보육정책의 수립 시,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보기] 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② 부모의 취업지원
 ③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④ 장애아동 등 특수유구를 가진 영유아의 양육지원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 연령 별 아동에게 가정양육이 적합하지, 어린이집 보육이 적합한지 해당란에 √ 표한 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면 1일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연령	가정 양육	어린이집	3-1. 적합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1) 만 1세 미만	①	② (☞ 3-1-a)	
2) 만 1세 이상 ~ 만 2세 미만	①	② (☞ 3-1-b)	b) 1일에 □□시간
3) 만 2세 이상 ~ 만 3세 미만	①	② (☞ 3-1-c)	c) 1일에 □□시간
4) 만 3세 이상 ~ 만 4세 미만	①	② (☞ 3-1-d)	d) 1일에 □□시간
5) 만 4세 이상 ~ 만 5세 미만	①	② (☞ 3-1-e)	e) 1일에 □□시간
6) 만 5세 이상	①	② (☞ 3-1-f)	f) 1일에 □□시간

* ②어린이집을 택한 경우만 3-1 문항에서 해당연령의 적합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응답

3-2. 취업모 혹은 비취업모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면 1일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별로 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연령	적합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취업모의 자녀	비취업모의 자녀
1) 만 1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2) 만 1세 이상 ~ 만 2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3) 만 2세 이상 ~ 만 3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4) 만 3세 이상 ~ 만 4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5) 만 4세 이상 ~ 만 5세 미만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6) 만 5세 이상	1일에 □□시간	1일에 □□시간

4. 향후 5년간 보육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4-1.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정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4-2. 만 3-5세 유아 대상 보육정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보기]
- | | |
|--------------------------------|-----------------|
|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②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보 |
| ③ 어린이집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개선 | ④ 보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
| 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 ⑥ 지원 및 행정체계 개선 |
| ⑦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화 | ⑧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
| ⑨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⑩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 |
| ⑪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참여방안 활성화 | |

III.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1-1. 보육료 지원

현행체계	현행유지	개선필요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만2세 영유아와 5세아에게 소득·재산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되며, 만 3~4세아는 가구소득 70%인 경우 지원됨. (2013년부터 만 3~4세아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될 계획임)	① (☞ 1-2)	② (☞ A)
A. 보육료지원의 금액범위		
<input type="checkbox"/> ①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의 선택에 의한 추가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무상보육의 지원금액은 소득계층에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B. 보육료지원의 조건		
<input type="checkbox"/> ①보육료는 맞벌이 부모(혹은 한부모)나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료는 부모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C. 영아와 유아를 구분한 보육료지원		
<input type="checkbox"/> ①보육료는 영아와 유아의 구분 없이 동일요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영아의 경우는 취업모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만 무상보육 지원을 하고, 유아는 부모의 취업여부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영아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고, 유아는 취업모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만 무상보육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1-2. 양육수당 지원

현행체계	현행유지	개선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만 2세아를 둔 소득하위 15% 가구에 양육수당 지원함 (2013년부터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 가구로 확대할 계획임).	① (☞ 2)	② (☞ A)
A. 양육수당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①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B. 영유아 연령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①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등을 고려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IV.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선택하여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어린이집의 약 5.3%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전체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약 10.6%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국공립 어린이집은 향후 5년간 전체어린이집의 ()로 확충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20% <input type="checkbox"/> ② 30% <input type="checkbox"/> ③ 40% <input type="checkbox"/> ④ 50%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2)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하게 하는 유형임. 2011년 기준, 665개소가 운영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공공형어린이집은 향후 5년간 민간어린이집의 ()까지 증강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10% <input type="checkbox"/> ② 15% <input type="checkbox"/> ③ 20% <input type="checkbox"/> ④ 25%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3) 민간어린이집의 전체비중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어린이집 39,842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은 37.7%, 가정어린이집이 52.0%으로 전체의 약89%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체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5년간 ()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70% <input type="checkbox"/> ② 60% <input type="checkbox"/> ③ 50%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_____
4)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종일돌봄 (07:30 - 19:30)에 중점을 두고 있어 12시간이 기본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은 향후 5년간 1일 ()시간으로 단축조정 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11 <input type="checkbox"/> ② 10 <input type="checkbox"/> ③ 9 <input type="checkbox"/> ④ 8시간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5) 시간제 일시보육 서울형 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일시보육이 제공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시간제 일시보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 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지속적인 필요성 정도를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2)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확대					
3) 시간연장보육의 확대					
4)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					
5)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6) 시설 미이용 부모를 위한 육아나눔터나 부모협동보육의 활성화					
7) 가정방문 영아돌봄서비스 확대					
8)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9)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휴식보호서비스모형 제공					
10) 영유아가 아플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서비스 제공					
11) 농산어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지원센터 설치					
12) 어린이집운영시간에 대한 법률개정					
13) 어린이집 이용 부모 사전 이용자 교육 활성화					

* 휴식보호서비스모형은 장애아동의 가족 및 양육자에게 단기의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함.

3. (위 2번 항목 중에서)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V.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만 1세 미만</td><td>1:3</td></tr> <tr><td>만 1세</td><td>1:5</td></tr> <tr><td>만 2세</td><td>1:7</td></tr> <tr><td>만 3세</td><td>1:15</td></tr> <tr><td>만 4~5세</td><td>1:20</td></tr> </table>	만 1세 미만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5세	1:20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input type="checkbox"/> ①향후 5년 후까지 교사 1명 당 영유아의 수가 다음의 비율로 감소되어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input type="checkbox"/> 만 1세미만</td> <td><input type="checkbox"/> 1:2</td> <td><input type="checkbox"/> 1:1</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1세</td> <td><input type="checkbox"/> 1:4</td> <td><input type="checkbox"/> 1:3</td> <td><input type="checkbox"/> 1:2</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2세</td> <td><input type="checkbox"/> 1:6</td> <td><input type="checkbox"/> 1:5</td> <td><input type="checkbox"/> 1:4</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3세</td> <td><input type="checkbox"/> 1:13</td> <td><input type="checkbox"/> 1:11</td> <td><input type="checkbox"/> 1:9</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만 4~5세</td> <td><input type="checkbox"/> 1:18</td> <td><input type="checkbox"/> 1:16</td> <td><input type="checkbox"/> 1:14</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②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만 1세미만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1:1		<input type="checkbox"/> 만 1세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만 2세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만 3세	<input type="checkbox"/> 1:13	<input type="checkbox"/> 1:11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만 4~5세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16	<input type="checkbox"/> 1:14
만 1세 미만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5세	1:20																																
<input type="checkbox"/> 만 1세미만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1:1																															
<input type="checkbox"/> 만 1세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만 2세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만 3세	<input type="checkbox"/> 1:13	<input type="checkbox"/> 1:11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만 4~5세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16	<input type="checkbox"/> 1:14																														
2)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34.3%가 어린이집 인가를 전면제한, 42.6%가 부분적으로 제한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인가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인가 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거의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약간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1)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지표 개발					
2)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예: 1인 1개소, 부채비율제한)					
3) 현장 실태조사의 수시 실시					
4)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의 질적 관리 지원					
5)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					
6) 영아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7)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운영 지원					
8) 영아보육과정과 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					
9) 시설개보수비 지원 강화					
10)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확대					
11) 열악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보조					
12) 보조교사의 추가배치 지원 확대					
13)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 강화					

3. (위 2번 항목 중에서) 시설 및 물리적 여건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VI. 보육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별로 차등화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 따른 차등 없이 일원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기본 처우개선비는 일원화하고 기타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보육교사 보수는 자격기준 및 학력에 따라 차별화 되지 않음.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의 호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호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보수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보육교사의 보수에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3) 보육교사 보수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별화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의 보수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차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보수에서 시설유형별로 반드시 급여체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4)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영유아 발달 및 지도, 보육과 아동복지에 기초하여 향후(2013년 변경고시) 51 학점을 이수해야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 수를 늘려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보육실습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제도에서 학과제로 자격부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5) 2급 보육교사 자격은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보육학이나 아동관련학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되고 보육교사는 인터넷 강의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3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부여되고, 1급 보육교사자격은 이후 경력에 따라 부여됨.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3급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교육정도 등)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하면서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②3급 보육교사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3급 보육교사 자격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조절					
2)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 조절					
3) 보육교사 2교대 체제 도입 고려(8시간 근무 준수)					
4) 보육교사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행정사무원이나 청소도우미 지원					
5)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					
6) 지역어린이집 간 자체장학 지원 확대					
7) 보육교사 지원과정에 인성검사, 양성과정에 인성교육 추가					
8) 아동학대, 보조급 횡령, 위생사고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3. (위 2번 항목 중에서) 보육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Ⅶ.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인증의 신청, 점검 및 관찰, 심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①	②	평가인증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____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축소 <input type="checkbox"/> ② 강화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2)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 등이 구성되어 있음.	①	②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의견의 반영도를 ____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축소 <input type="checkbox"/> ② 확대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3) 부모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①	②	어린이집의 제반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을 ____ 시켜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축소 <input type="checkbox"/> ② 확대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보육전문 공무원의 배치					
2) 보육정보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3)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 조력 및 컨설팅 강화					
4)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					
5) 지역 어린이집간의 네트워크 구축					
6)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의견 수렴창구 활성화					
7) 시행정책에 대한 부모대상 캠페인 실시					
8) 부모 서포터즈, 부모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9) 부모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 의무화					
10) 영유아의 등하원 여부에 대한 부모 알림서비스의 전자시스템 구축					
11)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하차하는 지정정류장 설치					
12) 자녀양육에서 부모양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					
1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부모교육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신설					
14)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					

3. (위 2번 항목 중에서) 보육정책의 지원 및 행정체계 효율성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Ⅷ. 평가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에 √ 표해 주십시오.

현행체계	현행 유지	개선 필요	'②개선필요'에 응답하신 경우
1)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해 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으로 70개 항목을 평가함. 통과점수는 75점임.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평가인증의 통과점수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평가인증 통과점수의 상향조정보다는 점수체계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11항목), 운영관리(12항목), 보육과정(14항목),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건강과 영양(12항목), 안전(10항목)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40인 이상 기준)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평가인증지표 영역을 보육환경보다 보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기준보다 안전이나 건강·위생 등을 더 강조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현재의 평가인증지표 영역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평가인증지표는 정원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보육과정만 영아/유아로 개편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⑤평가인증지표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은 지도점검 등의 내용과 연관되게 개편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_____
3) 평가인증제는 참여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어린이집의 약 75%가 인증통과 하였음.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의 상시적 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평가인증에 2회 이상 탈락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어린이집의 상시적 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이 지원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_____
4)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위해 확인점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①	②	<input type="checkbox"/> ①현행 확인점검보다 강화된 불시점검제(방문일 비공지)를 도입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확인점검의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_____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의 향후 필요성 정도를 √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2)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3)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 도입					
4)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위한 각종 평가제도(지도점검, 기본 사항확인, 평가인증 등) 일원화 관리					

3. (위 2번 항목 중에서) 평가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2가지를 택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1, 2순위로 골라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IX. 향후 중장기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향후 보육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싶으시면 해당란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야	과제내용	
	중기(5년 이내)	장기(10년 이내)
보육정책의 비전 및 방향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정책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설 및 물리적 여건과 보육프로그램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평가체계		
기타		

※ 참고자료 (제1-2차 중장기 보육계획)

구분	새싹플랜(2006-2010)	아이사랑플랜(2009-2012)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정책목표 혹은 추진방향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구축	
정책과제	공보육 기반조성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 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 지원
	부모 육아부담 경감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지원	-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다문화,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 고려 강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보호자의 특성 고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 활성화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조성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 접근처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
	이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자격관리와 상응한 처우 -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 보육사업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효율화 -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제고 - 보육시설과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 보육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성 강화 - 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 강화 - 지원기구 개편 -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원 및 부모의 참여 활성화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2-19

2013~2017 보육 증장기 발전방향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사 02) 39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21-3 93330